

주요교역국의 관세행정 결정사례

EU

2022. 12.



주요교역국의 관세행정 결정사례

-EU-

2022. 12.

연구총괄 강동익

연구자 이재선

목 차

제1편 개관	1
I. 일반 및 경제 개황	1
1. 일반 개황	1
2. 경제 개황	6
가. 주요 경제지표	6
나. 수출입 동향	7
II. 관세행정조직	13
1. 조세 및 관세동맹 총국(Taxation and Customs Union)	13
2. 전문기구	17
가. 커미톨로지위원회(Comitology Committees)	17
나. 전문가그룹(Expert Groups)	19
제2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22
I. 품목분류 개요	22
1. 품목분류체계	22
2. 품목분류 사전심사(BTI)	24
II.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례	31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32

가. 동물성 생산품(제01류~제05류)	32
나. 식물성 생산품(식용)(제07류~제12류)	39
다. 기름 및 조제식료품(제15류~제24류)	43
2. 원료 및 연료	50
가. 식물성 생산품(비식용)(제06류, 제13류~제14류)	50
나. 광물성 생산품(제25류~제27류)	53
다. 원피, 모피(제41류, 제43류)	57
라. 목재(제4401호~제4404호, 제4406호, 제45류)	61
마. 공업용·가공용·회수용의 귀석, 귀금속, 비금속(제71류~제81류 해당호, 제8549.2호)	64
3. 경공업품	72
가. 플라스틱·고무 제품(제3922호~제3926호, 제40류)	72
나. 가죽·모피 제품(제42류, 제4303호)	78
다. 목재, 펄프, 종이, 인쇄서적(제44류~제49류)	82
라.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제50류~제63류)	89
마. 석·도자·유리제품(제68류~제70류)	94
바. 램프·가구·잡품(제8539호, 제94류~제96류)	97
4. 중화학공업품	104
가. 니코틴 함유 무연제품(제2404.12호, 제2404.19-90호, 제2404.92호, 제2404.99호)	104
나. 화학공업 생산품(제28류~제38류)	108
다. 비금속과 그 제품(제72류~제83류)	118
라. 기계류·전기기기(제84류~제85류)	127
마. 수송기기(제86류~제89류)	141

제3편 관세평가 해설	145
I. 관세평가 개요	145
1.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146
2. 거래가격 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150
가.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150
나. 역산가격(공제가격)	151
다. 산정가격	152
라. 대체가격(Fallback)	153
II. 관세평가 해설	155
1.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155
가. 수출판매	155
나. 실제지급가격	172
다. 가산요소	185
라. 공제요소	214
2. 거래가격 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220
가. 역산가격(공제가격)	220
나. 대체방법(Fallback)	222
맷음말	230
참고문헌	233
부 록	236
부록 1. WCO 권고의견	236
부록 2. WCO 사례연구	246
부록 3. WCO 예해	252

표 목차

제1편

〈표 1-I-1〉 주요 경제지표	6
〈표 1-I-2〉 최근 5년간 EU 전체 수출입 현황	7
〈표 1-I-3〉 2021년 EU 수출입 상위 10개국	8
〈표 1-I-4〉 2021년 EU 수출입 상위 10품목	9
〈표 1-I-5〉 최근 5년간 EU 對우리나라 수출입 현황	10
〈표 1-I-6〉 2021년 EU 對우리나라 수출입 상위 10품목	11

제2편

〈표 2-II-1〉 HS CODE별 사례 구분체계	31
-----------------------------------	----

그림 목차

제1편

[그림 1-I-1] EU 주요기구의 구조 및 상호관계	5
[그림 1-II-1] EU 집행위원회의 구성	15
[그림 1-II-2] TAXUD 조직도	16

제2편

[그림 2-I-1] EU Combined Nomenclature 예시	24
[그림 2-II-1] 해바라기유의 식용혼합품	44
[그림 2-II-2] 솔방울 장식품	51
[그림 2-II-3] 코르크로 만든 부채	63
[그림 2-II-4] 금도금 핀의 웨이스트	66
[그림 2-II-5] 가공하지 않은 황동막대	71
[그림 2-II-6] 마사지 롤러·볼 세트	75
[그림 2-II-7] 고무 온수 주머니	76
[그림 2-II-8] 생선껍질로 만든 개 사료	79
[그림 2-II-9] 토끼털 장난감	81
[그림 2-II-10] 컷 타워, 스크래처	85
[그림 2-II-11] 종이·플라스틱제의 장식품	87
[그림 2-II-12] 아동용 그림책	88
[그림 2-II-13] 오토바이용 셔츠	93
[그림 2-II-14] 발광다이오드 모듈	98

[그림 2-II-15] LED 조명	102
[그림 2-II-16] 전자담배용 용액	106
[그림 2-II-17] 알렌드로네이트 나트륨	110
[그림 2-II-18] 강철 포환(shot)	119
[그림 2-II-19] 블로램프(blow lamp)	125
[그림 2-II-20] 카스터(castor)	127

제3편

[그림 3-II-1] 수출판매 사례 1 거래개요	163
[그림 3-II-2] 수출판매 사례 2 거래개요	164
[그림 3-II-3] 수출판매 사례 3.a 거래개요	164
[그림 3-II-4] 수출판매 사례 3.b 거래개요	165
[그림 3-II-5] 수출판매 사례 4.a 거래개요	166
[그림 3-II-6] 수출판매 사례 4.b 거래개요	167
[그림 3-II-7] 수출판매 사례 5 거래개요	168
[그림 3-II-8] 수출판매 사례 6 거래개요	169
[그림 3-II-9] 수출판매 사례 7 거래개요	170
[그림 3-II-10] 로열티 형태로 지급되는 생산지원비용 거래개요	192

제1편 개관

I. 일반 및 경제 개황

1. 일반 개황

- EU(European Union)는 마스트리히트조약¹⁾에 따라 1993년 11월 1일 창설된 유럽공동체로 국기, 통화, 입법능력, 외교적 대표성 등 국가와 같은 특성을 가짐²⁾
 - 1950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설립되면서 시작된 유럽지역공동체는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Euratom)의 창설로 이어짐
 - 1967년 세 공동체의 기관이 공식적으로 유럽 공동체(EC)로 통합되어 단일 위원회, 단일 장관 회의 및 유럽의회가 탄생함
 - 이후 회원국이 확대되고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체결되면서 12개국³⁾으로 EU가 출범하였고, 2022년 현재 27개 회원국이⁴⁾ 가입함

1) 1992년 2월 7일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의 당시 12개 회원국 간에 체결된 EU 창설에 관한 조약으로 1993년 11월 1일 발효됨(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4583>, 검색일자: 2022. 5. 23.)

2)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european-union/>, 검색일자: 2022. 5. 23.

3)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영국은 2020년 탈퇴)

2 제1편 개관

- EU는 서쪽의 북대서양과 동쪽의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사이의 유럽대륙에 위치하며, 총면적은 423만 6,351km²로 미국의 절반 수준임⁵⁾
 - 프랑스(64만km²), 스페인(50만km²), 스웨덴(45만km²), 독일(35만km²), 핀란드(33만km²) 순으로 면적이 크며, EU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몰타(316km²)임

- 인구는 약 4억 5,013만명으로 해안가와 강변에 주로 거주하며, 네덜란드,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 주변 지역은 EU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음⁶⁾
 - 독일(7,990만명), 프랑스(6,808만명), 이탈리아(6,239만명), 스페인(4,726만명), 폴란드(3,818만명) 순으로 인구가 많으며, 몰타(46만명)는 EU에서 가장 인구가 적음

- 공식 언어는 24개⁷⁾로 EU 인구의 16%가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영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외국어로 인구의 29%가 영어에 익숙함⁸⁾
 - 독일어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주요언어이며, 영어는 아일랜드, 몰타의 공식 언어로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도 공식 언어로 남아 있음

- EU는 정부 간 및 초국가적 조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연방국가는 아니지만 자유 무역협정, 관세동맹을 넘어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함⁹⁾
 - EU는 행정, 입법, 사법기관을 통해 공동 외교 및 보안정책을 이행하고, 사법 및 내무 기능을 수행하며 단일시장 및 단일통화를 구축함

4)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5)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european-union/>, 검색일자: 2022. 5. 23.

6)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european-union/>, 검색일자: 2022. 5. 23.

7) 불가리아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아일랜드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8)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european-union/>, 검색일자: 2022. 5. 23.

9)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european-union/>, 검색일자: 2022. 5. 23.

- EU에서 행정기능은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수행하며, 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에서 외교적 대표 역할을 함¹⁰⁾
 - 정상회의는 EU 각국 정상들의 모임으로서 통상 연 4회 개최되며, EU의 제도적·정치적 발전과 관련된 주요한 정치·외교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함
 - 각료이사회는 EU 회원국 분야별 각료급이 참석하는 회의로서 10개 분야별¹¹⁾ 회의를 통해 정책의 결정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함
 - 회원국 정부에 의해 지명되어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집행위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는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회원국의 EU 공동정책 이행을 감독함
 - 대외관계청은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과 공동방위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를 보좌함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각료이사회로 구성된 입법부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심의·의결하고 법안 채택에 대한 공동책임을 짐¹²⁾
 - 유럽의회는 회원국에서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된 임기 5년의 총 70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회원국별로 의원 수를 할당함
 -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는 입법안을 수정·거부할 수 있는 공동결정권을 보유한 의사결정기관이며, 예산안을 심의·확정함
 - 다만 공동외교안보정책 및 일부 내무·사법 분야는 각료이사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며, 유럽의회는 협의 및 권고 역할만 담당함

10)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european-union/>, 검색일자: 2022. 5. 23.; 외교부, 『EU 개황』 2020. 6., pp. 17~29.

11) 외교, 일반, 경제·재무, 내부·사법, 고용·사회정책·보건·소비, 경쟁, 교통·통신·에너지, 농업·수산, 환경, 교육·청소년·문화 이사회(외교부(2020), p. 19.)

12)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european-union/>, 검색일자: 2022. 5. 23.; 외교부(2020), pp. 18~28.

4 제1편 개관

- EU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사법기관으로서 EU 조약 및 제반 법률의 해석과 그 적용에 대한 판결을 통해 EU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함¹³⁾
 - 사법재판소와 일반법원(General Court)이 각각 상·하급심을 담당하며, 11명의 법무관(Advocates General)과 각 회원국이 지명하는 27명의 법관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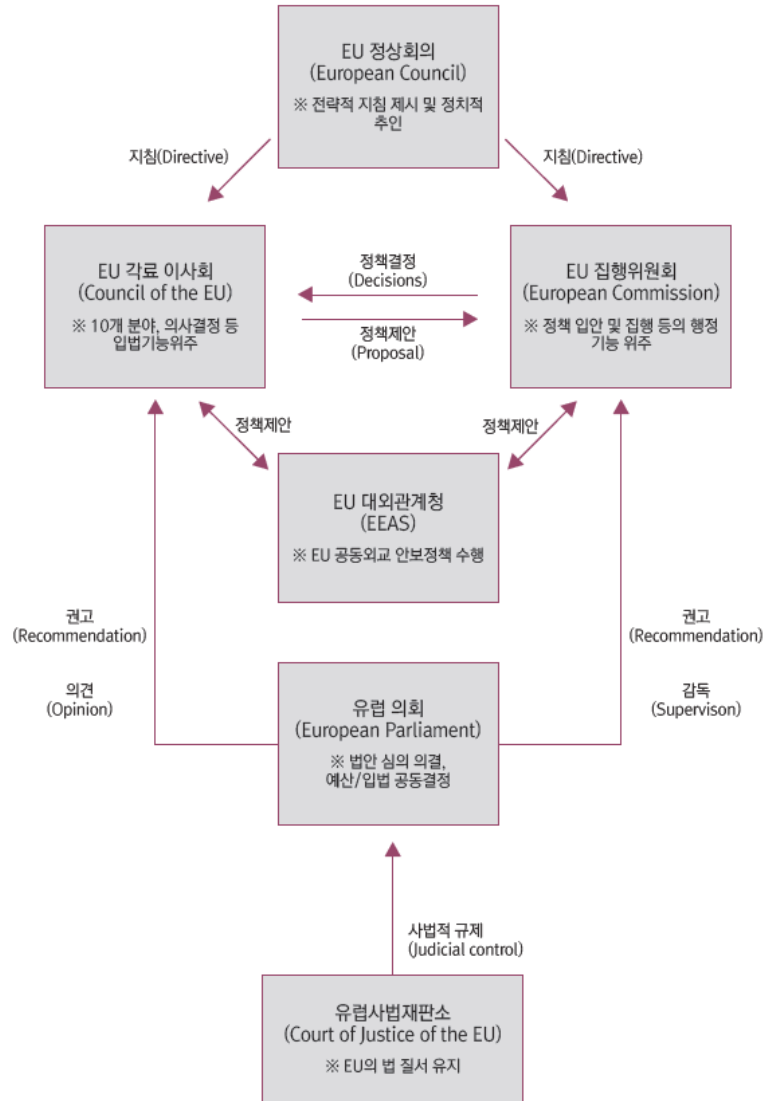
- 한편 EU는 유로화를 법정화폐로 채택한 회원국¹⁴⁾의 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이 단일 통화정책을 수행하지만 재정통합까지는 이르지 못함¹⁵⁾
 - 회원국의 중앙은행으로부터 통화정책 주권을 위임받아 유로지역에서의 통화정책을 수립·집행함
 - 반면 외환정책은 EU 재무장관회의에서 결정되며, 재정정책은 회원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13) 외교부(2020), pp. 29~30.

14) 유로지역(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15) 외교부(2020), pp. 30~32.; 『의료기기뉴스라인』, 「지역경제통합, 관세철폐서 정치적 동맹 단계까지 무역자유화」, 2015. 9. 10., <http://www.km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7>, 검색일자: 2022. 5. 24.

[그림 1-1-1] EU 주요기구의 구조 및 상호관계



자료: 외교부(2020), p. 34.

2. 경제 개황

가. 주요 경제지표

- 2017년 이후 성장하락세를 보인 EU의 경제는 2020년 COVID-19의 여파로 부의 성장을 경험한 후 2021년 회복하였으나 2022년에도 성장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¹⁶⁾
 - 높은 에너지 가격, 글로벌 공급차질 장기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2022년 2.9%)¹⁷⁾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EU 소비자물가는 2022년 5.8%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임¹⁸⁾
 - 이는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데다 유로화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공급망 병목현상에 따른 비용 상승에 기인함

〈표 1-1-1〉 주요 경제지표

(단위: 십억달러,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¹⁾	2021년	2022년 ¹⁾
명목 GDP	14,756.9	15,982.4	15,694.1	15,282.8	17,094.2	17,199.5
1인당 명목 GDP	3,305.0	36,011.7	35,291.2	34,317.3	38,391.8	38,559.9
경제성장률	3	2.2	2	-5.9	5.4	2.9
실업률 ²⁾	9.1	8.3	7.6	8	7.7	7.3
소비자물가증감률 ³⁾	1.6	1.8	1.4	0.7	2.9	5.8

주: 1) 전망치

2) IMF에서 EU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아 유로지역의 데이터로 대체함

3) Inflation rate, average consumer price

자료: IMF,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WEO/EU>;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EU>;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EU;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LUR@WEO/EURO>;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PCPIPCH@WEO/EU>, 검색일자: 2022. 5. 24.

16)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EU 집행위, 2022~23년 경제전망 [’22 춘계 전망]」, 보도자료, 2022. 5. 19.

17) IMF는 경제성장률을 2.9%로 예상하였으나 EU 집행위원회는 2.7%로 하향 조정함(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2022. 5. 19.))

18) IMF는 5.8%로 예상하였으나 EU 집행위원회는 6.8%로 상향 조정함(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2022. 5. 19.))

나. 수출입 동향

1) 전체 수출입 동향

- EU의 2021년 총교역액은 11조 771억유로로 총수출액은 5조 6,082억유로, 총수입액은 5조 4,689억유로, 무역수지는 1,392억유로 흑자를 보임
 - 2020년 무역규모가 16.2%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18.4%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2019년 수준을 회복하였음
 - 무역수지는 2017년 이후 흑자 폭이 감소하다가 2020년 2,640억유로로 상승한 후 2021년 감소세로 돌아섬

〈표 1-1-2〉 최근 5년간 EU 전체 수출입 현황¹⁾

(단위: 십억유로,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감률 ²⁾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5,226.1	7.6	5,474.0	4.7	5,611.8	2.5	4,808.2	-14.3	5,608.2	16.6
수입	5,131.5	8.2	5,426.3	5.7	5,552.5	2.3	4,544.2	-18.2	5,468.9	20.3
교역규모	10,357.5	7.9	10,900.3	5.2	11,164.3	2.4	9,352.4	-16.2	11,077.1	18.4
무역수지	94.6	-	47.8	-	59.2	-	264.0	-	139.2	-

주: 1) EU 간 수출입 포함

2)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istat/euts/EuWholeList.screen>, 검색일자: 2022. 5. 25.

- 2021년 EU의 최대수출국은 독일로 7,687억유로를 수출하였으며, EU 외의 국가로는 미국에 3,926억유로로 가장 많은 수출을 함
 - 상위 수출 10개국 중 7개국이 EU 역내 국가이며, 미국, 영국, 중국이 EU 외의 국가로서 순위에 포함됨

8 제1편 개관

- 2021년 EU의 최대수입국 또한 독일로 7,506억유로를 수입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에서 4,714억유로를 수입함
 - 상위 수입 10개국 역시 EU 역내 국가가 7개였으며, 역외 국가인 중국, 미국, 영국이 각 2위, 7위, 10위에 해당하였음

〈표 1-1-3〉 2021년 EU 수출입 상위 10개국¹⁾

(단위: 십억유로, %)

수출				수입			
순위	국가명	금액	증감률 ²⁾	순위	국가명	금액	증감률
1	독일	768.7	17.5	1	독일	750.6	17.5
2	프랑스	415.9	17.8	2	중국	471.4	21.5
3	미국	392.6	11.9	3	네덜란드	454.0	26.4
4	영국	281.3	2.1	4	벨기에	279.6	25.2
5	이탈리아	276.7	24.1	5	프랑스	273.7	16.4
6	네덜란드	263.0	20.2	6	이탈리아	264.6	22.6
7	벨기에	247.6	20.1	7	미국	230.8	11.6
8	중국	220.5	9.2	8	폴란드	202.8	20.6
9	폴란드	204.7	23.9	9	스페인	184.9	17.2
10	스페인	194.1	19.7	10	영국	143.1	-13.4

주: 1) EU 간 수출입 포함
2)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istat/euts/EuCtr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2. 5. 25.

- EU가 2021년 금액 대비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소매의약품으로 1,738억유로를 수출하였으며, 그 외에 면역용품(3위), 백신(5위) 등 의약품의 수출규모가 컸음
 - 또한 승용자동차(4위, 7위)나 항공기(8위) 등 수송기구나 석유와 역청유의 조제품(2위, 6위) 등의 수출이 많았음
- 2021년 EU가 가장 많이 수입한 물품은 원유(2,196억유로)이며, 기타 석유와 역청유의 조제품(3위), 제27류 물품(6위), 천연가스(8위) 등 광물자원의 수입이 많음
 - 그 외에 의약품(2위, 7위, 10위)이나 전자기기(4위, 5위, 9위)의 수입이 많음

〈표 1-1-4〉 2021년 EU 수출입 상위 10품목¹⁾

(단위: 십억유로, %)

수출				수입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²⁾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기타 소매의약품	173.8	-1.6	1	석유와 역청유(원유)	219.6	56.0
2	기타 석유와 역청유, 조제품	91.6	45.0	2	기타 소매의약품	124.0	-1.3
3	소매용 면역용품	79.6	8.9	3	기타 석유와 역청유, 조제품	92.2	41.6
4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기타 승용자동차 (불꽃점화식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67.9	-6.2	4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8.4	-0.6
5	인체의약품 백신	67.5	177.6	5	휴대용 자동차자료처리기계	65.8	17.4
6	경질유와 조제품	58.8	65.7	6	제27류에 해당하는 기밀 교역물품 ³⁾	61.7	102.0
7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기타 승용자동차 (압축점화식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44.9	-16.5	7	소매용 면역물품	56.3	22.2
8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1.8	1.3	8	천연가스	52.8	144.8
9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	41.0	7.0	9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	52.2	8.3
10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8.8	-4.9	10	인체의약품 백신	39.3	173.6

주: 1) HS 6단위 기준

2) 전년 대비 증감률

3) 통계단위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기밀로 간주함. 예를 들어 특정 물품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수가 제한적이거나 지배적인 경우 기밀로 취급함(Eurostat, *User guide on European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2020, pp. 38~39.)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istat/euts/Eul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2. 5. 25.

2) 한-EU 수출입 동향

- EU는 2021년 우리나라에 514억유로를 수출하고, 우리나라로부터 545억유로를 수입하여 30억유로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임
 - EU의 對우리나라 수출은 2018년 이후 전년 대비 감소하다가 2021년 13.9%의 증가율을 보이며 큰 폭으로 상승함
 - 한편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은 2017년 20%의 큰 증가율을 보인 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가 2020년 큰 폭으로 하락한 후 2021년 다시 23%의 증가율을 보임
 - 무역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다가 2020년 수출보다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흑자로 돌아섰으나 2021년 적자로 변환됨

〈표 1-1-5〉 최근 5년간 EU 對우리나라 수출입 현황

(단위: 십억유로,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감률 ¹⁾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49.3	1.8	48.6	-1.3	47.0	-3.4	45.1	-3.9	51.4	13.9
수입	49.9	20.9	50.9	1.9	51.6	1.5	44.4	-14.1	54.5	22.9
교역규모	99.2	16.2	99.5	0.3	98.6	-0.9	89.5	-9.2	105.9	18.4
무역수지	-0.66		-2.25		-4.66		0.77		-3.09	

주: 1)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istat/euts/EuItemImpExpDetailPopup.screen>, 검색일자: 2022. 5. 25.

- 2021년 EU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49억유로의 반도체·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로 이들의 부속품이나 부분품도 8번째 규모로 수출함
 - 또한 승용자동차(2위, 3위)와 의약품(4위, 5위)의 수출이 많았으며, 냉동 돼지고기, 핸드백 등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많은 품목의 수출이 규모가 컸음

- 한편 EU는 우리나라로부터 추진용 전동기를 갖춘 승용자동차(1위, 4위)를 많이 수입하였으며, 1,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9위)의 수입도 많았음
- 그 외에 자동차자료처리기계의 부속품 및 부분품(5위), 단위기기(10위), 의약품 및 시약(2위, 7위) 등의 수입 규모가 컸음

〈표 1-1-6〉 2021년 EU 對우리나라 수출입 상위 10품목¹⁾

(단위: 십억유로, %)

수출				수입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²⁾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단결정 보울(boule)을 성장시키는 기계	4.9	46.6	1	기타 승용자동차 (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2.3	30.6
2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기타 승용자동차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을 갖춘 것)	2.3	-28.1	2	소매용의 면역용품	2.1	92.3
3	기타 승용자동차 (불꽃점화식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1.8	271.5	3	리튬이온 축전지	1.7	12.7
4	기타 소매의약품	1.7	3.1	4	기타 승용자동차 (불꽃점화식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1.6	86.9
5	인체의약품 백신	1.4	510.8	5	자동차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5	9.7
6	경질유와 조제품	0.9	220.4	6	탱커(tanker)	1.3	581.1
7	기타 냉동한 돼지고기	0.8	56.1	7	진단·실험실용 시약 및 보증된 참조물질	1.0	-11.9

〈표 1-1-6〉의 계속

수출				수입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²⁾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8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의 부분품과 부속품	0.7	16.2	8	기타 석유와 역청유, 조제품	1.0	64.0
9	전자집적회로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0.7	56.2	9	실린더용량이 1,000cc 이하인 기타 승용자동차 (불꽃점화식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1.0	-0.5
10	외부표면을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핸드백	0.6	33.6	10	기억장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1.0	3.2

주: 1) HS 6단위 기준
2)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istat/euts/Eu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2. 5. 25.

II. 관세행정조직

1. 조세 및 관세동맹 총국(Taxation and Customs Union)

- EU는 집행위원회에서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면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법령을 집행하며, EU 조약의 이행을 감시함
 - 집행위원회는 국가의 내각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정책의 제안과 개발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EU의 재정관리·운영을 담당함¹⁹⁾

- 집행위원회는 34개의 총국(Directorate-General), 6개의 집행기관(Executive Agency), 16개의 서비스 부서로 구성되어 분야별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관장함²⁰⁾
 - 집행위원회의 일반적인 업무는 총국에서 이루어지며, 집행위원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총국을 담당하며 정치적 책임을 짐²¹⁾

- 집행위원회의 분야별 총국 중 조세 및 관세동맹 총국(Taxation and Customs Union; TAXUD)은 조세 및 관세정책을 이행하여 세수확보를 통한 EU 간 협력을 촉진함²²⁾
 - TAXUD는 조세 및 관세와 관련된 우선사항을 이행하고, EU의 투자 및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수입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

19) 외교부(2020), p. 23.

20) 이주형·권소영·김원용·권미진·최웅재·van der Meulen, 『주요국(EU)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 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식품안전정보원, 2018, p. 18.

21) 강유덕, 『EU 로비제도의 현황과 사례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 40.

22)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mission-statement_en, 검색일자: 2022. 9. 2.

14 제1편 개관

- 특히 TAXUD는 관세동맹을 통해 원활한 무역을 촉진하고 기업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단일시장과 예산자원의 보호에 전념함²³⁾
- 현재 EU의 관세정책은 다음의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음²⁴⁾
 - 관세동맹 관리방식의 개정
 - 위험관리, 보안 및 안전과 같은 영역의 강화 등 법적 구조의 현대화
 - 전자정보시스템 사용의 확대
 - 상품 통관 분야에서 단일시장의 개선 지원

23)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mission-statement_en, 검색일자: 2022. 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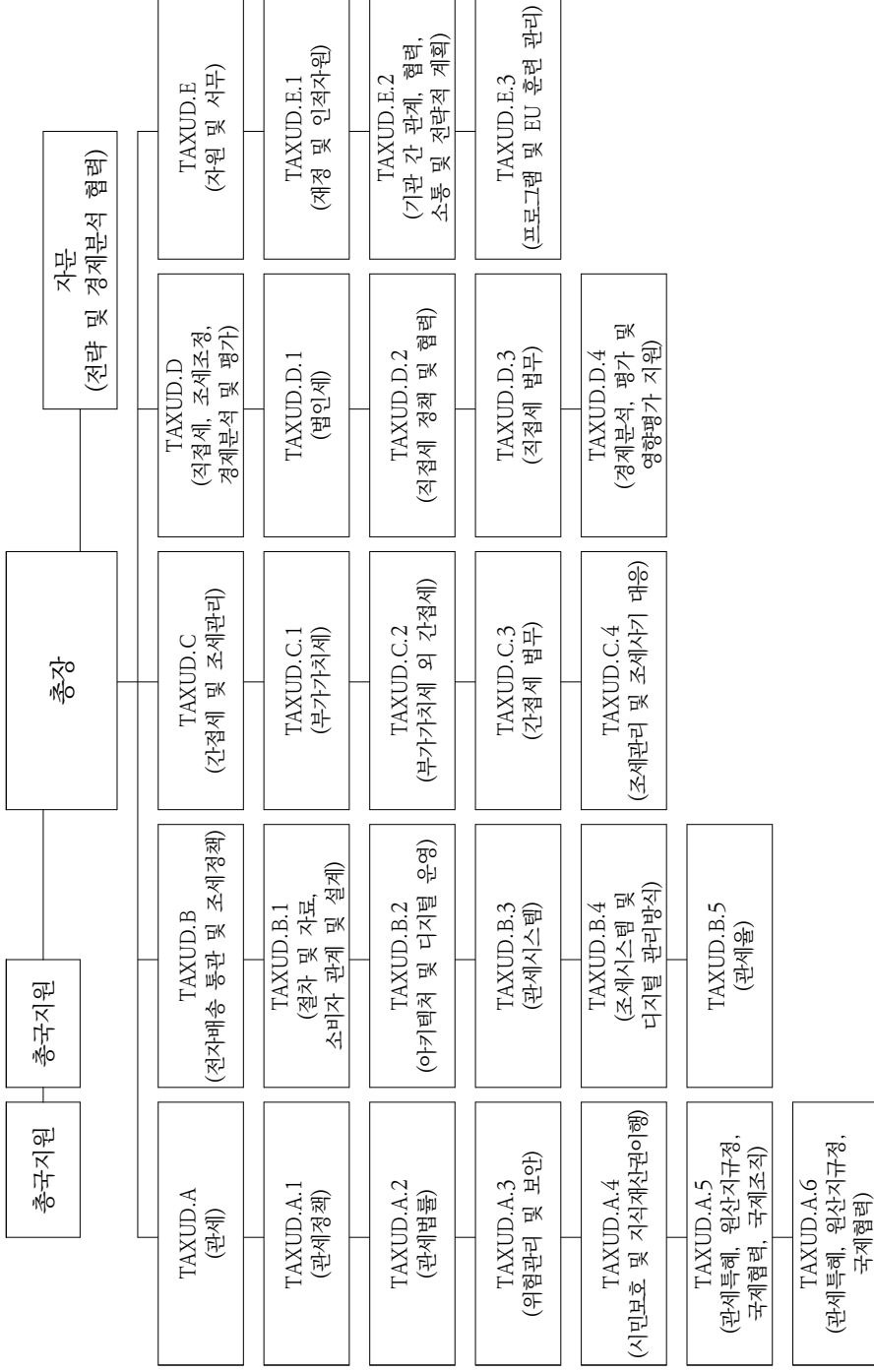
24)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info/topics/customs_en, 검색일자: 2022. 9. 2.

[그림 1-11-1] EU 집행위원회의 구성

총국(Directorate-General)							서비스 부서(Service Department)		
							집행기관 (Executive Agency)		
농업 및 농촌개발 (AGRI)	예산 (BUDG)	기후대책 (CLIMA)	소통 (COMM)	통신네트워크, 콘텐츠 및 기술 (CONNECT)	경쟁 (COMP)	유형기후, 인프라 및 환경(CINEA)	개인권리 관리 및 지급(PMO)	정보보호 (DPO)	유형사기방지 (OLAF)
방위산업 및 우주 (DEFIS)	경제 및 재정업무 (ECFIN)	교육, 청소년, 스포츠 및 문화(EGAC)	고용, 사회문제 및 포용(EMPL)	에너지 (ENER)	환경 (ENV)	유럽교육 및 문화 (EACEA)	유럽집행위원회 도서관	유럽인력선정 (EPSO)	유럽학업관리 (EUSA)
유럽시민보호 및 인도주의활동 (ECHO)	유럽주변국 및 확대협상 (NEAR)	유럽통계 (EUROSTAT)	금융안정성, 금융서비스 및 자본시장동맹 (FISMA)	보건 및 식품안전 (SANTE)	보건응급준비 및 대응 당국(HERA)	유럽보건 및 디지털 (HADEA)	외국인정책기관 (FPI)	역사자료실	브뤼셀의 인프라 및 물류(OIB)
인적자원 및 보안 (HR)	정보과학 (DIGIT)	국제시장, 산업, 기업가정신, 중소기업 (GROW)	국제동반자 (INTPA)	무역 (SCIC)	유럽혁신위원회 및 중소기업 (EISMEA)	유럽혁신위원회 및 중소기업 (EISMEA)	룩셈부르크의 인프라 및 물류(OIL)	고취, 논의, 참여 및 촉진 행동(IDEA)	내부감사 (IAS)
공동연구센터 (JRC)	사법 및 소비자 (JUST)	구조개혁지원 (REFORM)	해양 및 수산업 (MARE)	이주 및 내부 (HOME)	모빌리티 및 운송 (MOVE)	유럽연구위원회 (ERCEA)	법률 (SJ)	간행물 (OP)	회복 및 복원 TF (RECOVER)
지역 및 도시정책 (REGIO)	연구 및 혁신 (RTD)	조세 및 관세동맹 (TAXUD)	무역 (TRADE)	범역 (DGT)	유럽연구 (REA)	사무총국 (SG)			

자료: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info/departments_en?field_core_topics_target_id_entityreference_filter=All&field_department_tid_entityreference_filter=All, 검색일자: 2022. 9. 2.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그림 1-11-2] TAXUD 조직도



자료: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ystem/files/2022-09/organi_EN.pdf, 검색일자: 2022. 9. 5.

2. 전문기구

- EU는 27개 회원국의 약 4억 5천만명이 속한 공동체로²⁵⁾ 집행위원회의 제한된 인력으로 새로운 입법과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음²⁶⁾
 - 따라서 정책과정에서 입법제안 실무·자문과 정보제공, 회원국 간 의견조정 등 집행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함
- 이와 같은 집행위원회 총국의 제한된 인력 및 자원을 보완하기 위하여 EU는 전문 조직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²⁷⁾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규모의 전문가로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므로 위원회 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가. 커미톨로지위원회(Comitology Committees)

- 집행위원회는 통일된 EU 법률의 적용을 보장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실행법(Implement acts)의 채택을 위하여 커미톨로지위원회(Comitology Committees)를 구성함²⁸⁾
 - EU 내의 일관된 정책과 조치실행을 위해 집행위원회에서 일부 법령의 실행법의 입법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입법과정에 커미톨로지위원회가 개입함²⁹⁾
- 커미톨로지는 집행위원회가 법률에서 실행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적용되며, 모든 시행법에 대해 의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지는 않음³⁰⁾

25)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be-ko/wpge/m_7583/contents.do, 검색일자: 2022. 9. 8.

26) 송병준, 「유럽연합의 위원회 거버넌스: 유럽위원회 전문가그룹의 기능과 의미」, 『글로벌 정치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6. 6, p. 10.

27) 송병준(2016), pp. 10~11.

28)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info/law/law-making-process/adopting-eu-law/implementing-and-delegated-acts/comitology_en, 검색일자: 2022. 9. 8.

29) 송병준, 「리스본조약 체결 이후 신커미톨로지(실행입법)의 의미」, 『유럽연구』, 제33권 제3호, 유럽연구협회, 2015. 9, p. 327.

- 이 경우 집행위원회에 실행권한을 부여한 법률은 실행법에 포함된 조치를 정의할 때 집행위원회가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커미톨로지는 EU 법률의 실행법에 대해 EU 국가의 발언권을 부여하는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일련의 심의 및 자문절차임³¹⁾
 - 따라서 위원회에는 EU 각국의 대표 1명씩이 포함되며, 집행위원회의 관료가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함
- 커미톨로지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실행법을 채택하는 때에 심의절차 또는 자문절차를 이행하며, 위원회의 의견은 집행위원회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³²⁾
 - 일반적인 범위의 조치나 잠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실행법을 채택할 때 심의절차가 적용되며, 그 외 모든 실행법에서 자문절차가 적용됨
 - 심사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다수결에 따라 실행법 초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과반수의 의견이 없으면 초안을 채택 또는 수정할 수 있음³³⁾
 - 자문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에서의 논의와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채택할 실행법 초안을 결정해야 함³⁴⁾
- 2022년 현재 TAXUD는 26개의 커미톨로지위원회를 운영하며, 그중 관세법위원회(Customs Code Committee)는 14개의 분야로 구성됨³⁵⁾
 - 관세법위원회는 다음의 분야로 구성됨³⁶⁾

30)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info/law/law-making-process/adopting-eu-law/implementing-and-delegated-acts/comitology_en, 검색일자: 2022. 9. 8.

31)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info/law/law-making-process/adopting-eu-law/implementing-and-delegated-acts/comitology_en, 검색일자: 2022. 9. 8.

32)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info/law/law-making-process/adopting-eu-law/implementing-and-delegated-acts/comitology_en, 검색일자: 2022. 9. 8.

33) Regulation(EU) No.182/2011 제4조

34) Regulation(EU) No.182/2011 제5조

35)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ransparency/comitology-register/screen/committees?lang=en>, 검색일자: 2022. 9. 8.

36) Rules of procedure for the customs code committee 제1조 제1항

- 일반 관세 입법(General Customs Legislation)
- 자료 통합 및 조화(Data Integration and Harmonisation)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sed Economic Operator)
- 세관통제 및 위험관리(Customs Control and Risk Management)
- 관세 및 통계 분류표(Tariff and Statistical Nomenclature)
- 관세조치(Tariff Measures)
- 관세경감(Duty Relief)
- 원산지-Origin)
-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 관세채무 및 보증(Customs Debt and Guarantees)
- 수입 및 수출 절차(Import and Export Formalities)
- 통관 및 통과(Customs Status and Transit)
-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other than Transit)
- 지식재산권 집행(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관세법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채택해야 할 실행법 초안에 대하여 자문절차 또는 심의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함³⁷⁾
- 연합관세법(Union Customs Code; UCC)은 집행위원회가 관세법위원회의 지원을 받으며, 커미톨로지규정³⁸⁾에 따른 절차가 적용됨을 명시함³⁹⁾

나. 전문가그룹(Expert Groups)

- 집행위원회는 내부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건전한 정책결정을 위한 기반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함⁴⁰⁾

37) Rules of procedure for the customs code committee 제3조, 제5조

38) Regulation(EU) No.182/2011

39) UCC 제285조

40)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ransparency/expert-groups-register/screen/expert->

- 집행위원회는 입법에 요구되는 정보의 제약, 관료조직에 기인한 폐쇄성 등으로 사회적 요구 수용에 한계를 가지므로 외부로부터 기능적 지원을 받아야 함⁴¹⁾
- 이러한 전문성과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Expert Groups)을 집행위원회 또는 그 부서에서 구성함⁴²⁾
 - 전문가그룹에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공식그룹과 집행위원, 부국장 및 사무총장의 동의를 얻어 개별 집행위원회 부서에서 구성하는 비공식그룹이 있음
- 전문가그룹은 포럼의 형태로 구성되어 집행위원회에 의견, 권고사항, 보고서 등으로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견해를 제공함⁴³⁾
 - 다양한 출처에서 전문지식을 수집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수집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음
 - 전문가그룹은 다음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에 조언을 제공함
 - 입법제안 및 정책발의 준비
 - 위임법 준비
 - EU의 입법, 프로그램 및 정책의 이행
 - 커미톨로지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의 이행법의 초안 준비
- 전문가그룹의 조언은 집행위원회와 완전히 독립된 전문지식 및 견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집행위원회에 구속력이 없음⁴⁴⁾
 - 집행위원회는 특정 문제에 대한 견해를 수집하는 때에 전문가그룹뿐 아니라 연구기관, 녹서,⁴⁵⁾ 공개협의, 청문회 등을 고려하여 정책과 조치를 제안함

groups-explained?lang=en, 검색일자: 2022. 9. 8.

41) 송병준(2016), p. 18.

42)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ransparency/expert-groups-register/screen/expert-groups-explained?lang=en>, 검색일자: 2022. 9. 8.

43)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ransparency/expert-groups-register/screen/expert-groups-explained?lang=en>, 검색일자: 2022. 9. 8.

44)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ransparency/expert-groups-register/screen/expert-groups-explained?lang=en>, 검색일자: 2022. 9. 8.

- 2013년 TAXUD도 관세법과 관련하여 조언과 전문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공식 관세법 전문가그룹을 설립하였음⁴⁶⁾
 - 관세법위원회는 실행법 초안에 대한 논의, 확정 및 의견을 발표할 권한만 있으므로 위원회가 수행한 자문업무를 전문가그룹에서 연속성 있도록 담당함

- 관세 전문가그룹은 UCC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개발을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함⁴⁷⁾
 - 관세 전문가그룹의 임무는 다음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에 관세문제에 대한 조언과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임
 - 관세와 관련된 입법 제안 및 정책 발의 준비
 - UCC와 기타 법률을 보완하는 관세와 관련된 위임법의 준비
 - 관세와 관련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지침의 작성, 회원국 간 경험 및 선례의 교환 및 협력, 입법의 적용 및 정책의 발전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EU의 입법, 프로그램, 정책의 이행
 - 국제협정의 관세규정 협상을 위한 입장 준비
 - 국제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구에서 EU를 대표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될 초안 입장 준비
 - WCO 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구 또는 후원하에 설립된 기관에서 처리되는 문제의 조정
 - UCC에 따른 특별절차의 신청 및 승인과 관련하여 경제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45) 녹색(green paper)란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발표하는 정부제안 예비보고서로서 정부가 특별한 사안에 대해 새로운 법률 혹은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첫 번째 단계로 녹서를 발간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정책 및 법률적인 측면에서 필요하거나 조치 가능한 방법을 다루고, 이에 대한 공개적인 협의를 제안함(KOTRA,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bsGbn=244&bbbsSn=244&pNttSn=157310, 검색일자: 2022. 11. 29.)

46) EU 집행위원회, “Note to the expert group registry: Term of reference of the customs expert group,” 2016, p. 1.

47) EU 집행위원회(2016), pp. 1~2.

제2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I. 품목분류 개요

1. 품목분류체계

- 세계관세기구(WCO)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 협약)」을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관세, 무역, 통계 등에 사용되는 품목분류표를 마련함⁴⁸⁾
 - 「HS 협약」 체약국뿐 아니라 기타 행정부, 국제조직, 국제 상업 및 산업체는 국가관세를 설정하거나 경제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HS 분류표를 적용함

- EU와 회원국은 「HS 협약」의 체약국으로서 HS 품목분류표를 통합한 EU 공통품목분류표(Combined Nomenclature, CN)를 사용함⁴⁹⁾
 - HS 품목분류표는 6단위 부호로 식별되고 정해진 규칙을 기반으로 한 법적·논리적 구조에 따라 배열된 5천여 개의 품목으로 구성됨

48)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tariff/harmonized-system-general-information_en, 검색일자: 2022. 9. 20.

49)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tariff/harmonized-system-general-information_en, 검색일자: 2022. 9. 20.

- CN은 여기에 추가하여 8단위 세분류와 공동체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적 주석을 포함함
- 따라서 EU는 품목분류를 공통관세율 또는 비관세조치의 적용을 위해 물품이 분류되는 CN의 소호 또는 세분류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함⁵⁰⁾
 - 품목분류는 특정 소호에 대한 관세율을 정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관세조치나 다음과 같은 통관절차를 위해 필요함⁵¹⁾
 - 수입 또는 수출 허가의 신청
 - 수입 또는 수집 제한사항의 확인
 - 원산지증명서 발급
 - 수출환급 또는 이와 유사한 청구
 - 소비세 과세여부의 결정
 - 부가가치세 감면의 확인
- CN은 공통관세율과 EU 정책을 위해 물품을 취급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물품을 분류하기 위한 도구로 서두조항, 관세율표, 부속서로 구성됨⁵²⁾
 - 서두조항은 품목분류를 위한 통칙, 관세 또는 분류표 관련 규칙을 포함함
 - 관세율표는 품명, 부·류주와 CN의 세분류와 관련된 추가 주 및 주석, WTO 협정관세율 및 EU 자체 관세율, 관세 적용을 위한 보조단위를 포함함
 - 관세율표는 제97류까지 HS 품목분류표와 동일하지만 EU의 특별한 부호체계인 제98류 및 제99류가 추가됨
 - 제98류에는 완전한 산업플랜트의 구성부품이 분류되며, 제99류는 특정 이사물품을 위한 CN코드임⁵³⁾

50) UCC 제57조

51)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tariff/classification-goods_en, 검색일자: 2022. 9. 20.

52)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tariff/combined-nomenclature_en, 검색일자: 2022. 9. 20.

53) Council Regulation (EEC) No 2658/87 ANNEX I Combined Nomenclature Part 2 Chapter 98, Chapter 98

24 제2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 부속서는 농업, 화학 등 관세 관련 부속서를 포함함

[그림 2-1-1] EU Combined Nomenclature 예시

CHAPTER 23

RESIDUES AND WASTE FROM THE FOOD INDUSTRIES; PREPARED ANIMAL FODDER

Note

1. Heading 2309 includes products 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obtained by processing vegetable or animal materials to such an extent that they have lost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original material, other than vegetable waste, vegetable residues and by-products of such processing.

Subheading note

1. For the purposes of subheading 2306 41, the expression 'low erucic acid rape or colza seeds' means seeds as defined in subheading note 1 to Chapter 12.

Additional notes

1. Subheadings 2303 10 11 and 2303 10 19 include only residues from the manufacture of starch from maize and do not cover blends of such residues with products derived from other plants or products derived from maize otherwise than in the course of the production of starch by the wet process.

CN code	Description	Conventional rate of duty (%)	Supplementary unit
1	2	3	4
2301	Flours, meals and pellets, of meat or meat offal, of fish or of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unfit for human consumption; greaves:		
2301 10 00	- Flours, meals and pellets, of meat or meat offal; greaves	Free	—

자료: Council Regulation(EEC) No 2658/87 ANNEX I Combined Nomenclature Part 2

2. 품목분류 사전심사(BTI)

- 수출입자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적용하고 있다는 법적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 품목 분류 사전심사(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 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⁵⁴⁾
- 관세율과 수출입 허가와 같은 수출입 관련 요건은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품목분류가 필요함

54)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tariff/ebti-european-binding-tariff-information_en, 검색일자: 2022. 9. 22.

- BTI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이 법적으로 설립된 회원국 또는 사전심사가 사용될 회원국의 권한 있는 관세당국에 신청서와 첨부파일을 제출해야 함⁵⁵⁾
 - 신청서가 소관 회원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에 제출된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회원국은 소관 회원국에 신청서 승인 7일 이내에 이를 통지해야 함⁵⁶⁾

- BTI는 수입 또는 수출거래가 예정된 경우 신청해야 하며, 물품의 유형별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⁵⁷⁾
 - 품목분류와 관련 없는 사항만 차이점이 있고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물품들과 관련하여 하나의 신청을 해야 함⁵⁸⁾

-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물품의 사진, 견본을 포함한 물품의 자세한 사항을 제출해야 함⁵⁹⁾
 - BTI를 신청함으로써 신청인이 기밀정보를 제외한 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공개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⁶⁰⁾

- 2019년 10월 1일 이후 BTI 신청을 포함하여 BTI와 관련된 경제운영자(economic operator)와 관세당국의 모든 통신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짐⁶¹⁾
 - BTI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한 정보, 신청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후속 사항의 교환 및 저장을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이 사용되어야 함⁶²⁾
 - 관련 정보를 얻은 관세당국은 7일 이내에 전자적 시스템에 이를 제공해야 함

- 경제운영자는 회원국에 따라 EU 관세 무역거래자 포털(Trader Portal)⁶³⁾ 또는

55) UCC Delegated Act 제19조 제1항

56) UCC Implementing Act 제16조 제1항

57)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apply-bti-decision_en, 검색일자: 2022. 9. 22.

58) UCC Implementing Act 제16조 제2항

59)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apply-bti-decision_en, 검색일자: 2022. 9. 22.

60) UCC Delegated Act 제19조 제2항

61)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apply-bti-decision_en, 검색일자: 2022. 9. 22.

62) UCC Implementing Act 제21조 제1항

국가별 무역거래자 포털⁶⁴⁾에 BTI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⁶⁵⁾

- 국가별 무역거래자 포털을 제공하는 회원국의 경제운영자 또는 해당 회원국에 BTI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제운영자는 해당 국가의 포털에 접속해야 함

- 관세당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의 승인요건을 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⁶⁶⁾
 - 신청은 다음의 경우 승인될 수 없음⁶⁷⁾
 - 동일한 물품에 대해 결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동일한 세관 또는 다른 세관에 신청하거나 이미 신청한 경우
 - 신청이 BTI를 사용하거나 통관절차에 사용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없는 경우
 - 이러한 승인요건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그 검토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함⁶⁸⁾

- 관세당국은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을 승인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⁶⁹⁾
 - 기한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인에게 연장기한과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연장된 결정기한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63) Central Uniform User Management and Digital Signature system(https://customs.ec.europa.eu/taxud/uumds/cas/uumds-wayf/wayf?loginRequestId=ECAS_LR-165658-jCzheIA7sxWIzzj4nhq3tJWzb2j6N7rXqHZ1JfCYKzMmut5JLBHzX4pBm7AwzTKpK5EOzroBXgBPZi2NvW0pIvszG-CiDsmZJBYJewbX9dvSaw04-LzQGknQt5jHcUqugJBEi7SeohTdwjzbzqiwaR9JLtVLHtk4Y5zeSJ1QjzvcJnlzpqakZluhLvaj4gIfoEUF2FB0&locale=en)

64) 크로아티아: <https://e-carina.carina.hr/>

프랑스: <https://pro.douane.gouv.fr/>

독일: www.zoll-portal.de

폴란드: <https://puesc.gov.pl/web/puesc/e-wit>

스페인: https://sede.agenciatributaria.gob.es/Sede/en_gb/procedimientoini/DD02.shtml

65)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apply-bti-decision_en, 검색일자: 2022. 9. 22.

66) UCC 제22조 제2항

67) UCC 제33조 제1항

68) UCC Implementing Act 제16조 제4항

69) UCC 제22조 제3항

- 관세당국은 또한 신청인이 요건 및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한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BTI 결정을 위한 신청 상태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서 관세당국에 의해 공유되어야 함⁷⁰⁾
- BTI 결정은 신청인이 결정을 수령하거나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3년 동안 결정에 명시된 물품과 모든 면에서 일치하는 물품의 신고에 적용됨⁷¹⁾
 - BTI 결정은 효력 발생일 이후에 통관절차가 완료된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며⁷²⁾ EU의 관세영역 전체에 걸쳐서 유효함⁷³⁾
 - 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관세당국은 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의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지 모니터링 해야 함⁷⁴⁾
 - 결정을 받은 자는 BTI 결정이 적용되는 물품의 통관절차가 이행될 때 BTI 결정의 참조번호를 세관신고서에 기재해야 함⁷⁵⁾
 - 또한 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 이후 계속되거나 결정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세당국에 알려야 함⁷⁶⁾
 - 집행위원회는 의무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관세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BTI 사용 감시에 대한 결과를 회원국에 전자적으로 공유해야 함⁷⁷⁾
 - BTI 결정은 신청인이 제공한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정보를 기초로 하는 경우 무효가 되며, 최초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무효화가 발효됨⁷⁸⁾
 - 결정이 무효화되는 경우 결정을 받은 자에게 통지되어야 함

70) UCC Implementing Act 제21조 제5항

71) UCC 제22조 제4항, 제33조 제3항 제4항

72) UCC 제33조 제2항

73) UCC 제26조

74) UCC 제23조

75) UCC Implementing Act 제20조

76) UCC 제23조

77) UCC Implementing Act 제21조 제3항

78) UCC 제27조, 제34조 제4항

- 또한 BTI 결정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더 이상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효력이 정지되며, 효력정지는 소급되지 않음⁷⁹⁾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변경이나 조치가 적용되는 날부터 BTI 결정의 효력이 정지됨
 - CN 또는 CN에 기반을 두거나 CN의 세분류를 제공하는 기타 분류표가 변경된 경우
 - 집행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위한 조치를 채택한 경우
 - EU에서 규정이 채택되거나 협의가 체결되어 적용가능하게 되어 BTI 결정이 더 이상 관세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규정이나 협의의 적용일로부터 효력이 정지됨

- BTI 결정은 수정되지는 않지만, 결정을 위한 요건의 하나 이상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취소됨⁸⁰⁾
 - 다음에 따라 BTI 결정이 CN 또는 CN에 기반을 두거나 CN의 세분류를 제공하는 기타 분류표의 해설서와 모순이 발생하게 된 경우 취소됨
 - CN의 해설서의 변경
 -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 WCO의 품목분류 결정 또는 품목분류 의견, HS 품목분류표 해설서의 변경
 - 또는 특정 BTI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집행위원회의 결정, 행정적 오류 등이 있는 경우 BTI 결정이 취소됨⁸¹⁾

- BTI 결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결정을 받은 자는 해당 결정을 기반으로 하거나 해당 결정이 취소 등이 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음⁸²⁾

79) UCC 제34조 제1조 내지 제3조

80) UCC 제28조, 제34조 제5항 내지 제7항

81) UCC 제34조 제11항;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validity-period-bti-decisions_en, 검색일자: 2022. 9. 23.

82) UCC 제34조 제9항

- BTI의 연장사용은 결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연장사용을 하고자 하는 BTI 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이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한 관세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에는 연장된 기간 동안 사용될 물품의 양과 물품이 통관될 회원국이 기재되어야 함
 -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당국은 필요한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장사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
 - 해당 통지에는 연장기간의 만료일과 연장기간 동안 통관될 물품의 양을 명시해야 함⁸³⁾
 - 연장기간이 부여된 BTI 결정의 사용은 통지에 명시된 물량에 도달하는 때에 중단되며, 집행위원회는 감시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 즉시 통지해야 함⁸⁴⁾
- 집행위원회는 BTI 결정이 부정확하고 통일되지 않은 경우 BTI 결정을 내리는 것을 유예한다고 관세당국에 통지해야 함⁸⁵⁾
- 집행위원회가 유예를 통지한 날부터 정확하고 통일된 품목분류가 보장될 때까지 BTI 결정은 발급되지 않음⁸⁶⁾
 - 정확하고 통일된 품목분류는 집행위원회가 통지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EU 차원의 협의 대상이 되어야 함
 - BTI 결정이 유예된 경우 BTI 결정기한은 집행위원회가 정확하고 통일된 품목분류가 보장된다고 통지하는 때까지 연장됨⁸⁷⁾
 - 결정의 연장기한은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함

83) UCC Implementing Act 제22조

84) UCC Implementing Act 제22조

85) UCC 제34조 제9항; UCC Implementing Act 제23조

86) UCC Implementing Act 제23조

87) UCC Delegated Act 제20조

30 제2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 그러나 BTI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석의 완료가 기간 내에 불가능한 경우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음
- BTI 결정의 유예가 철회된 경우 집행위원회는 이를 즉시 관세당국에 통지해야 함⁸⁸⁾

88) UCC 제34조 제9항; UCC Implementing Act 제23조

II.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례

□ TAXUD는 BTI 결정사례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수출입통계를 작성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함

○ 품목분류 사례는 HS CODE(CN CODE의 6단위)와 연계하여 ① 식료 및 직접 소비재, ② 원료 및 연료, ③ 경공업품, ④ 중화학공업품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II-1〉 HS CODE별 사례 구분체계

구분	HS CODE
식료 및 직접소비재	01, 02, 03, 04, 05, 07, 08, *09, *10, 11, *12, **1212.21, **1212.29,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04.19
원료 및 연료	06, 0909, 1001.11, 1001.91, 1002.10, 1003.10, 1004.10, 1007.10, 1008.21, 1202.30, 1207.21, 1207.70, **1212.21, **1212.29, 13, 14, *25, **2520.20, 26, 27, 3101, 3104.20, **3102.50, **3104.30, **3104.90, 3403, **3816.00, 4001~4004, 41, *43, 4401~4403, 4406, 45, 5604, 7102.10~7102.29, 7105, 7112, 7204.10,~7204.49, 7401~7404, 7501, 7503, 7602, 7802, 7902, 7903, 7905, 8002, 8104.20, 8549.21, 8549.29
경공업품	2523, **3401.19, 3406, 3605, 3606, **3816.00, 3825.10~3825.30, **3917.10, 3922~3926, *40, 42, 4303, *44,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8201.50, 8201.60, 8211~8215, 8539.10, 8539.21~8539.32, **8539.39, 8539.41, **8539.49, 8539.51, 8539.90, **8549.31, **8549.91, 9003, 9113, 92, *94, **9406.90, 95, *96, 97
중화학공업품	1520, 1702.50, 2404.12, **2404.19, 2404.92, 2404.99, **2520.20, 28, 29, 30, *31, **3102.50, **3104.30, **3104.90, 32, 33, *34, **3401.19, 35, *36, 37, *38, **3816.00, *39, **3917.10, 7110, 7111, 7118, *72, 73, *74, *75, *76, *78, *79, *80, *81, *82, 83, 84, *85, **8539.39, **8539.49, **8549.31, **8549.91, 86, 87, 88, 89, *90, *91, 93, 9401.20, 9406.20, **9406.90, 9615.90

주 : * 일부 6단위 호가 다른 분류에 속하는 류

** 2 이상의 분류에 속하는 6단위 호

자료: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2022년 HS 세번별, 성질별, 신성질별 연계표」, 2022. 4, 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가. 동물성 생산품(제01류~제05류)

1) 닭의 도체⁸⁹⁾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DEBTI35907/20-1
- 유효기간: 2020. 11. 27.~ 2023. 11. 26.
- 발행국가: 독일
- 결정 품목번호: 제0207.13-99호

나) 물품 상세

- 닭을 도축한 후 식품 생산공장에서 가공하면서 다른 물질을 추가하지 않고 4℃로 냉각한 신선한 닭의 도체로 식용에 적합함
 - 닭의 날개와 가슴살을 분리하고 뒷부분에는 허벅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절반으로 절단된 상태임
 - 식품 또는 동물 사료로 사용되거나 추가 가공하기 위해 포장되어 판매됨

다) 분류 근거

- 제02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의 도체, 이분도체, 사분도체, 조각 또는 설

89)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DEBTI35907/20-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02&nomenc=02&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38&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9. 27.

육으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훈제한 것이 분류됨

- 해당 물품은 신선·냉장한 닭의 도체로 식품이나 동물 사료로 사용되거나 가공되므로 식용에 적합한 닭의 도체임
- 따라서 CN 해석에 대한 통칙 제1호⁹⁰⁾ 및 제6호⁹¹⁾에 따라 신선·냉장한 닭의 절단육과 설육이 분류되는 제0207.13호에 분류됨

2) 염장한 돼지고기⁹²⁾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FRBTIFR-BTI-2022-00190
- 유효기간: 2022. 7. 7.~2025. 7. 6.
- 발행국가: 프랑스
- 결정 품목번호: 제0210.19-81호

나) 물품 상세

- 돼지고기를 사람의 소비를 위하여 뼈를 제거하여 소금에 절이거나 건조한 것으로 벌크상태 또는 플라스틱으로 포장되어 판매됨
- 통째로 제공되는 것, 조각으로 된 것, 얇게 썬 것이 포함되지만 뼈가 있는 햄은 포함되지 않음

90) 이 표의 부·류·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91)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

92)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FRBTIFR-BTI-2022-00190&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02&nomenc=02&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38&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9. 27.

다) 분류 근거

- 제02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의 도체, 이분도체, 사분도체, 조각 또는 설육으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훈제한 것이 분류됨
 - 염장 또는 염수장이란 소금의 함량이 중량의 1.2% 이상인 것을 말하며 뜨거운 물이나 증기로 가벼운 열처리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함
 - 염장·건조·훈제한 육은 장·위·방광이나 껍질, 이와 유사한 케이싱에 싸여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잘게 썰거나 부수어 다른 재료와 결합되지 않아야 함
 - 해당 물품은 염장 또는 건조한 돼지고기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염장·건조·훈제한 육이 분류되는 제0210호에 분류됨

- 제0210호의 돼지고기는 뼈의 여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데, 뼈가 있는 것이란 뼈가 전혀 제거되지 않았거나 뼈의 일부가 제거된 육을 말함
 - 해당 물품은 뼈가 제거되었으므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뼈가 없는 넓적 다리살·어깨살 등이 분류되는 제0210.19호에 분류됨

3) 냉동 송어⁹³⁾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DEBTI5272/22-1
- 유효기간: 2022. 3. 24.~2025. 3. 25.
- 발행국가: 독일
- 결정 품목번호: 제0303.14-90호

93)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DEBTI5272/22-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03&nomencto=03&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97&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9. 28.

나) 물품 상세

- 머리, 껍질, 지느러미, 뼈는 있지만 내장, 배 및 등 쪽의 뼈를 제거한 무지개송어를 급속 냉동하였음
 - 무지개송어는 글레이즈 되어 물과 함께 냉동된 후 5kg 단위 상자에 포장되어 제공됨

다) 분류 근거

- 제03류에는 모든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는데, 식용에 사용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 등은 제외함
 - 냉동어류는 통째로 된 것·머리가 없는 것·창자를 뺀 것이나 뼈 또는 연골이 있는 채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0303호에 분류됨
 - 반면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는 고기의 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는 다란 고기 조각으로 머리·내장·지느러미·뼈를 제거한 어류의 살로 구성됨
- 해당 물품은 머리·내장·지느러미는 제거되었지만 뼈가 있는 상태이므로 제0303호의 냉동어류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냉동된 송어가 분류되는 제0303.14호에 분류함

4) 염장한 대구⁹⁴⁾

가) 결정 정보

94)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NLBTI2021-095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03&nomenc=03&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97&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9. 29.

36 제2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 BTI 참조번호: NLBTI2021-0951
- 유효기간: 2022. 2. 15.~2025. 2. 14.
- 발행국가: 네덜란드
- 결정 품목번호: 제0305.62-0050호

나) 물품 상세

- 작은 조각 형태의 흰살생선으로 훈제 또는 건조되지 않고 최소 12%의 염분을 포함한 냉장된 대구입
 - 식용을 위하여 소매 판매용으로 제공되며 순 중량 10kg으로 비닐포장됨

다) 분류 근거

- 제03류에는 모든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는데, 식용에 사용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 등은 제외함
 - 제0305호의 염장한 대구 필레는 추가 가공 없이 사람이 섭취하기 적합하며, 염분함량이 중량기준 12% 이상인 것을 말함
 - 총 염분함량이 중량기준으로 12% 미만인 냉동 대구 필레는 냉동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보존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0304호에 분류함
- 해당 물품은 염분이 12% 이상 포함된 대구살이므로 제0305호의 염장한 대구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건조하지도 훈제하지도 않은 염장한 대구가 분류되는 제0305.62호에 분류됨

5) 녹색혼합 가루⁹⁵⁾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DEBTI19751/22-1
- 유효기간: 2022. 7. 4.~2025. 7. 3.
- 발행국가: 독일
- 결정 품목번호: 제0309.90-0025호

나) 물품 상세

-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한 녹색혼합의 건조 분말로 20kg 또는 25kg의 팩으로 포장되어 제공됨
 - 이는 관세목적상 연체동물의 식용 가루 또는 분말에 해당함

다) 분류 근거

- 제03류에는 모든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는데, 식용에 사용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 등은 제외함
 - 연체동물의 대표적인 종류는 굴·가리비·홍합·갑오징어·오징어·문어·달팽이·클램·새조개·피조개·전복·수정고등류임
 - 제0309호에는 식용에 적합한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가루·거친가루와 펠릿을 분류함
 -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가루·거친가루와 펠릿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2301호에 분류함

95)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DEBTI19751/22-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03&nomencto=03&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97&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9. 29.

- 해당 물품은 식용에 적합한 녹색홍합의 분말로서 제0309호의 연체동물의 가루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어류가 아닌 수생동물의 가루가 분류되는 제0309.90호에 분류함

6) 귀뚜라미 가루⁹⁶⁾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CZBTI32/101698/2022-580000-04/01
- 유효기간: 2022. 9. 2.~2025. 9. 1.
- 발행국가: 체코
- 결정 품목번호: 제0410.10-9100호

나) 물품 상세

- 식품보조제로 사용가능한 귀뚜라미 가루로 기타 첨가제는 포함하지 않으며 단백질 함량이 67%임
 -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진공포장되어 제공됨

다) 분류 근거

- 제4류에는 곤충과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됨
 - 식용에 적합한 곤충은 제0410호에 특개되어 분류되고,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죽은 곤충은 제0511호에 분류됨

96)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CZBTI32/101698/2022-580000-04/0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03&nomenc=03&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97&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9. 29.

- 해당 물품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식품산업에 사용되어 사람이 섭취할 수 있음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식용의 곤충이 분류되는 제0410.10호에 분류됨

나. 식물성 생산품(식용)(제07류~제12류)

1) 일시보존 처리된 오이⁹⁷⁾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GRBTIDEC-118/2020
- 유효기간: 2020. 7. 3.~2023. 7. 2.
- 발행국가: 그리스
- 결정 품목번호: 제0711.40-00호

나) 물품 상세

- 아황산화합물을 포함하는 아세트산 용액에 일시적으로 보존된 오이로 오이, 물, 소금, 아세트산, 피로아황산칼륨, 염화칼슘으로 구성됨
 - 강하고 매운맛과 아황산염의 높은 함량(220mg/kg) 때문에 그 상태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으며 추가 가공이 필요함

다) 분류 근거

- 제7류에는 신선·냉장·냉동이나 일시 보존처리 또는 건조시킨 채소가 분류됨

97)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GRBTIDEC-118/2020&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o=&valenddate=&valenddato=&suppldate=&nomenc=071140&nomencno=071140&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3&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5.

40 제2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 제0711호에는 사용하기 전 운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보존만을 위하여 처리한 채소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 분류됨
 - 일시적인 보존처리란 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것을 포함함
- 제0711호에는 염수로 일시 보존처리된 것에 추가해서 소다수나 락트산 발효에 의한 처리 등 특수처리된 물품은 제외되며 이들은 제20류에 해당함
- 해당 물품은 아세트산 용액에 일시적으로 보존된 오이로 완전한 락트산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식용을 위해 추가 가공이 필요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일시적인 보존처리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오이가 분류되는 제0711.40호에 분류됨

2) 향신료를 뿌린 충전용 케이싱⁹⁸⁾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PLBTIWIT-2021-001169
- 유효기간: 2021. 10. 21.~2024. 10. 20.
- 발행국가: 폴란드
- 결정 품목번호: 제0910.91-90호

나) 물품 상세

- 육류 또는 유제품 충전용 케이싱으로 비스코스 직물로 제작되며, 내부에 백리향,

98)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PLBTIWIT-2021-001169&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0910&nomenc=0910&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75&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5.

고수풀, 마늘, 양파, 파스닙의 가루가 뿌려져 있음

○ 완제품이 제조된 후 직물은 제거되고 식품에 향신료 층이 남게 됨

다) 분류 근거

□ 제9류에는 정유와 방향성분이 풍부하며 그들의 독특한 맛 때문에 주로 조미료로 사용하는 식물성 생산품인 향신료가 분류됨

○ 향신료의 혼합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함

-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두 가지 이상의 혼합물은 해당 호로 분류함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두 가지 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로 분류함
-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해당 물품은 향신료의 혼합물로 마늘, 양파와 같은 채소가 포함되었으나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은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류의 주석 1을 적용하여 향신료의 혼합물이 분류되는 제0910.91호에 분류함

3) 퀴노아 혼합물⁹⁹⁾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ESBTIESBTI2021SOL297

99)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ESBTIESBTI2021SOL297&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100850&nomencto=100850&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3&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5.

42 제2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 유효기간: 2021. 6. 2.~2024. 6. 1.
- 발행국가: 스페인
- 결정 품목번호: 제1008.50-00호

나) 물품 상세

- 퀴노아와 탈수채소를 280g씩 포장한 것으로 식용으로 섭취하기 위해서 요리가 필요함
 - 화이트 퀴노아, 레드 퀴노아, 블랙 퀴노아, 당근, 부추, 골파로 구성됨

다) 분류 근거

- 제10류에는 곡물을 분류하며,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함
 - 다만 사포닌을 분리해내기 위해 과피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퀴노아로 그 밖의 다른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제1008호에 분류함

- 해당 물품은 제1008호의 퀴노아가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식품용 재료임
 - 따라서 해당 물품은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100, 제6호에 따라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퀴노아가 분류되는 제1008.50호에 분류됨

100)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기름 및 조제식료품(제15류~제24류)

1) 해바라기유의 식용혼합품¹⁰¹⁾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ATBTI2020000150-DEC
- 유효기간: 2020. 6. 29.~2023. 6. 28.
- 발행국가: 오스트리아
- 결정 품목번호: 제1517.90-9990호

나) 물품 상세

-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에 중쇄 트리글리세라이드 오일, 극소량의 비타민 E, D3 및 K2, 유지방(1.2% 미만)을 첨가한 밝은 황색의 투명한 액상의 기름임
 - 스퀴즈 피펫과 나사 뚜껑이 있는 20ml의 호박색 유리 바이알에 담겨 내용물 명세서가 인쇄된 상자에 포장됨
 - 건강 보조식품으로 사용되며, 제2202호의 음료에 해당하지 않음

101)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ATBTI2020000150-DEC&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valenddate=&valenddate=&suppldate=&nomenc=1517&nomenc=1517&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79&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5.

[그림 2-11-1] 해바라기유의 식용혼합품



자료: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ATBTI2020000150-DEC&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1517&nomencto=1517&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79&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5.

다) 분류 근거

- 제15류에는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과 이들의 가공품, 조제한 식용 지방과 기름 등이 분류됨
 - 제1517호는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제15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이 분류됨
 - 이 호의 물품은 유화·교반·구조의 조정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될 수 있음
 - 이 호에서는 버터나 유지방을 전 중량의 15% 초과 함유하고 있는 조제품을 제외함
 - 제1516호에는 리에스텔화한 지방과 기름 즉, 유리 지방산의 혼합물이나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를 글리세롤과 직접 합성하여 얻어진 트리글리세라이드를 분류함
 - 다만, 구조의 변화와 같이 식용 목적으로 조제된 수소첨가 등을 한 지방과 그 분획물은 이 호에서 제외함

- 해당 물품은 중쇄 트리글리세라이드 오일, 비타민, 유지방이 소량 첨가된 해바라기유의 식용조제품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류의 지방이나 기름으로 만든 식용혼합물이나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1517.90호에 분류됨

2) 닭고기 조제품¹⁰²⁾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ESBTIESBTI2021SOL209
- 유효기간: 2021. 4. 6.~2024. 4. 5.
- 발행국가: 스페인
- 결정 품목번호: 제1602.32-90호

나) 물품 상세

- 닭고기 52%, 소고기 7%, 렌즈콩 가루 및 기타 첨가제를 사용한 즉석조리식품으로 380g의 금속 용기에 포장됨
- 약간 분홍빛이 도는 연한 갈색으로 균일한 육질, 부드러운 질감, 강렬한 고기 맛을 내는 조제식료품임

다) 분류 근거

- 제16류에는 육이나 설육·피·곤충·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 무

102)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ESBTIESBTI2021SOL209&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valenddate=&valenddate=&suppldate=&nomenc=160232&nomenc=160232&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66&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 일자: 2022. 10. 5.

척추동물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함

-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곤충 등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함
- 또한 이들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_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함
 - 육류, 가금류의 중량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뼈의 무게는 고려하지 않음
- 해당 물품은 닭고기와 소고기의 혼합조제품으로 중량에 따라 닭고기의 조제식료품으로 분류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닭고기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1602.32호에 분류함

3) 파스타 세트¹⁰³⁾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FRBTIFR-BTI-2020-04097
- 유효기간: 2020. 8. 28.~2023. 8. 27.
- 발행국가: 프랑스
- 결정 품목번호: 제1902.30-9090호

나) 물품 상세

- 부드럽고 점도가 있는 스트립 형태의 파스타를 미리 조리하여 탈수채소와 분말수

103)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FRBTIFR-BTI-2020-04097&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190230&nomenccto=190230&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149&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7.

프 국물과 세트로 구성됨

- 투명 플라스틱 포장에 탈수채소와 분말수프가 들어있는 2개의 봉지와 함께 제공됨

다) 분류 근거

- 제19류에는 곡물과 우유로부터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을 분류함
 - 제1902호의 파스타는 조리한 것이거나, 포함비율에 상관없이 육·어류·치즈나 그 밖의 재료로 속을 채운 것이거나, 채소·소스·육과 같은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한 조제한 요리일 수 있음
- 해당 물품은 파스타에 채소와 수프를 추가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파스타에 의해 부여됨
 - 따라서 CN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의 나목, 제6호에 따라 속을 채우지 않은 조리한 파스타가 분류되는 제1902.30호에 분류함

4) 영양 보충제¹⁰⁴⁾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FIBTI709/03.01.01/20
- 유효기간: 2020. 9. 17.~2023. 9. 16.

104)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FIBTI709/03.01.01/20&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 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210690&nomenc to=210690&key 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3516&link 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 일자: 2022. 10. 7.

- 발행국가: 핀란드
- 결정 품목번호: 제2106.90-9849호

나) 물품 상세

- 초유 분말과 비타민을 함유한 영양 보충제로 마름모꼴의 정제 120개가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소매포장 되어 있음
 - 1일 권장량은 1~3정이며, 전분과 포도당 함량은 중량 기준 $18.7 \pm 1.9\%$ 임

다) 분류 근거

- 제21류에는 각종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는데, 제2106호에는 CN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식이보조제로 부르는 조제품을 포함
 - 식이보조제는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무기물·아미노산·농축물·추출물·분리물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임
 - 이 조제품들은 관련 영양성분의 결핍 이외에 질병에 대한 치료적·예방적인 효과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의 활성성분을 함유하지는 않음
 - 특정한 질병에 대한 치료적·예방적인 효과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의 활성성분을 함유하는 그 밖의 조제품들은 이 호에서 제외함
 - 특히 식이보조제는 캡슐, 정제, 알약과 같은 정량의 형태로 제시됨
- 해당 물품은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영양 결핍을 예방하기 위한 식이보조제에 해당함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제2106.90호에 분류함

5) 육류 및 뼈의 가루¹⁰⁵⁾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PLBTIWIT-2020-000700
- 유효기간: 2020. 6. 12.~2023. 6. 11.
- 발행국가: 폴란드
- 결정 품목번호: 제2301.10-00호

나) 물품 상세

- 육류와 뼈의 가루로 동물의 도축 폐기물로부터 채취한 동물사체 또는 그 부분을 가열, 건조 및 분쇄공정을 통해 생산함
 -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하며 시멘트 생산이나 용광로의 연소를 위하여 사용됨

다) 분류 근거

- 제23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하는 동물성의 특정 생산품, 식물성 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를 분류함
 - 제2301호는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분류함
 - 이들은 지방과 기름을 제거한 물품을 재차 열처리하여 건조와 살균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잘게 부수어 생산함

105)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PLBTIWIT-2020-000700&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 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2301&nomenc to=2301&key 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6&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7.

- 이 호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은 주로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나, 비료 등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음
- 해당 물품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고,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육 및 뼈의 가루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육이나 설육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이 분류되는 제2301.10호에 분류함

2. 원료 및 연료

가. 식물성 생산품(비식용)(제06류, 제13류~제14류)

1) 솔방울 장식품¹⁰⁶⁾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DEBTI10999/20-1
- 유효기간: 2020. 5. 11.~2023. 5. 10.
- 발행국가: 독일
- 결정 품목번호: 제0604.90-99호

나) 물품 상세

- 금색 반짝이를 뿌린 솔방울을 단 나무막대를 나무원판에 꽂아 넣은 나무로 만든 장식품으로 2개를 세트로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 제공됨

106)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DEBTI10999/20-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0604&nomenccto=0604&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36&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7.

- 솔방울은 자연건조 되었으며, 나무원판은 나무껍질이 부착된 자연건조 가지를 두께 1.5cm, 지름 4.5cm의 작은 원판으로 자른 형태이며 접착제로 부착됨

[그림 2-11-2] 솔방울 장식품



자료: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DEBTI10999/20-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0604&nomenc=0604&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36&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7.

다) 분류 근거

- 제06류에는 모든 살아있는 식물과 절화·꽃봉오리·잎·가지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으로 신선한 것·건조한 것·염색한 것·표백한 것·침투시킨 것이나 장식용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된 것을 분류함
 - 제0604호는 식물의 잎·수목·관목과 그 밖의 식물의 부분으로 결합하여 만든 꽃다발용·장식용 제품이 포함됨
 - 이러한 제품은 주로 화훼제품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리본, 철사 테 등 다른 재료로 된 부속품을 사용하였더라도 이 호에 분류함
- 해당 물품은 접착제와 반짝이가 추가되었으나 식물의 가지 등의 조제품이며, 그 본질적 특성이 솔방울과 나무원판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장식용으로 공급되는 물품으로 용도, 범위, 수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식물의 천연

부분인 솔방울과 나무원판에 본질적 특성이 있음

- 나무 가공품인 나무막대는 접합의 역할을 수행함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의 나목, 제3호의 다목, 제6호에 따라 식물의 잎 등을 건조 등을 한 것이 분류되는 제0604.90호에 분류함

2) 커피가루를 도포한 벽지¹⁰⁷⁾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ATBTI2021000097-DEC
- 유효기간: 2021. 5. 4.~2024. 5. 3.
- 발행국가: 오스트리아
- 결정 품목번호: 제1404.90-00호

나) 물품 상세

- 지지대에 분쇄된 커피콩을 도포하여 과립형의 표면을 갖는 직사각형 시트제품으로 1,360mm의 롤 형태로 제공됨
- 갈색, 검정색의 제품으로 벽지, 가구의 앞면 또는 디자인 요소로 사용됨

다) 분류 근거

- 제14류에는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하며, 주로 직물의 제조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는 제외됨
- 제1404호는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 식물성 재료를 방직용 섬유직물·종이

107)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ATBTI2021000097-DEC&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1404&nomenco=1404&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40&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7.

등의 지지물 위에 층상으로 한 것과 방직용 섬유직물·종이 등의 사이에 넣어 철 하거나 단순히 봉한 것을 포함함

- 반면 제59류에는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을 분류함
 - 제5903호의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란 벽이나 천장의 장식용으로 폭이 45cm 이상인 롤 모양의 제품을 말하며, 구성하는 직물의 표면이 뒷면에 고정되었거나 뒷면을 붙일 수 있도록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제품을 포함함
- 해당 물품은 지지대 위에 식물성 재료인 커피가루를 도포한 물품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 제1404.90호에 분류함

나. 광물성 생산품(제25류~제27류)

1) 석회석 분말¹⁰⁸⁾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IEBTIIENEN004-2022-BTI129
- 유효기간: 2022. 4. 11.~2025. 4. 10.
- 발행국가: 아일랜드
- 결정 품목번호: 제2517.49-0000호

108)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IEBTIIENEN004-2022-BTI129&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251749&nomenccto=251749&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10&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7.

나) 물품 상세

- 무취, 백색의 석회석 분말로 중질 탄산칼슘이 주성분으로 접착제로 사용됨
 - 탄산칼슘(CAS NO: 1317-65-3) 98% 이상, 석영(CAS NO: 14808-60-7) 1% 미만, 물(CAS NO: 7732-18-5) 1% 미만으로 구성됨

다) 분류 근거

- 제25류에는 일반적으로 암석광물의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것이나 세척한 것·부순 것·가루 모양인 것·체로 친 것·기계적 또는 물리적 선광한 것을 분류함
 - 제2517호에는 자갈·왕자갈·쇄석을 분류하는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용·도로 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리스트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임
 - 천연의 석회석과 초크 즉 천연의 탄산칼슘은 세척과 분쇄했는지에 상관없이 제2836호에서 제외하여 제25류에 분류함
- 해당 물품은 석회석을 분쇄한 천연의 탄산칼슘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됨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대리석을 제외한 석비용·건축용의 암석의 가루가 분류되는 제2517.49호에 분류함

2) 아연 회109)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DEBTI21383/20-1

109)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DEBTI21383/20-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2620&nomencto=2620&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5&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7.

- 유효기간: 2020. 8. 14.~2023. 8. 13.
- 발행국가: 독일
- 결정 품목번호: 제2620.19-0000호

나) 물품 상세

- 아연 도금과정에서 아연 회를 처리하여 얻는 갈색의 미세한 분말형태의 가공 아연 회로 1,000kg으로 포장되어 공급됨
 - 아연의 함량이 중량기준으로 최소 66.5%인 산화아연으로 주로 구성되며,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산화철로 인하여 갈색을 띠
 - 원료를 습식 화학처리, 하소 및 분쇄한 후 체에 걸러 생산되며, 산화아연은 아연을 함유한 비료의 생산에 사용됨

다) 분류 근거

- 제26류에는 금속의 광, 슬래그·회를 분류하며, 제2620호에는 슬래그, 회, 잔재물로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이나 금속 화합물의 제조 원료용의 것을 포함함
 - 제2620호에는 제28류에 해당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제외됨
- 해당 물품은 아연조에서 도금하고 남은 잔재물인 아연 스펠터를 가공하여 얻은 아연 회로 불순물이 포함된 산화아연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아연 스펠터 외의 주로 아연을 함유한 회가 분류되는 제2620.19호에 분류함

3) 석탄 연소 부산물¹¹⁰⁾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PLBTIWIT-2019-001714
- 유효기간: 2019. 11. 21.~2022. 11. 20.
- 발행국가: 폴란드
- 결정 품목번호: 제2621.90-0000호

나) 물품 상세

- 석탄 연소의 부산물로 이산화탄소와 질소로 채워진 구형의 알루미늄-규산염 입자 형태의 회로 수분함량이 약 30~35%인 회백색의 미세 분말임
 - 건축요소, 절연 요소 등에 사용되는 세노스피어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됨

다) 분류 근거

- 제26류에는 금속의 광, 슬래그·회를 분류하며, 제2621호에는 광의 처리공정이나 야금공정 외의 물질이나 공정에서 생긴 슬래그와 회도 분류함
 - 이 호에는 주로 석탄·갈탄·토탄이나 기름을 산업용 보일러에서 연소시켜 생산되는 광물의 회와 클링커를 포함함
 - 이 물품은 주로 시멘트 제조용 원료·콘크리트와 광산 뒤택음용 시멘트 첨가제·플라스틱과 페인트의 광물성 충전제·빌딩 블록 제작과 제방·고속도로 경사로와 교량지시대 같은 도시 공학 구조물의 가벼운 골재로 사용함

110)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PLBTIWIT-2019-001714&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 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2621&nomenc to=2621&key 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2&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 22. 10. 7.

- 해당 물품은 열병합 발전소 등의 공정에서 얻어진 석탄 연소 부산물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 잔재물 외의 그 밖의 슬래그와 회가 분류되는 제2621.90호에 분류함

다. 원피, 모피(제41류, 제43류)

1) 자투리 소가죽¹¹¹⁾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SIBTI2020/0085
- 유효기간: 2020. 11. 26.~2023. 11. 25.
- 발행국가: 슬로베니아
- 결정 품목번호: 제4107.92-1000호

나) 물품 상세

- 소가죽을 재단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소가죽으로 여러 가지 모양과 크기로 제공되지만 작은 잡화로 추가 가공하는 데 적합함
 - 표면처리, 무두질, 염색, 바니시 처리, 연화되었으며 두께는 약 1.2mm임

다) 분류 근거

- 제41류에는 원피와 가죽이 분류되며, 전신의 모양이든 일부분의 모양이든 스트립

111)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SIBTI2020/0085&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4107&nomencto=4107&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15&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7.

모양의 것이든 시트모양의 것이든 모두 이 류에 분류함

- 제4107호에는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나 마속동 물의 가죽을 분류함
 - 제4115호에는 가죽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생긴 가죽의 페어링과 그 밖의 웨이스 트를 분류하지만 가죽 물품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가죽 조각은 제외함
- 해당 물품은 표면처리 된 소가죽으로 가죽잡화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음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표면을 도돌도돌하게 처리 한 전신 모양 외의 소가죽이 분류되는 제4107.92호에 분류함

2) 콤포지션 레더¹¹²⁾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FRBTIFR-BTI-2020-07650
- 유효기간: 2021. 2. 18.~2024. 2. 17.
- 발행국가: 프랑스
- 결정 품목번호: 제4115.10-0000호

나) 물품 상세

- 재생가죽과 섬유로 구성된 콤포지션 레더 시트로 137cm 폭의 롤 형태로 제공되며, 신발의 갑피 제조용으로 사용됨

112)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FRBTIFR-BTI-2020-07650&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 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4115&nomenc to=4115&key 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4&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 22. 10. 7.

○ 재생가죽은 55%, 재생 폴리에스터 22%, 폴리우레탄 23%로 구성됨

다) 분류 근거

- 제41류에는 원피와 가죽이 분류되며, 전신의 모양이든 일부분의 모양이든 스트립 모양의 것이든 시트모양의 것이든 모두 이 류에 분류함
 - 제4115호에는 천연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한 콤포지션 레더를 분류하며 플라스틱·고무·종이와 판지나 도포된 직물 등으로 만든 모조 가죽은 제외함
 - 또한 콤포지션 레더는 슬래브 모양·시트 모양이나 스트립 모양으로 된 것은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함
- 해당 물품은 가죽과 방직용 섬유제품의 복합물품으로 물품의 55%를 차지하는 가죽이 물품에 필수적인 특징을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의 나목, 제6호에 따라 슬래브 모양·시트 모양·스트립 모양의 콤포지션 레더가 분류되는 제4115.10호에 분류함

3) 인조모피 담요¹¹³⁾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FRBTIFR-BTI-2021-06280
- 유효기간: 2021. 10. 14.~2024. 10. 13.

113)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FRBTIFR-BTI-2021-06280&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4304&nomenccto=4304&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3&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7.

60 제2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 발행국가: 프랑스
- 결정 품목번호: 제4304.00-0000호

나) 물품 상세

- 폴리에스테르로 제작된 분홍색 아기담요로 편물제에 스티칭으로 고정된 폴리에스테르 모발이 있는 흰색의 인조모피 안감을 가지고 있음
 - 폴리에스테르 100%로 구성되며 폭 100cm, 너비 70cm 크기로 비닐봉지에 포장되어 소매용으로 공급됨

다) 분류 근거

- 제43류에는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을 분류하며, 인조모피란 동물의 털·그 밖의 섬유를 가죽·직물·그 밖의 재료에 접착하거나 봉합하여 붙인 것을 말함
 - 제4304호에는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부에 붙인 의류와 의류 부속품을 분류하며, 인조모피를 오직 트리밍으로 사용한 것은 제외함
 - 이 호에는 인조모피로 만든 것이거나 모피가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는 재료로 만든 그 밖의 모든 제품인 담요·덮는 포 등을 포함함
- 해당 물품은 폴리에스테르제의 인조모피를 안감으로 가지는 담요로 단순한 트리밍 이상의 역할을 하므로 인조모피가 본질적 특성을 부여함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인조모피와 그 제품이 분류되는 제4304.00호에 분류함

라. 목재(제4401호~제4404호, 제4406호, 제45류)

1) 목탄¹¹⁴⁾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PLBTIWIT-2020-001497
- 유효기간: 2020. 12. 31.~2023. 12. 30.
- 발행국가: 폴란드
- 결정 품목번호: 제4402.90-00호

나) 물품 상세

- 나무를 건식증류하여 파라핀에 담긴 증석탄으로 가볍고 부서지기 쉬운 불규칙한 모양의 다공성 물품임
 - 파라핀은 총 제품 중량 중 13%를 차지하며, 파라핀으로 인하여 빠르게 발화하고 추가 점화가 필요하지 않음

다) 분류 근거

- 제44류에는 미가공의 목재, 목재의 반제품과 일반적으로 목재로 된 제품을 분류하며, 제4402호에는 목탄을 분류함
 - 목탄은 공기를 차단시켜 탄화시킴으로써 제조하며 제4402호에는 블록 모양·봉

114)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PLBTIWIT-2020-001497&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4402&nomenc=4402&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7&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7.

62 제2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모양·알갱이 모양·가루 모양의 것을 분류함

- 또한 이 호에는 타르나 그 밖의 물질로 응결시켜 브리켓·정제·구 모양과 같은 모양 등으로 만든 목탄을 분류함
- 해당 물품은 나무로 만든 즉석탄으로 파라핀이 아닌 목탄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함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대나무 이외의 나무로 만든 목탄이 분류되는 제4402.90호에 분류함

2) 코르크로 만든 부채¹¹⁵⁾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NLBTI2021-0654
- 유효기간: 2021. 10. 25.~2024. 10. 24.
- 발행국가: 네덜란드
- 결정 품목번호: 제4503.90-0000호

나) 물품 상세

- 대나무로 만든 16개의 스트립으로 구성된 부챗살에 코르크 층의 날개로 구성된 손부채로 바람을 일으켜 공기를 냉각하는 용도로 사용됨
 - 부챗살은 메탈 핀으로 고정되며, 길이는 약 23cm 정도임

115)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NLBTI2021-0654&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4503&nomencto=4503&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15&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7.

[그림 2-11-3] 코르크로 만든 부채



자료: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NLBTI2021-0654&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4503&nomencto=4503&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15&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7.

다) 분류 근거

- 제45류에는 코르크와 그 제품을 분류하며, 코르크는 코르크나무의 외피에서 얻어짐
 - 제4503호에는 천연코르크 제품을 분류하며, 신발류, 모자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는 제외됨

- 해당 물품은 바람을 일으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채로 본질적 특성은 코르크 층으로 구성된 날개에서 파생됨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의 나목, 제6호에 따라 마개 외의 천연코르크 제품이 분류되는 제4503.90호에 분류함

마. 공업용·가공용·회수용의 귀석, 귀금속, 비금속(제71류~제81류 해당호, 제8549.2호)

1) 도구제조용 다이아몬드¹¹⁶⁾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DEBTI26645/19-1
- 유효기간: 2019. 10. 21.~2022. 10. 20.
- 발행국가: 독일
- 결정 품목번호: 제7102.29-0000호

나) 물품 상세

- 1mm 이상의 입자크기를 가지는 둥근 막대모양의 천연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톱질, 레이저 가공, 분할, 세척, 광택처리 등의 가공이 이루어짐
- 도구 제조용으로 사용되며 비닐에 포장되어 제공됨

다) 분류 근거

- 제71류에는 물품의 전부나 일부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구성되는 물품을 분류함
- 다이아몬드는 장식품이나 의장품을 제조할 때와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귀석으로 장착되지 않은 것은 제7102호에 분류함

116)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DEBTI26645/19-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710210&nomencto=710229&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3&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 해당 물품은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천연의 다이아몬드로서 광택처리 등의 가공을 하였음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원석이 아닌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분류되는 제7102.29호에 분류함

2) 금도금 핀의 웨이스트¹¹⁷⁾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CZBTI43/109523/2021-580000-04/01
- 유효기간: 2021. 11. 10.~2024. 11. 9.
- 발행국가: 체코
- 결정 품목번호: 제7112.91-0000호

나) 물품 상세

- 금이 도금된 핀의 일부로 에어백을 생산하는 때에 스크랩 조각으로 발생하며, 핀이 잘린 부분으로 사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다른 장치에서 사용되기 위해 가공이 필요함
 - 납수조에서 제련과정을 통해 금을 회수하기 위한 물품으로 핀은 니켈-철 합금으로 만들어지며, 표면에 니켈이 도금된 후 금이 도금됨
 - 금의 총함량은 중량의 0.5%임

117)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CZBTI43/109523/2021-580000-04/0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7112&nomenccto=7112&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4&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다) 분류 근거

- 제71류에는 물품의 전부나 일부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구성되는 물품을 분류함
 - 제7112호에는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하는 귀금속과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분류함
 - 귀금속이란 은·금·백금을 말함
 - 이 호에는 화폐주조·금·은세공품 세공품 등의 작업장에서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을 기계 가공하는 동안 생긴 웨이스트와 잔유물을 포함함
- 해당 물품은 비금속제의 핀에서 잘린 나머지 부분으로 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됨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금 및 금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분류되는 제7112.91호에 분류함

[그림 2-11-4] 금도금 핀의 웨이스트



자료: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CZBT143/109523/2021-580000-04/0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7112&nomenc=7112&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4&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3) 백금 촉매¹¹⁸⁾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SKBTI148627/21/107
- 유효기간: 2021. 6. 28.~2024. 6. 27.
- 발행국가: 슬로바키아
- 결정 품목번호: 제7112.92-0000호

나) 물품 상세

- 자동차 배기가스 유해 성분의 함량을 줄이기 위해 화학공정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는 촉매의 일부로 과립상태의 고체 혼합물임
 - 산업용 세라믹 재료인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 실리케이트의 중량의 약 95%를 차지하고, 백금 0.18%, 팔라듐 0.25%, 로듐 0.04%, 니켈, 철, 구리 등을 총 5% 미만으로 포함함
 - 사용된 촉매로부터 기계적 분리를 통해 얻어지고, 더 이상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귀금속 회수를 위해 사용됨

다) 분류 근거

- 제71류에는 물품의 전부나 일부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구성되는 물품을 분류함
 - 제7112호에는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하는 귀금속과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

118)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SKBTI148627/21/107&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7112&nomencto=7112&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4&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분류함

- 귀금속이란 은·금·백금을 말하며, 백금이란 플라티늄·이리듐·오스뮴·팔라듐·로듐·루테튬을 말함

○ 이 호에는 촉매 등과 같은 제품의 낡거나 깨진 조각으로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스크랩을 포함함

□ 해당 물품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촉매로 더 이상 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백금의 회수를 위해 사용됨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백금 및 백금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분류되는 제7112.92호에 분류함

4) 금속 스펀지(119)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FRBTIFR-BTI-2022-01532

□ 유효기간: 2022. 3. 15.~2025. 3. 14.

□ 발행국가: 프랑스

□ 결정 품목번호: 제7204.49-1090호

나) 물품 상세

□ 분쇄된 타이어에서 추출한 금속 실 가닥으로 3~5%의 고무와 직물이 포함되었으

119)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FRBTIFR-BTI-2022-01532&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720410&nomenccto=720449&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8&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 일자: 2022. 10. 14.

며, 철강 산업에서 용용되어 강철막대를 생산하기 위한 물품임

○ 금속은 철 90%, 탄소 2%, 망간 0.5%로 구성됨

다) 분류 근거

□ 제72류에는 철·비합금강·스테인리스강·그 밖의 합금강과 그 제품을 분류함

○ 강, 스테인리스강, 그 밖의 합금강이란 다음을 말함

- 강이란 실용상 단조에 적합한 철재(주조 모양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하인 것을 말함

-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함

-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일정 비율 이상인 강(망간: 1.65% 등)을 말함

□ 제7204호에는 철강의 제조나 기계적 가공공정에서 생긴 웨이스트와 스크랩, 파손·절단·마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철강물품을 분류함

○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일반적으로 재용해에 의하여 금속 재생에 사용하거나 화공품 제조에 사용함

- 이 호에서는 보수나 수선을 했는지에 상관없이 원래의 목적에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과 다른 용도에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제외함

- 또한 본래의 금속으로 재생되지 않고 다른 제품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물품도 제외함

□ 해당 물품은 직물 등이 포함되었지만 철강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강의 스프레이이며,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용용 후 철강막대로 생산됨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주철·합금강 외의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분류되는 제7204.49호에 분류함

5) 가공하지 않은 황동막대¹²⁰⁾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DEBTI50756/20-1
- 유효기간: 2021. 3. 18.~2024. 3. 17.
- 발행국가: 독일
- 결정 품목번호: 제7403.21-00호

나) 물품 상세

- 구리합금을 추가 처리 없이 주조하여 생산한 직경 250mm, 길이 4,000mm의 금속제품으로 표면에 금이 가고 산화층이 거칠며 연속주조 공정의 주물자국이 나타남
- 구리 함량이 57~64%, 아연 함량이 32~40%이며 다른 원소도 포함할 수 있음

다) 분류 근거

- 제74류에는 구리·구리합금과 이들로 된 특정 제품을 분류하며, 구리합금이란 구리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기타 원소가 일정 비율 이상인 것을 말함
- 구리-비금속합금은 황동, 청동, 양백, 백동, 알루미늄청동, 베릴륨청동, 구리-규소 합금, 크로뮴구리가 있음
 - 구리-아연의 합금인 황동은 다른 원소가 함유될 경우 아연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으며, 니켈 5%, 주석 3% 미만인 것을 말함
 - 청동은 구리-주석의 합금으로서 다른 원소가 함유될 경우 주석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으며, 주석의 함유량이 3% 이상인 경우 아연의

120)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DEBTI50756/20-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7401&nomencnto=7404&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6&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 함유량이 10% 미만이라면 아연이 주석의 함유량보다 초과될 수 있음
- 양백은 구리-니켈-아연의 합금으로서 다른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 상관없으며,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이상임
 - 구리-니켈 및 아연의 합금인 백동은 다른 원소가 함유될 경우 니켈의 함유량은 중량비로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아야 하며 아연이 1% 이하여야 함
- 제7403호에는 가공하지 않은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을 분류하며, 특히 주조나 소결된 슬래브·봉·잉곳 등을 분류함
- 이 호에 해당하는 주조된 봉에는 연속 주조법으로 제조한 물품인 용융금속을 수냉한 주형에 연속 주입함으로써 급속히 고체화시킨 것을 포함함
 -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은 분류되는 제7407호에는 주조에 의해서 얻어진 봉을 제외함
- 해당 물품은 가공되지 않은 구리합금 제품으로 연속주조로 제조된 막대임
- 따라서 해당 물품은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구리-아연의 합금이 분류되는 제7403.21호에 분류함

[그림 2-11-5] 가공하지 않은 황동막대



자료: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DEBT150756/20-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7401&nomenco=7404&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6&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3. 경공업품

가. 플라스틱·고무 제품(제3922호~제3926호, 제40류)

1) 인조가죽 재킷¹²¹⁾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ESBTIESBTI2020SOL597
- 유효기간: 2020. 8. 26.~2023. 8. 25.
- 발행국가: 스페인
- 결정 품목번호: 제3926.20-0000호

나) 물품 상세

- 몸의 윗부분을 덮고 지퍼로 닫히는 개방부가 있는 긴소매의 재킷으로 다른 옷 위에 착용하도록 설계됨
 - 지퍼로 잠그는 포켓 3개, 스냅 버튼플랩이 달린 포켓 1개와 금속버클이 달린 벨트, 양쪽 어깨에 고리가 있음
 - 셀룰러 플라스틱인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졌으며, 안감은 폴리에스터 81%, 비스코스 14%, 면 5%로 구성됨

121)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ESBTIESBTI2020SOL597&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valenddate=&valenddate=&suppldate=&nomenc=3926&nomenc=3926&keyword 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4821&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다) 분류 근거

- 제39류에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 즉 플라스틱과 반제품·이들의 제품을 분류함
 - 제3926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합하여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을 포함함
 -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스트립으로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은 보강용인 것은 제5903호에서 제외하여 제39류로 분류함
 -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이나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판·시트·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이나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와 파일직물, 털, 레이스 등 특수한 직물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 해당 물품은 단순한 보강용인 섬유지지대가 있는 폴리우레탄 소재가 제품의 필수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인조가죽 재킷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의류 및 의류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3926.20호에 분류함

2) 마사지 롤러·볼 세트¹²²⁾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DEBTI6709/22-1

122)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DEBTI6709/22-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3926&nomenccto=3926&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4821&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74 제2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 유효기간: 2022. 7. 4.~2025. 7. 3.
- 발행국가: 독일
- 결정 품목번호: 제3926.90-97호

나) 물품 상세

- 근막 롤 마사지 세트인 해당 물품은 근막 롤러와 볼, 건강요령 및 운동정보가 담긴 DVD가 포함됨
 - 롤러와 볼은 폴리프로필렌으로 구성되며 53×180mm의 롤러는 등, 다리, 팔 등을, 직경 115mm 또는 72mm의 볼은 엉덩이, 어깨, 발바닥, 얼굴을 마사지함

다) 분류 근거

- 제39류에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 즉 플라스틱과 반제품·이들의 제품을 분류하며 제3926호에는 기타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함
 - 반면 제9019호에는 배·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마사지하는 기계를 분류함
- 해당 물품은 객관적인 특성에 따라 제9019호의 마사지기로 볼 수 없으므로 재료에 따라 분류해야 함
 - 해당 물품은 용도 및 사용범위로 보아 롤러와 볼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함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3926.90호에 분류함

[그림 2-II-6] 마사지 롤러·볼 세트



자료: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DEBTI6709/22-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3926&nomencto=3926&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4821&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3) 고무 온수 주머니¹²³⁾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ESBTIESBTI2022SOL722
- 유효기간: 2022. 7. 20.~2025. 7. 19.
- 발행국가: 스페인
- 결정 품목번호: 제4014.90-00호

나) 물품 상세

- 직물덮개로 덮인 고무 온수 주머니로 자연 온열요법으로 신체 부위를 따뜻하게 하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됨

123)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ESBTIESBTI2022SOL722&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4014&nomencto=4014&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18&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 주머니는 32.5×20cm로 고무 55%와 산화아연 45%, 소다회로 구성되며, 직물덮개는 37×28cm로 100% 폴리에스터로 구성됨

다) 분류 근거

- 제40류에는 원료나 반제품 상태의 고무와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본질적인 특성이 고무로부터 유도된 물품을 분류함
 - 제4014호에는 위생과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질 고무제품 이외의 가황고무제품을 분류함
 - 특히 이 호에는 콘돔·캐놀러·주사기·주사기용 밸브·분무기·젓꼭지·젓꼭지 씌우개·아이스-백·온수병·산소백 등을 포함함
- 해당 물품은 가황고무로 만든 위생·의료용품으로 직물덮개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무가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함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고무로 만든 기타 위생용품·의료용품이 분류되는 제4014.90호에 분류함

[그림 2-11-7] 고무 온수 주머니



자료: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ESBTIESBTI2022SOL722&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4014&nomencto=4014&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18&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4) 고무 마우스패드¹²⁴⁾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DEBTI30517/21-1
- 유효기간: 2021. 12. 3.~2024. 12. 2.
- 발행국가: 독일
- 결정 품목번호: 제4016.10-0090호

나) 물품 상세

- 매끄러운 직물 표면과 고무 처리된 미끄럼 방지 바닥이 있는 마우스 패드로 셀룰러 고무층이 도포되어 있음
 - 1㎡당 중량이 1,500g을 초과하며 직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중량의 50% 미만임

다) 분류 근거

- 제40류에는 원료나 반제품 상태의 고무와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본질적인 특성이 고무로부터 유도된 물품을 분류함
 - 제4016호에는 기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을 분류하며 셀룰러 고무제품을 포함하며 고무를 침투·도포·피복·적층한 직물·편물 등으로 제11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스트립은 방직용 섬유

124)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DEBTI30517/21-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4016&nomenccto=4016&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615&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가 단지 보강의 목적으로만 되어 있다면 제40류에 분류함

- 1㎡당 중량이 1,500g을 초과하며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것은 제5903호에서 제외됨

- 해당 물품은 셀룰러 고무층이 있는 마우스 패드로 제11부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적층한 직물류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셀룰러 고무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는 제4016.10호에 분류함

나. 가죽·모피 제품(제42류, 제4303호)

1) 생선껍질로 만든 개 사료¹²⁵⁾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HRBTIOM-2021-0065
- 유효기간: 2021. 5. 31.~2024. 5. 29.
- 발행국가: 크로아티아
- 결정 품목번호: 제4205.00-9000호

나) 물품 상세

- 갈색 또는 회색을 띠는 약 20mm 크기의 단단한 입방체 형태의 강아지 사료로 100%

125)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HRBTIOM-2021-0065&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 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4205&nomenc to=4205&keyword 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125&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생선껍질로 구성됨

- 다양한 포장으로 제공되며 개를 위한 식품으로 사용됨

다) 분류 근거

- 제42류에는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의 제품을 분류하며, 가죽은 털을 제거한 동물
뿐 아니라 파충류·어류 등 털이 없는 모든 동물의 원피를 포함함
 - 제4205호에는 이 류의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열거하지 않은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 제품을 분류함
 - 개의 사료는 전분, 설탕, 건조육 등이 첨가된 가죽으로 구성되며, 사료용으로 추가 준비를 거치지 않은 100% 가죽제품은 제4205호에 분류함
- 해당 물품은 어류의 가죽 100%로 구성된 강아지 사료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기타의 가죽제품이 분류되는 제4205.00호에 분류함

[그림 2-11-8] 생선껍질로 만든 개 사료



자료: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HRBTIOM-2021-0065&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4205&nomencto=4205&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125&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2) 토끼털 장난감¹²⁶⁾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CZBTI34/096049/2021-580000-04/01
- 유효기간: 2021. 8. 17.~2024. 8. 16.
- 발행국가: 체코
- 결정 품목번호: 제4303.90-00호

나) 물품 상세

- 고양이를 위한 쥐 모양의 장난감으로 플라스틱 몸체에 토끼털을 접착함
 - 모피 표면에 귀, 눈, 주둥이를 만들어 사실감 있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꼬리를 제외한 5cm, 6cm, 9cm의 다양한 크기로 제공됨

다) 분류 근거

- 제43류에는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을 분류하며, 모피란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를 유연처리·드레스가공 한 것을 말함
 - 제4303호에는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을 분류하며 모피가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는 재료로 만든 그 밖의 모든 제품을 포함함
 - 제43류에는 제95류의 완구 등을 제외하지만, 제9503호는 애완동물용 장난감 등 그 디자인·외형·구성 재료로 볼 때 전적으로 동물을 위한 것으로 볼 수

126)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CZBTI34/096049/2021-580000-04/0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4303&nomenccto=4303&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4&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있는 물품을 제외함

- 해당 물품은 귀, 눈과 같은 부착물이 포함되지만 토끼털로 구성된 고양이용 장난감으로 모피가 본질적 특성을 부여함
- 따라서 CN 해석을 통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기타의 모피제품이 분류되는 제4303.90호에 분류함

[그림 2-11-9] 토끼털 장난감



자료: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CZBTI34/096049/2021-580000-04/0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4303&nomenco=4303 &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4&linkVal =&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다. 목재, 펄프, 종이, 인쇄서적(제44류~제49류)

1) 목재 프로파일¹²⁷⁾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FRBTIFR-BTI-2022-04424
- 유효기간: 2022. 8. 30.~2025. 8. 29.
- 발행국가: 프랑스
- 결정 품목번호: 제4418.81-0090호

나) 물품 상세

- 최소 2개의 판자가 여러 번 접착된 정사각형 합판의 형태를 취하는 구조공학 목재의 프로파일로 건조·대패질·조립·접착되어 제조됨
 - 가구, 창문, 문, 계단 등의 구성요소 및 구조물 건설을 위한 것임

다) 분류 근거

- 제44류에는 미가공의 목재, 목재의 반제품과 일반적으로 목재로 된 제품을 분류함
 - 제4418호에는 건축용에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가공품으로서 조립품의 모양이나 조립되지 않은 부분으로 명백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분류함
 -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나 이와 유사한

127)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FRBTIFR-BTI-2022-04424&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441881&nomenccto=441889&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2&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 일자: 2022. 10. 14.

보드·섬유판·적층 목재나 고밀도화목재로 만들

- 특히 제4418호의 구조용 공학목재란 단순한 제재목보다 강도를 높이기 위한 적층재나 목제품의 결합재로 구성된 물품을 말함
 - 이들 생산품은 건물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도록 설계됨
 - 무거운 구조용 구성재로서 목재를 각 층의 나뭇결을 연속된 층들의 나뭇결과 평행하게 방향성을 부여한 채로 함께 접합시켜 여러 층으로 구성된 집성재를 포함함
- 해당 물품은 단단한 나무판자가 여러 층으로 접착된 적층목재로 구조물 건설용으로 사용됨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구조용 공학목재인 집성재가 분류되는 제4418.81호에 분류함

2) 캐트 타워 및 스크래쳐¹²⁸⁾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DEBTI16231/21-1
- 유효기간: 2021. 8. 16.~2024. 8. 15.
- 발행국가: 독일
- 결정 품목번호: 제4602.19-9090호

128)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DEBTI16231/21-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4602&nomenccto=4602&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155&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나) 물품 상세

- 고양이가 쉽터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외부표면이 사이잘 로프로 완전히 싸여있는 플랫폼과 동굴모양의 바구니, 프레임이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됨
 - 플랫폼은 직경 40cm의 나무판자이며 와이어 프레임은 판지로 구성됨
 -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사이잘 로프로 만든 표면이 고양이가 발톱을 긁는 스크래처로 사용됨
 - 따라서 사용 및 면적과 관련하여 사이잘 로프 표면이 물품의 특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음

다) 분류 근거

- 제46류에는 방적되지 않은 조물재료를 인터레이싱, 직조, 그 밖의 조립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반제품과 특정의 제품을 분류함
 - 조물재료란 플레이팅·인터레이싱이나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나 모양의 재료를 말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함
 - 짚·버드나무 가지·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골풀·갈대·목재의 스트립, 그 밖의 식물성 재료의 스트립
 - 방적하지 않은 천연의 방직용 섬유
 -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
 - 종이의 스트립
 - 제4602호에는 시트 모양 외의 조물재료의 제품을 분류함
- 해당 물품은 사이잘로 만든 로프의 제품으로 조물재료인 사이잘로 구성된 부분이 물품의 주요 특성을 부여함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¹²⁹⁾ 및 나목, 제3호 나목, 제6

129)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호에 따라 기타 식물성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는 제4602.19호에 분류함

[그림 2-11-10] 캣 타워, 스크래처



자료: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DEBTI16231/21-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4602&nomencto=4602&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155&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3) 종이 · 플라스틱제의 장식품¹³⁰⁾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DEBTI10101/20-1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30)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DEBTI10101/20-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48&nomencto=48&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3926&orderby=0&totalRecords=4&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 유효기간: 2020. 5. 15.~2023. 5. 14.
- 발행국가: 독일
- 결정 품목번호: 제4823.90-8580호

나) 물품 상세

- 한쪽 면이 금색으로 반짝이는 직경 6cm의 장식판지와 플라스틱 호일이 플라스틱 실에 7.5cm 간격으로 교대로 부착된 장식품임
 - 플라스틱 실은 한쪽 끝에 매듭을 지어 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도어 커튼과 같이 실내에 장식목적으로 걸 수 있음

다) 분류 근거

- 제48류에는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을 분류함
 - 제4823호에는 이 류의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과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함
- 제39류에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 즉 플라스틱과 반제품·이들의 제품을 분류함
 - 제3926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함
- 해당 물품은 제4823호의 종이의 제품 또는 제3926호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어느 구성 부분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지 결정할 수 없음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제3호 다목¹³¹⁾에 따라 동등하게 분류될 수 있는 호 중 최종호인 제4823호에 분류함

131)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 또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기타 판지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는 제4823.90호에 분류함

[그림 2-11-11] 종이·플라스틱제의 장식품



자료: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DEBTI10101/20-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48&nomencto=48&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3926&orderby=0&totalRecords=4&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4) 아동용 그림책¹³²⁾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SKBTI172684/21/127
- 유효기간: 2021. 5. 4.~2024. 5. 3.
- 발행국가: 슬로바키아
- 결정 품목번호: 제4903.00-0000호

132)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SKBTI172684/21/127&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4903&nomencto=4903&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87&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나) 물품 상세

- 발포 PVC에 삽화와 텍스트가 포함된 어린이용 책으로 폴 컬러의 8장으로 구성됨
- 책의 크기는 140×150mm로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포장됨

[그림 2-11-12] 아동용 그림책



자료: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SKBT1172684/21/127&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4903&nomenccto=4903&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87&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다) 분류 근거

- 제49류에는 인쇄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인쇄물을 분류함
 - 이 류에 분류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종이 위에 인쇄하여야 하나 종이 이외의 그 밖의 재료에 인쇄한 것도 이 류에 분류함
 - 제4903호에는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을 분류하며 아동용 그림책이란 그림이 주체이며, 그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을 위한 책을 말함
- 해당 물품은 아동을 위해 그림과 글씨가 인쇄되어 있는 서적으로 그림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물품은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아동용의 그림 책과 습화책이 분류되는 제4903.00호에 분류함

라.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제50류~제63류)

1) 비스코스 직물(133)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DEBTI32616/20-1
- 유효기간: 2020. 11. 5.~2023. 11. 4.
- 발행국가: 독일
- 결정 품목번호: 제5516.93-0000호

나) 물품 상세

-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자카드 직물로 4가지 색의 실로 직조되며 비스코스 스테이플 섬유 24.5%, 비스코스 필라멘트 23.5%, 린넨 46%, 실크 6%로 구성됨
- 실크로 만든 날실에 흰색 및 갈색의 린넨, 검은색 인조 스테이플 섬유, 베이지 색 인조 필라멘트의 씨실을 꼬아 직조함

다) 분류 근거

- 제55류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나 특정의 장섬유의 토우와 이들로 제조하는 것으

133)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DEBTI32616/20-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5512&nomenc=5516&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98&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로서 실과 식물로 만들기까지 각 단계의 물품을 분류함

- 인조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에 따라 제조되는 유기중합체의 스테이플 섬유나 필라멘트를 말함
 - 합성섬유: 중합체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기단량체의 중합으로 제조한 것이나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합체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
 - 재생·반합성섬유: 구리암모늄레이온·비스코스레이온과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를 용해하거나 화학적 처리로 제조한 것,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알기네이트와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

- 제50류~제55류·제5809호·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함
 -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함
 - 최대중량 또는 최종호 분류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짐프한 말의 털로 만든 실(제5110호)과 금속드리사(제5605호)는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며, 그 중량은 이를 구성하는 중량의 합계에 따름. 또한 직물의 분류에서는 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속사도 방직용 섬유재료로 봄
 - 해당 호의 결정은 우선 류를 결정한 후, 그 류에 속하는 적절한 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류로 분류되지 않는 재료는 고려하지 않음
 - 제54류와 제55류는 그 밖의 다른 류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류로 봄
 - 동일한 류나 호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방직용 섬유재료는 그 밖의 다른 류나 호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봄

- 해당 물품은 인조섬유의 중량(48%)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인조섬유 직물에 해당하며, 인조섬유 중 가장 큰 중량인 비스코스 스테이플 섬유 직물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재생·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직

물이 분류되는 제5516호에 분류함

- 또한 통칙 제6호에 따라 기타 섬유직물과 혼방한 것으로 재생·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중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이 분류되는 제5516.93호에 분류함

2) 잠수복¹³⁴⁾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MTBTI2021-0008
- 유효기간: 2021. 7. 26.~2024. 7. 25.
- 발행국가: 몰타
- 결정 품목번호: 제6113.00-1000호

나) 물품 상세

- 네오프렌 소재의 잠수복으로 팔, 다리 부분은 2mm, 몸통 부분은 3mm의 두께이며, 네오프렌의 양면은 편물로 덮여 있음
- 뒷면에 지퍼가 달린 개방부가 있으며 무릎패드와 유연성을 만들어 줌에 따라 다이버들이 주로 사용함

다) 분류 근거

- 제61류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와 의류부속품을 분류하며 의류의 부분품이나 의류부속품의 부분품도 분류함

134)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MTBTI2021-0008&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6113&nomenc=6113&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116&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 제6113호에는 플라스틱, 고무 등으로 침투·도포·피복·적층·가공한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함
 - 이 호에는 레인코트·방수복·잠수복과 방사선 예방보호용 의류를 포함함
-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스트립으로 방직용 섬유가 단지 보강의 목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함
- 해당 물품은 섬유직물 층으로 양면이 덮인 셀룰러 고무 패널로 구성되며,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패널 중 섬유직물은 단순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됨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고무가공을 한 편물 의류가 분류되는 제6113.00호에 분류함

3) 오토바이용 셔츠¹³⁵⁾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DEBTI14124/22-1
- 유효기간: 2022. 5. 16.~2025. 5. 15.
- 발행국가: 독일
- 결정 품목번호: 제6201.30-90호

나) 물품 상세

- 남성용 오토바이용 셔츠로 100% 면으로 만든 화려한 무늬가 있는 직조직물 의류

135)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DEBTI14124/22-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620120&nomencto=620190&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91&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로 방한을 위해 다른 의류 위에 착용하도록 만든 아노락과 유사한 의류임

- 전면에 지퍼와 스냅버튼 잠금장치가 있으며, 어깨와 팔꿈치 부분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탈착식 보호대가 있음

다) 분류 근거

- 제62류에는 직물로 만든 의류와 의류부속품을 분류하며 의류의 부분품이나 의류부속품의 부분품도 분류함
 - 제62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아노락·윈드치터·윈드재킷과 이와 유사한 의류를 분류함
- 해당 물품은 지퍼 등의 부착물이 포함된 직물로 만든 방한용 의류로 주로 오토바이를 탈 때 착용하도록 만들어짐
 - 따라서 해당 물품은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제6호에 따라 면으로 만든 오버코트·아노락 등과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제6201.30호에 분류함

[그림 2-11-13] 오토바이용 셔츠



자료: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DEBTI14124/22-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620120&nomencnto=620190&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91&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4.

마. 석·도자·유리제품(제68류~제70류)

1) 탄소 직물¹³⁶⁾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FRBTIFR-BTI-2022-05099
- 유효기간: 2022. 10. 4.~2025. 10. 3.
- 발행국가: 프랑스
- 결정 품목번호: 제6815.12-00호

나) 물품 상세

- 검은색 탄소섬유 필라멘트와 노란색 아라미드 섬유 필라멘트가 능직으로 직조된 녹색 직물로 폴리우레탄 접착제로 접착된 알루미늄 층으로 한쪽 면이 코팅됨
 - 직물은 탄소섬유인 preox 섬유(Oxidized polyacrylonitrile fiber)가 70%, 아라미드 섬유인 케블라(kevlar)가 30%로 구성됨

다) 분류 근거

- 제68류에는 암석광물을 일정가공 이상으로 가공한 물품, 광물성 재료로 제조한 특정 물품, 무기화합물의 특정 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분류함
 - 제6815호에는 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제품을 포함하여 따로 분류되지

136)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FRBTIFR-BTI-2022-05099&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 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681511&nomenc=681513 &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33&link 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 일자: 2022. 10. 18.

얇은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을 분류함

- 탄소섬유는 보통 필라멘트 모양에서 유기중합체를 탄화하여 제조하며, 이 제품은 보강재 등으로 사용함

○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을 분류하는 제11부에는 제6815호의 탄소섬유와 탄소섬유의 제품을 제외함

□ 해당 물품은 알루미늄 층과 방직용 섬유를 함유하지만 탄소섬유의 식물로 간주함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제6호에 따라 탄소섬유 식물이 분류되는 제6815.12호에 분류함

2) 유리 부직포¹³⁷⁾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ROBTI2022/003959

□ 유효기간: 2022. 9. 16.~2025. 9. 15.

□ 발행국가: 루마니아

□ 결정 품목번호: 제7019.71-00호

나) 물품 상세

□ 평행한 필라멘트로 형성된 짧은 유리섬유(chopped strand) 소재를 우선적 방향 없이 배치하여 에멀전 타입의 접착제로 결합한 부직포 형태의 매트임

137)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ROBTI2022/003959&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701961&nomencto=701973&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136&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8.

- 표면은 평평하지만, 재질이 단단하지 않아 쉽게 구부릴 수 있으나 실을 뽑으면 파손될 수 있음
- 이후에 에폭시 수지를 함침시켜 전기공업에서 사용되는 층상 강성 판재를 얻는 공정에 사용하는 제품임

다) 분류 근거

- 제70류에는 각종 모양의 유리wa 그 제품을 분류함
 -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와 이들의 제품을 분류하며,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함
- 유리섬유에는 여러 개의 연속성 평행 필라멘트로 구성된 필라멘트 유리섬유와 제조공정 중에 필라멘트를 짧은 길이로 절단한 스테이플 유리섬유가 있음
 - 연속성 필라멘트는 성형 후에 하나의 스트랜드로 합쳐져 잘게 자르기, 감기, 꼬기, 짜기 등의 공정을 거침
- 유리섬유는 이 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제품들로 추가 가공되어질 수 있음
 - 화학적으로 접착한 섬유를 가진 매트와 스크림, 즉 잘게 자른 스트랜드 매트, 연속성 스트랜드 매트, 직조되지 않은 전형적인 직물
 - 예를 들어 베일(얇은 시트), 레이드 스크림 등
 - 제5603호 부직포의 해설에 따르면 화학적 접착은 섬유를 접착물질로 결합시키는 것으로 용액이나 에멀전으로 되어있는 접착성 있는 결합제를 침투시키거나 가루 상태의 플라스틱으로 가열처리하거나 용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짐
 - 기계적으로 접착한 섬유를 가진 직물과 매트, 즉, 직물, 주름 없는 직물, 편물, 박음질한 직물, 바늘로 꿰맨 직물, 성긴 망 직물, 스크린 등
- 해당 물품은 필라멘트 유리섬유를 잘게 잘라 접착제로 결합한 스트랜드 매트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화학적으로 결합한 유리직물 중 베일이 분류되는 제7019.71호에 분류함

바. 램프·가구·잡품(제8539호, 제94류~제96류)

1) 발광다이오드(LED) 모듈¹³⁸⁾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ESBTIESBTI2021SOL919
- 유효기간: 2022. 2. 7.~2025. 2. 6.
- 발행국가: 스페인
- 결정 품목번호: 제8539.51-0000호

나) 물품 상세

- 발광다이오드(LED)와 저항이 금속 스트립 형태의 인쇄회로에 상호 연결되고 장착된 모듈로 바닥은 이형지로 보호되는 접착층이 있음
 - 12V 직류전원에 연결할 수 있도록 스트립의 끝단에 납땀 준비가 된 접점이 있으며 사용 편의에 따라 절단할 수 있는 5m의 롤로 제공됨
 - 슬롯머신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기계의 백라이트에 사용되며, 기계 내부에 장착됨

138)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ESBTIESBTI2021SOL919&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853951&nomenccto=853951&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76&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8.

[그림 2-11-14] 발광다이오드 모듈



자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ESBTIESBTI2021SOL919&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853951&nomencto=853951&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76&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8.

다) 분류 근거

- 제85류에는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 제외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전기기기를 분류함
 - 특히 이 류에는 램프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나 전기기기 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을 포함함

- 제8539호에는 램프를 분류하며, 이 호에는 발광다이오드 광원인 발광다이오드 모듈과 발광다이오드 램프가 포함됨
 - 발광다이오드 모듈은 전기회로 내에 정렬된 발광다이오드를 기반으로 하며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을 포함하는 광원을 말함
 - 이들은 또한 전력의 공급이나 제어를 위해 개별능동소자, 개별수동소자 또는 스위치·커패시터(제8536호)나 전자집적회로(제8542호)를 포함함
 - 이 모듈에서 나오는 빛은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 접속된 하나 이상의 발광다이오드에서 만들어짐
- 발광다이오드 모듈에는 모듈을 조명기구에 쉽게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기계적·전기적 접촉을 가능하게 해주는 캡이 부착되어 있지 않음
- 발광다이오드 램프는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을 결합한 하나 이상의 발광다이오드 모듈을 포함하는 광원을 말함
 - 이 램프는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전구, 하나 이상의 LED, 교류 전력을 정류하고 전압을 LED에서 사용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회로와 램프 홀더에 고정하기 위한 캡으로 구성됨
- 발광다이오드 모듈과 램프의 차이점은 램프에는 조명기구에 쉽게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기계적·전기적 접촉을 가능하게 해주는 캡이 부착되어 있다는 점임
- 해당 물품은 인쇄회로에 발광다이오드가 장착된 모듈로 전원 케이블에 연결될 수 있는 접점만 준비된 상태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발광다이오드 모듈이 분류되는 제8539.51호에 분류함

2) 목재 회전외자139)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NLBTI2021-1110
- 유효기간: 2022. 3. 21.~2025. 3. 20.
- 발행국가: 네덜란드

139)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NLBTI2021-1110&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940131&nomenccto=940131&keyword 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9&linkVal=&view 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8.

□ 결정 품목번호: 제9401.31-0000호

나) 물품 상세

- 나무 프레임의 등받이와 시트, 금속 베이스의 다리와 팔걸이가 있는 인체공학적인 모양의 게임용 의자로 회전과 높이 조절이 가능함
 - 등받이와 시트, 팔걸이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인조가죽으로 덮어 씌어있으며, 5개의 다리 끝부분에는 바퀴가 달려 있음
 - 의자는 2개의 예비나사와 엘런키, 사용 설명서와 같이 소매포장으로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됨

다) 분류 근거

- 제94류에는 가구,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 조명기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을 분류함
 - 제9401호에는 모든 의자를 분류하며, 조명기능, 장난감 구성부품, 진동기능, 음악·음성 플레이어 등 좌석과 관련이 없는 구성요소를 내장하고 있을 수도 있음
- 해당 물품은 목재로 만든 등받이 및 시트가 의자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미조립 상태의 회전의자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제3호 나목에 따라 높이가 조절되는 목재로 만든 회전의자가 분류되는 제9401.31호에 분류함

3) LED 조명¹⁴⁰⁾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PLBTIWIT-2022-000162
- 유효기간: 2022. 2. 17.~2025. 2. 16.
- 발행국가: 폴란드
- 결정 품목번호: 제9405.21-4000호

나) 물품 상세

- 달걀모양의 플라스틱 하우징에 LED가 포함되어 하우징의 돔을 빛나게 하여 벽과 천장에 별 이미지를 표시하는 어린이 침실에 조명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임
 - LED는 3가지 색상으로 발광되며, 소리재생, 시계, 온도계, 알람과 같은 기능을 가짐

다) 분류 근거

- 제94류에는 가구,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 조명기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을 분류함
 -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를 분류하며, 이 호의 조명기구는 모든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을 사용할 수 있음
 - 이 호의 전기식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스위치·플렉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음

140)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PLBTIWIT-2022-000162&refcountry=&valstartdate=01/01/2022 &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940521&nomenc to=940521&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 =32&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 word=, 검색일자: 2022. 10. 18.

- 해당 물품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만들어주는 조명기능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며, 기타 기능은 프로젝터 기능을 보완하는 추가 기능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LED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마루스탠드 조명이 분류되는 제9405.21호에 분류함

[그림 2-11-15] LED 조명



자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PLBTIWIT-2022-000162&refcountry=&valstartdate=01/01/2022&valstartdate=&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940521&nomenccto=940521&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32&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8.

4) 회전목마¹⁴¹⁾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DEBTI9604/22-1
- 유효기간: 2022. 4. 11.~2025. 4. 10.

141)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DEBTI9604/22-1&refcountry=&valstartdate=01/01/2022&valstartdate=&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95082&nomenccto=95082&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12&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8.

- 발행국가: 독일
- 결정 품목번호: 제9508.22-00호

나) 물품 상세

- 회전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원형베이스에 4개의 회전 플랫폼이 장착된 회전목마 형태의 놀이기구로 아직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됨
 - 원형베이스는 직경 14.4m, 회전 플랫폼은 직경 4.5m이며, 각 플랫폼에는 3개의 곤돌라가 부착되어 있으며, 곤돌라에는 5개의 좌석이 있음

다) 분류 근거

- 제95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한 모든 종류의 완구를 분류함
 - 이 류에는 또한 실내나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나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이나 사격용구·회전목마와 그 밖의 흥행용구도 포함함
- 제9508호에는 놀이공원의 탈것·워터파크 놀이기구·유원지용 오락물·여행장용품·순회서커스용품·순회동물원용품·순회극장 용품을 분류함
 - 이 호의 물품은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련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이 호에 해당함
- 제9508호에서 놀이공원의 탈것이란 주로 놀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일정하게 제한된 코스를 통하거나 특정 영역 내에서 한 사람 이상을 태우고 이동시키는 장치 또는 여러 장치나 설비의 조합을 말함
 - 이러한 탈것은 유원지, 테마파크, 워터파크나 놀이공원 내에 결합되어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탈것에는 거주지나 놀이터에 통상적으로 설치되는 종류의 것은 포함되지 않음

- 해당 물품은 승객의 유희를 위해 회전하는 놀이기구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는 미조립 물품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제6호에 따라 놀이공원의 탈 것 중 회전놀이기구·그네·회전목마가 분류되는 제9508.22호에 분류함

4. 중화학공업품

가. 니코틴 함유 무연제품(제2404.12호, 제2404.19-90호, 제2404.92호, 제2404.99호)

1) 전자담배용 용액¹⁴²⁾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SKBTI183680/22/153
- 유효기간: 2022. 6. 30.~2025. 6. 29.
- 발행국가: 슬로바키아
- 결정 품목번호: 제2404.12-0090호

나) 물품 상세

- 과일향이 나는 액체로 채워진 실린더에 배터리가 내장된 일회용 전자담배로 액체

142)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SKBTI183680/22/153&refcountry=&valstartdate=01/01/2022&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240412&nomenccto=240412&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14&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는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롤, 니코틴 염, 아로마 등으로 구성됨

- 전자담배는 길이 100~104mm, 직경 16~19mm의 실린더 모양으로 몸체에는 브랜드 이름, 복용량 및 향이 인쇄되고, 비닐봉지에 포장된 종이상자에 담겨 있음
- 일회용 전자담배는 타지 않고 흡입하는 용도로 복용량이 소진되거나 배터리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되며, 다양한 향과 용량으로 제공됨

다) 분류 근거

- 제24류에는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을 분류함
 -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한다는 것은 가열장치나 다른 수단을 통해 연소 없이 흡입하는 것을 의미함
- 제2404호에는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을 분류함
 - 이러한 제품에는 일회용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일회용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로서, 전자담배용 용액, 켈과 전달기구를 통합된 하우징 안에서 모두 결합하고 있는 것을 포함함
 - 이 제품은 용액이 다 소모되거나 배터리가 다 사용되면 버리도록 설계됨
 - 제24류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제2404호에 분류함
- 해당 물품은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로 배터리를 통해 연소 없이 흡입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비닐에 싸인 종이상자에 소매 포장됨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5호 나목,¹⁴³⁾ 제6호에 따라 담배나 재

143)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구성한 담배를 함유한 것 이외에 니코틴을 함유한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이 분류되는 제2404.12호에 분류함

[그림 2-11-16] 전자담배용 용액



자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SKBTI183680/22/153&refcountry=&valstartdate=01/01/2022&valstartdato=&valenddate=&valenddato=&suppldate=&nomenc=240412&nomencto=240412&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14&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2) 니코틴 패치¹⁴⁴⁾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DEBTI7420/22-1
- 유효기간: 2022. 3. 14.~2025. 3. 13.
- 발행국가: 독일
- 결정 품목번호: 제2404.92-00호

144)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consultation.jsp?Lang=en&Lang=en&refcountry=&reference=&valstartdate1=01-01-2022&valstartdate=01%2F01%2F2022&valstartdato1=&valstartdato=&valenddate1=&valenddate=&valenddato1=&valenddato=&suppldate1=&suppldate=&nomenc=240492&nomencto=240492&keywordssearch1=&keywordsearch=&specialkeyword=&keywordmatchrule=OR&excludekeywordsearch1=&excludekeywordsearch=&excludespecialkeyword=&descript=&orderby=0&Expand=true&offset=1&viewVal=&isVisitedRef=false&allRecords=0&showProgressBar=true, 검색일자: 2022. 10. 19.

나) 물품 상세

- 니코틴을 활성성분으로 하는 다층 패치로 구성된 경피흡수치료시스템(transdermal therapeutic system)이며, 금연을 지원하는 데 사용됨
 - 패치는 뒷면 보강 필름, 활성성분을 포함하는 본체, 사용 전에 제거되는 보호 캡으로 구성됨
 - 7개, 14개, 21개 단위로 니코틴 용량 17.5mg, 35mg, 52.5mg씩 상자에 개별 포장된 상태로 제공됨

다) 분류 근거

- 제24류에는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을 분류함
 -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한다는 것은 가열장치나 다른 수단을 통해 연소 없이 흡입하는 것을 의미함
- 제2404호에는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을 분류함
 - 니코틴을 함유하지만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하지는 않으며, 흡입 이외에 씹기·용해·코로 들이마시기·경피 흡수나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해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을 포함함
 - 담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인체의 니코틴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니코틴 흡수 축소 프로그램의 일부로 간주되는 니코틴 대체 요법 물품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용 니코틴 함유 물품을 포함함
- 해당 물품은 금연 프로그램의 일부로 금연을 지원하는 물품으로 니코틴이 경피흡수되는 패치임
 - 해당 물품은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5호 나목, 제6호에 따라 피부 투여용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이 분류되는 제2404.92호에 분류함

나. 화학공업 생산품(제28류~제38류)

1) (Z)-1,1,1,4,4,4-헥사플루오르-2-부텐(HFO-1336mzz)¹⁴⁵⁾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DKBTI21-1210674
- 유효기간: 2022. 3. 14.~2025. 3. 13.
- 발행국가: 덴마크
- 결정 품목번호: 제2903.51-0090호

나) 물품 상세

- 무색 무취의 액체로 화학적으로 단일한 (Z)-1,1,1,4,4,4-헥사플루오르-2-부텐(HFO-1336mzz)임
 - 발포제 제조를 위한 팽창제로 사용하며, 순 중량 10kg에서 최대 1,000kg으로 제공됨

다) 분류 근거

- 제29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 같은 유기화합물의 둘 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 기타 유기화합물을 분류함
 - 제2903호에는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분류하며, 이들은 탄화수소의 구조

145)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DKBTI21-1210674&refcountry=&valstartdate=01/01/2022&val 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290341&nomenc=290 369&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4& 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식에 있어서 1 이상의 수소 원자가 같은 수의 할로겐 원자로 치환되어 얻어짐
- 할로겐 원자는 플루오르 · 염소 · 브롬 · 아이오딘을 말함

- 제2903.5호에는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를 분류하며, 이들은 불포화 불화탄소 즉, 2개의 탄소 원자 사이에 1개의 이중 결합을 가진 분자임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에는 2,3,3,3-테트라플루오로프로펜(HFO-1234yf), 1,3,3,3-테트라플루오로프로펜(HFO-1234ze), (Z)-1,1,1,4,4,4-헥사플루오로-2-부텐(HFO-1336mzz), 수소불화올레핀(Hydrofluoroolefin, HFO)이 포함됨
 - 이중 결합의 존재 때문에 분자의 대기 중 수명이 매우 짧고 지구온난화지수는 매우 낮아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규제되지 않음
- 해당 물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Z)-1,1,1,4,4,4-헥사플루오로-2-부텐(HFO-1336mzz)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인 (Z)-1,1,1,4,4,4-헥사플루오로-2-부텐(HFO-1336mzz)이 분류되는 제2903.51호에 분류함

2) 알렌드로네이트 나트륨¹⁴⁶⁾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IEBTIIENEN004-2022-BTI175
- 유효기간: 2022. 4. 11.~2025. 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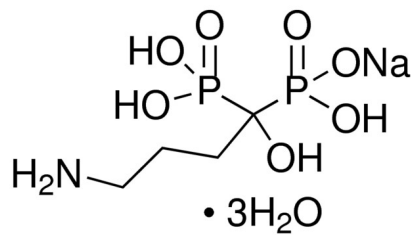
146)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IEBTIIENEN004-2022-BTI175&refcountry=&valstartdate=01/01/2022&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293141&nomenco=293159&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2&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 발행국가: 아일랜드
- 결정 품목번호: 제2931.49-9090호

나) 물품 상세

- 순도 100%의 알렌드로네이트 나트륨 삼수화물(alendronate sodium salt(CAS NO: 121268-17-5))로 분자식은 $C_4H_{12}NNaO_7P_2 \cdot 3H_2O$
- 백색의 유동성 결정성 분말로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며, 밀봉된 드럼에 포장됨

[그림 2-11-17] 알렌드로네이트 나트륨



자료: 시그마알드리치코리아, <https://www.sigmaaldrich.com/KR/ko/product/sigma/a4978>, 검색일자: 2022. 10. 19.

다) 분류 근거

- 제29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 같은 유기화합물의 둘 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 기타 유기화합물을 분류함
 -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화합물을 분류하며, 테트라메틸납, 테트라에틸납, 트리부틸틴 화합물, 유기-인 화합물, 유기-규소화합물을 포함함
- 제2931.4호와 제2931.5호에는 유기-인 화합물을 분류하며, 이것들은 탄소 원자에 직접 결합된 인 원자를 하나 이상 함유하는 유기화합물임

- 유기-인 화합물은 비할로겐화 유기인 유도체와 할로겐화 유기인 유도체로 구분됨
 - 이와 같은 화학물질의 교역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 의해 규제됨
- 해당 물품은 탄소 원자에 2개의 인 원자가 결합된 비할로겐화 유기인 유도체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따로 특게되지 않은 비할로겐화 유기인 유도체가 분류되는 제2931.49호에 분류함

3) 메신저 리보핵산(mRNA)¹⁴⁷⁾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BEBTID.T.317.307
- 유효기간: 2022. 1. 31.~2025. 1. 30.
- 발행국가: 벨기에
- 결정 품목번호: 제3002.41-10호

나) 물품 상세

- 단일 가닥 5캡 메신저 리보핵산(mRNA)은 mRNA 기반의 COVID-19 백신의 주 성분으로 백신의 연구, 개발, 생산에 사용됨
- 플라스미드 DNA를 통해 생성된 선형 DNA 템플릿에서 RNA를 제조하여 시험관 내에서 전사를 통해 합성됨

147)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BEBTID.T.317.307&refcountry=&valstartdate=01/01/2022&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300241&nomenc=300241&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2&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 합성된 DNA는 정제를 위해 분해된 후 정제·여과단계를 거쳐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용기에 포장된 후 냉동 보관됨

다) 분류 근거

- 제30류에는 의약품품을 분류하며,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물품,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 세포 배양체를 분류함
 - 제3002.4호에는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이 호에는 DNA 플라스미드 백신과 mRNA 백신과 같은 핵산 백신을 포함함
 - DNA 플라스미드 백신은 해당하는 병원체의 단백질 암호화 유전자를 운반하며, 반면 mRNA는 병원체의 특정한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음
 - DNA 플라스미드와 mRNA는 모두 인체 내에서 복제되거나, 인체에 신호를 주어 원하는 항원을 복제하여 면역반응을 유발함
- 해당 물품은 COVID-19 예방을 위한 mRNA 백신의 주성분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인체의약품의 백신이 분류되는 제3002.41호에 분류함

4) 면역항암제(CAR T세포 치료제)148)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NLBTI2021-1032

148)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NLBTI2021-1032&refcountry=&valstartdate=01/01/2022&valstartdate=&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30025&nomencto=30025&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7&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 일자: 2022. 10. 19.

- 유효기간: 2022. 3. 9.~2025. 3. 8.
- 발행국가: 네덜란드
- 결정 품목번호: 제3002.51-0000호

나) 물품 상세

- 브렉수캡타진 오토류셀(Brexucabtagene autoleucl)을 성분으로 하는 면역치료제로 환자의 T 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사멸시키도록 유전적으로 변형한 제품임
 - T 세포에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를 포함시켜 CD 19라는 암세포의 표면에 결합하도록 한 후, T 세포가 항원을 공격함
 - 68ml의 주입용 멸균 백에 냉동상태로 제공됨

다) 분류 근거

- 제30류에는 의약품품을 분류하며,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물품,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 세포 배양체를 분류함
 - 제3002.5호에는 세포 배양체를 분류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자연환경에서 벗어나 통제되는 조건 속에서 배양되어 온 세포로 특히 사람이나 동물의 세포에서 얻은 세포 배양체를 말함
- 제3002.51호의 세포치료법용 제품은 세포 조작을 통해 변성한 세포 물질로 환자에게 주입하거나 이식하기 위한 것임
 - 세포치료법은 신경계 질환과 암, 심장 질환, 당뇨병, 뼈·관절 질환, 유전 질환, 피부·연조직에 생긴 상처 등에 적용함
 - 세포치료법용 물품은 줄기세포와 줄기세포에서 얻은 물품, 암 백신과 면역요법제, 동종이계 췌장섬 세포, 연골 수복용 연골세포, 케라틴 생성 세포, 섬유아세포와 간세포를 포함함

- 면역요법제에는 수지상 세포 백신·활성 T 림프구나 B 림프구·단핵구·변성 암세포나 비변성 암세포를 포함함

- 해당 물품은 유전정보가 주입된 T 세포를 배양·증식시켜 환자에게 재주입하는 면역치료제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세포치료법용 제품이 분류되는 제3002.51호에 분류함

5) 안전벨트용 가스 제너레이터¹⁴⁹⁾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ROBTI2022/003882
- 유효기간: 2022. 5. 13.~2025. 5. 12.
- 발행국가: 루마니아
- 결정 품목번호: 제3603.60-00호

나) 물품 상세

- 차량의 충격 시 작용하는 안전벨트용 가스 제너레이터로 차량이 충돌하는 순간 추진제가 점화되어 안전벨트 프리텐셔너(pretensioner)를 작동시킴
 - 가스 제너레이터는 전기 케이블로 차량의 충격센서에 연결되어 충격 시 연소되며, 가스부피가 팽창되면서 안전벨트를 빠르게 감아서 조여 줌
 - 전기 커넥터와 추진제 충전물이 포함된 원통형 금속 케이스 형태로 제공됨

149)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ROBTI2022/003882&refcountry=&valstartdate=01/01/2022&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360360&nomencto=360360&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be=&orderby=0&totalRecords=4&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다) 분류 근거

- 제36류에는 화약류와 폭약류를 분류하며, 이 물품은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함유하며 연소할 때 고온에 대량의 가스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혼합물임
 - 제3603호에는 보통 폭파용 부속물로 불리는 물품으로 화약과 폭약에 점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을 분류함
 - 제3603.60호의 전기뇌관은 금속, 플라스틱제의 튜브에 들어 있는 전기 퓨즈헤드·소량으로 충전된 1차 폭약과 다소 많이 충전된 다른 폭약으로 구성됨
- 해당 물품은 장약을 점화하거나 일차 폭약을 기폭하는 데 전기 커넥터가 사용되는 가스 제너레이터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전기뇌관이 분류되는 제3603.60호에 분류함

6) COVID-19 진단시약¹⁵⁰⁾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NLBTI2022-0059
- 유효기간: 2022. 5. 30.~2025. 5. 29.
- 발행국가: 네덜란드
- 결정 품목번호: 제3822.19-0010호

150)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NLBTI2022-0059&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38221&nomencto=38221&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117&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나) 물품 상세

- 진단시약이 반응하여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COVID-19 진단키트의 시약임
 - RNA와 대조되는 핵산 희석 용액으로 뉴클레아제가 없는 물, 폴리 A, 시트르산 나트륨으로 구성됨
 - 10 μ l 용량의 플라스틱 튜브에 담겨 소매판매용으로 제공됨

다) 분류 근거

- 제38류에는 각종의 화학공업과 그 관련 공업제품을 분류함
 -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뒤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실험실용 조제시약, 인증 표준물질을 분류함

- 진단용 시약과 조제시약은 생체 또는 시험관 내에서 물리적·생물물리적·생화학적 과정과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함
 -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화학물질 내에서의 측정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음
 - 제3822호의 진단용 시약은 제30류에서 제외됨

- 해당 물품은 바이러스와 반응하여 COVID-19를 진단하는 키트에 사용되는 시약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말라리아용·자카 등 모기로 전염되는 질병용·혈액형분류용이 아닌 진단용·실험실용 시약 및 조제시약이 분류되는 제3822.19호에 분류함

7) HFC-134a 혼합물¹⁵¹⁾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DEBTI309/22-1
- 유효기간: 2022. 5. 9.~2025. 5. 8.
- 발행국가: 독일
- 결정 품목번호: 제3827.68-00호

나) 물품 상세

- 불소화 온실가스인 HFC-134a를 포함하는 혼합물로 난방 및 오일 공급시스템의 팽창 탱크에서 압력쿠션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됨
 - 정확한 구성성분은 기밀정보로 취급되며, 400ml의 스프레이 캔에 안전지침이 인쇄되어 있음

다) 분류 근거

- 제38류에는 각종의 화학공업과 그 관련 공업제품을 분류함
 - 제3827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을 분류함
 - 이 호의 혼합물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로 통제받고 있음

151)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DEBTI309/22-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3827&nomencno=3827&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2&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 제3827.6호에는 그 밖의 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고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을 분류함
 - 여기에는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¹⁵²⁾의 혼합물이 포함됨

- 해당 물품은 수소불화탄소(HFCs)인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를 함유한 혼합물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그 밖의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 중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를 포함한 것이 분류되는 제3827.68호에 분류함

다. 비금속과 그 제품(제72류~제83류)

1) 철강 포환(shot)¹⁵³⁾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ESBTIESBTI2020SOL975
- 유효기간: 2021. 1. 19.~2024. 1. 18.

152)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 디플루오로메탄(HFC-32), 플루오로메탄(HFC-41), 1,2-디플루오로에탄(HFC-152), 1,1-디플루오로에탄(HFC-152a),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 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HFC-227ea), 1,1,1,2,2,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cb), 1,1,1,2,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ea), 1,1,1,3,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fa), 1,1,1,3,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fa), 1,1,2,2,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ca), 1,1,1,3,3-펜타플루오로부탄(HFC-365mfc), 1,1,1,2,2,3,4,5,5,5-데카플루오로펜탄(HFC-43-10mee)

153)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ESBTIESBTI2020SOL975&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 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72&nomenc=72&keywordsearch =&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424&linkVal=&viewVal=& 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 발행국가: 스페인
- 결정 품목번호: 제7205.10-0000호

나) 물품 상세

- 강철 포환(shot)과 칼슘 금속의 혼합물로 채워진 강철봉입
 - 고온에서 용융될 때 내부의 혼합물이 방출되어 강 또는 철에 주입되는 물품임

[그림 2-11-18] 강철 포환(shot)



자료: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NLBTI2019-1245&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72&nomencto=72&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424&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다) 분류 근거

- 제72류에는 철·비합금강·스테인리스강·그 밖의 합금강과 그 제품을 분류함
 - 제7205호에는 선철·스피그라이즌·철강의 알갱이와 가루를 분류함
 - 알갱이란 메시 구경이 1mm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미만이고, 메시 구경이 5mm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물품을 말함
 - 이 호에는 형태가 다소 둥근 작은 포환(shot)·각이 난 그릿(grit)과 같은 알갱

이를 포함하며 이들은 금속의 세정, 스케일제거, 표면경화, 금속·유리의 연마와 조각, 석재가공 등에 사용됨

- 반면 비금속의 제품을 분류하는 제83류 중 제8311호에는 비금속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함
 - 제8311호는 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땀·납접·용접·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함
- 해당 물품은 플럭스를 도포하거나 충전한 용접봉에 해당하지 않고, 주요한 특성은 충전물에 있는 강철의 포함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선철·스피그라이즌·철강의 알갱이가 분류되는 제7205.10호에 분류함

2) 철강 압정¹⁵⁴⁾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DEBTI31155/22-1
- 유효기간: 2022. 9. 19.~2025. 9. 18.
- 발행국가: 독일
- 결정 품목번호: 제7317.00-6000호

나) 물품 상세

- 최강철 핀으로 구성된 압정으로 핀의 한쪽 끝이 뾰족하고 다른 쪽 끝에 구 형태의

154)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DEBTI31155/22-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7317&nomenc=7317&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13&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플라스틱 머리가 장착되어 있음

- 압정은 핀보드 및 지도에 부착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마킹 핀의 용도로 사용됨
- 총길이 15mm, 머리 직경 6mm, 핀 단면 치수 0.6mm인 압정 20개가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에 포장되어 있음

다) 분류 근거

- 제73류에는 철과 강으로 만든 것으로서 다른 류에 해당되지 않는 일단의 물품을 분류함
 - 제7317호에는 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함
 - 이 호에는 두부가 구리를 제외한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음
- 해당 물품은 머리는 플라스틱이지만 핀은 강철로 만들어진 압정을 소매포장한 물품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5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 등이 분류되는 제7317.00호에 분류함

3) 철강 스프링¹⁵⁾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ROBTI2021/003677
- 유효기간: 2021. 3. 19.~2024. 3. 18.

15)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ROBTI2021/003677&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7320&nomencto=7320&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57&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 발행국가: 루마니아
- 결정 품목번호: 제7320.20-81호

나) 물품 상세

- 강철 압축 스프링으로 자동차 트렁크의 무게를 들어 올리고 고정하는 역할을 함
 - 원형 또는 직사각형의 선을 나선형으로 만든 것으로 길이와 외경이 다양하며, 부식 방지 오일을 도포함

다) 분류 근거

- 제73류에는 철과 강으로 만든 것으로서 다른 류에 해당되지 않는 일단의 물품을 분류함
 - 제7320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을 분류함
 -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시트·선이나 봉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음
- 한편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따로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비금속제 물품 중 해당하는 호에 분류함
 -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의 것을 말함
 -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그 밖의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다만, 오로지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임플란트에만 사용하도록 특별히 만든 것은 제외한다(제9021호)
 - 비금속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틀과 거울

- 해당 물품은 철강의 선으로 만든 스프링으로 자동차 트렁크의 부분품으로 사용되지만 이와 분리되어 제시되는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철강으로 만든 나선형의 스프링이 분류되는 제7320.20호에 분류함

4) 블로램프(blow lamp)¹⁵⁶⁾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DEBTI51111/19-1
- 유효기간: 2019. 11. 29.~2022. 11. 28.
- 발행국가: 독일
- 결정 품목번호: 제8205.60-0000호

나) 물품 상세

- 권총모양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충전 밸브가 있는 가스탱크, 화염 노즐, 가스 및 공기 조절 휠, 스위치, 잠금장치로 구성된 블로램프임
- 가정 및 주방에서 사용되는 제품으로 사용 설명서와 함께 투명한 플라스틱 백에 제공됨

다) 분류 근거

- 제82류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을

156)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DEBTI51111/19-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820560&nomenccto=820560&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6&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분류함

-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함
 - 비금속
 - 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
 -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비금속·금속탄화물·서멧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 연마재료로서 비금속으로 만든 지지물에 부착된 것. 다만, 비금속으로 만든 절삭치·홈과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연마제를 부착한 후에도 그 동일성과 기능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함
 - 다만, 블로램프·휴대용 화덕·프레임을 갖춘 그라인딩휠·매니큐어·페디큐어 세트와 제8209호의 물품은 날 등의 재료와 관계없이 제83류에 분류함
- 제8205호에는 수공구, 블로램프,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부속품 외의 바이스·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을 분류함
- 블로램프는 광유용이나 그 밖의 액체연료용 저장용기나 대체 가능한 가스 충전된 카트리지를 저장 용기를 내장하고 있음
- 해당 물품은 가스탱크를 플라스틱 베이스에 내장한 블로램프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5호 나목, 제6호에 따라 블로램프가 분류되는 제8205.60호에 분류함

[그림 2-II-19] 블로램프(blow lamp)



자료: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DEBTI51111/19-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o=&valenddate=&valenddato=&suppldate=&nomenc=820560&nomenco=820560&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6&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5) 카스터(castor)¹⁵⁷⁾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PLBTIWIT-2020-000588
- 유효기간: 2020. 5. 18.~2023. 5. 17.
- 발행국가: 폴란드
- 결정 품목번호: 제8302.20-0090호

나) 물품 상세

- 회전의자에 장착하기 위한 카스터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며 의자에 부착할 수

157)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PLBTIWIT-2020-000588&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o=&valenddate=&valenddato=&suppldate=&nomenc=830220&nomenco=830220&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38&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있는 특수모양의 비금속 편이 포함됨

- 바퀴가 모든 방향으로 회전하여 의자를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직경이 50mm인 바퀴가 5개 세트로 포장되어 제공됨

다) 분류 근거

- 제83류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각종 제품을 분류하며, 제82류와 같이 구성되는 비금속의 성분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성질에 따라 분류함
 -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를 분류함

- 제8302호의 카스터는 지름이 75mm 이하인 것을 말하며, 지름이 75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착된 휠이나 타이어의 폭이 30mm 미만인 것을 말함
 - 카스터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부착되어야 하지만 바퀴는 어떠한 재료일 수도 있음
 - 공기를 넣은 타이어를 가진 카스터의 경우, 카스터의 직경은 보통의 기압을 넣은 타이어로 측정되어야 함

- 해당 물품은 직경이 50mm인 바퀴로 비금속의 장착구가 있는 비금속제의 카스터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5호 나목, 제6호에 따라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가 분류되는 제8302.20호에 분류함

[그림 2-11-20] 카스터(castor)



자료: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PLBTIWIT-2020-000588&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valenddate=&valenddate=&suppldate=&nomenc=830220&nomenc=830220&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38&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라. 기계류 · 전기기기(제84류~제85류)

1) 물품운반용 로봇¹⁵⁸⁾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PLBTIWIT-2022-000603
- 유효기간: 2022. 6. 6.~2025. 6. 5.
- 발행국가: 폴란드
- 결정 품목번호: 제8428.70-00호

158)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PLBTIWIT-2022-000603&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valenddate=&valenddate=&suppldate=&nomenc=842870&nomenc=842870&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3&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나) 물품 상세

- 6축의 로봇 팔이 있는 산업용 로봇, 로봇 모션 컨트롤러, 4개의 3D 카메라, 4개의 2D 카메라, 4개의 렌즈, 보정 테이블, 지지대가 하나로 집합되어 있음
 - 카메라는 물체를 식별하며, 컨트롤러는 비디오 신호를 변환하여 인식된 물체를 집어 특정 장소로 옮기는 로봇을 제어함
 - 이는 상자 등에 포장된 물품을 적재하거나 분리할 때 다양한 물품을 들어 올리고 이동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함

다) 분류 근거

- 제84류에는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모든 기계류와 기계식 장치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함
 -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를 분류하며,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함
- 기능단위기계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함
 - 이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을 말함
 - 여러 가지의 구성요소가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전부로서 기능에 따라 분류함
 -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란 전체로서의 기능단위기계에 특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수적인 기계와 기계의 조합만을 포함함
 -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계나 장치는 제외함
- 해당 물품은 로봇 팔, 카메라, 컨트롤러 등이 물품을 이동·적재·운반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의 산업용 로봇이 분류되는 제8428.70호에 분류함

2) 3D 프린터¹⁵⁹⁾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DEBTI1334/22-1
- 유효기간: 2022. 5. 27.~2025. 5. 26.
- 발행국가: 독일
- 결정 품목번호: 제8485.30-1000호

나) 물품 상세

- 금속, 비금속 또는 세라믹 분말을 층으로 도포한 다음 액체 접착재료를 사용하여 분말을 응집함으로써 CAD 모델을 기반으로 3차원 개체를 생성하는 기계임
 - 산업용 3D 프린터로 3D 프린트 공간, 분말 도포 노즐, 접착재료 분사 헤드, 기계 제어 및 전원공급장치가 캐비닛으로 하우징된 형태임

다) 분류 근거

- 제84류에는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모든 기계류와 기계식 장치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함

159)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DEBTI1334/22-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8485&nomenccto=8485&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7&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 제8485호에는 적층제조기계를 분류하며, 적층제조란 디지털 모델을 바탕으로 재료를 연속적으로 부가·적층하고 경화·응고시켜 물리적인 대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함
 - 제16부 주 제1호와 제84류 주 제1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5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5호에 분류함

- 적층제조기계는 금속, 플라스틱, 고무, 플라스터, 시멘트, 세라믹, 유리, 나무, 종이나 종이 셀과 같은 재료로부터 3차원의 목적물을 생산함
 - 제8485호에는 다양한 형태의 적층제조기계를 분류함
 - 접착재료 분사 방식 기계: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 분말과 액체 접착재료를 사용하는 기계로 분말은 층을 형성하면서 칠해지는데 각 층에는 분말을 함께 접착하기 위한 액체 접착재료가 첨가됨
 - 광경화조형기: 액체 재료를 적층하는 기계로 자외선 레이저는 플라스틱의 첫 번째 층을 조사하고 경화시키며 그 후에 플랫폼이 올라와서 플라스틱의 연속적인 층이 경화됨
 - 재료 분사 방식 기계: 플라스틱을 적층하며, 재료를 노즐에서 똑똑 떨어지게 하면 그 후에 자외선으로 경화시킴
 - 재료 압출방식 기계: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압출 노즐 안에서 필라멘트를 가열하고, 녹여진 재료를 적층한 후 경화시킴
 - 분말 베드 용해방식 기계: 레이저 스캔이나 전자빔을 사용하여 목적물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분말인 재료를 층별로 녹임
 - 판재적층 방식의 기계: 시트를 적층하고, 구체적인 3차원의 목적물을 생성하기 위해 디지털 모델에 따라 그 층들을 함께 융합함
 - 직접식 에너지 적층 기계: 전자빔을 사용하여 재료가 적층되는 동안 재료를 녹여서 목적물을 형성함

- 해당 물품은 금속, 비금속, 세라믹 재료를 도포한 후 접착재료로 분말을 응집시켜 목적물을 형성하는 접착재료 분사 방식의 적층제조기계임
- 따라서 CN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제6호에 따라 동등하게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인 플라스틱·시멘트·세라믹·유리용 적층제조기계가 분류되는 제8485.30 호에 분류함

3) 스마트워치¹⁶⁰⁾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HUBTIHU190000-2022-8416951124
- 유효기간: 2022. 7. 29.~2025. 7. 28.
- 발행국가: 헝가리
- 결정 품목번호: 제8517.13-0000호

나) 물품 상세

- 독립적으로 통신장치로 작동하는 스마트워치로 e-SIM이 있어 페어링 된 기기 유무와 관계없이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음
- 1.43 in의 OLED 컬러스크린 디스플레이, 16GB ROM 및 2GB RAM의 메모리를 포함하며 마이크로 전자제어장치와 리튬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음
-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와 연결이 가능하며, 휴대전화를 연결하지 않고도 통화처리, 음악듣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가능함

160)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HUBTIHU190000-2022-8416951124&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851713&nomenc=851713&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16&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다) 분류 근거

- 제85류에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을 분류함
 - 제8517호에는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를 분류함

- 제8517호의 전화기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하며, 스마트폰이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든 휴대기기용 운영체제를 갖춘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를 말함
 - 이는 디지털카메라나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 다른 기능을 장착했는지에 상관 없음

- 복합기계와 다기능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함
 - 복합기계란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기계를 말하며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한 것은 다음을 말함
 -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는 어느 하나가 다른 기계 속에 결합된 것
 - 어느 하나가 다른 기계 위에 장착되거나 동상·동일 프레임 위나 동일 하우징 속에 장착되어 것
 - 다기능기계는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를 말함

- 해당 물품은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에 여러 기계가 장착되어 통화, 음악듣기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주요 기능은 음성통화인 스마트워치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스마트폰이 분류되는 제 8517.13호에 분류함

4) OLED 디스플레이 모듈¹⁶¹⁾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DEBTI17154/22-1
- 유효기간: 2022. 6. 20.~2025. 6. 19.
- 발행국가: 독일
- 결정 품목번호: 제8524.92-0000호

나) 물품 상세

- 13.4in의 컬러 OLED 패널로 터치스크린, LED 백라이트, 제어회로, 마이크로 컨트롤러, 구동장치 모듈, 터치스크린 컨트롤러, 전원공급장치가 장착되어 있음
- 자동차에 설치한 후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모듈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

다) 분류 근거

- 제85류에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 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을 분류함
-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을 분류하며, 이는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함
- 이 호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은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 되도록 설계되었음

161)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DEBTI17154/22-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852492&nomenccto=852492&keyword 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5&linkVal=&view 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스크린은 평평한 것, 곡선형인 것, 구부러지는 것, 접거나 늘일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하나 이들 형태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님
 -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은 영상신호를 수신하고 이들 신호를 화면의 픽셀에 할당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요소를 결합하고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제8524호에는 영상신호를 변환하는 부품을 장착하였거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성을 가진 디스플레이 모듈은 포함하지 않음
 -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분류에 있어서는 제8524호가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함
- 해당 물품은 구동장치와 제어회로가 있고, 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OLED 디스플레이 모듈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구동장치와 제어회로가 있는 OLED 디스플레이 모듈이 분류되는 제8524.92호에 분류함

5) 야간투시용 디지털카메라¹⁶²⁾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FRBTIFR-BTI-2022-00960
- 유효기간: 2022. 5. 12.~2025. 5. 11.
- 발행국가: 프랑스
- 결정 품목번호: 제8525.83-0000호

162)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FRBTIFR-BTI-2022-00960&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852581&nomenccto=852583&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4&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 일자: 2022. 10. 19.

나) 물품 상세

- 광음극을 사용하여 자연광을 전자로 변환하고 증폭하여 가시 이미지를 생성하는 디지털 야간 투시경 카메라임
 - 동물이 지나가는 골목에 설치되는 카메라로 동물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경우 사진이나 비디오를 캡처하기 위한 용도임
 - 사진과 비디오를 찍어 메모리 카드에 기록하고 4G 네트워크를 통해 MMS로 전송할 수 있음
 - 렌즈, 조도센서, 수동 적외선 센서, SIM 카드 슬롯, SD 카드 슬롯, USB 포트, 외부전원 공급용 포트를 포함하여, 배터리나 태양전지판, 주전원 연결을 통해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음

다) 분류 근거

- 제85류에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을 분류함
 - 제8525호에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를 분류함
- 제8525호의 카메라에는 야간투시용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를 포함함
 - 이는 광전음극을 사용하여 해당하는 빛을 전자로 변환하고 이를 증폭하여 가시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을 말함
- 해당 물품은 자연광을 전자로 변환하여 생성한 사진이나 영상을 내부저장장치나 매체에 기록하는 야간투시용 디지털카메라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야간투시 카메라가 분류되는 제8525.83호에 분류함

6) 태양광 모듈¹⁶³⁾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ITBTIIT922104-2022-BTI0264
- 유효기간: 2022. 7. 26.~2025. 7. 25.
- 발행국가: 이탈리아
- 결정 품목번호: 제8541.43-0000호

나) 물품 상세

- 태양광 시스템용 광전지 모듈로 햇빛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도록 설계됨
 - 모듈은 144개의 단결정 실리콘 셀로 구성되며, 각 24개의 셀이 포함된 6개의 열로 배열되어 있음
 - 셀 이외에도 전기연결 소켓, 금속 프레임 및 3개의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장착되어 셀이 그늘에 있을 때 셀을 보호함
 - 그러나 빛이 없을 때 광전지에 전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류방지 다이오드는 포함되지 않음

다) 분류 근거

- 제85류에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을 분류함

163)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ITBTIIT922104-2022-BTI0264&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854142&nomencto=854143&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9&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 제8541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분류함
- 제8525호의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함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는 광전도 셀과 광전지 셀이 포함됨
 - 광전도 셀은 보통 두 전극 사이에 반도체 재료가 들어 있는 것으로, 반도체 재료의 전기저항은 셀에 들어오는 빛의 강도에 따라 변화되는 것임
 - 광전지 셀은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태양전지, 포토다이오드, 포토커플과 포토릴레이를 포함함
- 해당 물품은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도록 설계된 태양전지를 모듈로 장착한 광전지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중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광전지가 분류되는 제8541.43호에 분류함

7) 홀 소자(Hall element)¹⁶⁴⁾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DEBTI15125/22-1
- 유효기간: 2022. 5. 23.~2025. 5. 22.
- 발행국가: 독일
- 결정 품목번호: 제8541.51-0000호

164)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details.jsp?Lang=en&select edReference=&reference=DEBTI15125/22-1&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85415&nomenc=85415&keyword 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2&linkVal=&view 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나) 물품 상세

- 세라믹 기판에 도포된 안티몬화 인듐 또는 비화 갈륨의 반도체층으로 만들어진 홀 소자(hall element)로 자로의 역할을 하는 페라이트(ferrite) 비드가 사용되기도 함
 - 홀 소자를 공통 하우징에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합하였음
 - 자기장 강도를 감지하고 홀 효과(hall effect)¹⁶⁵를 이용하여 자기장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기반 센서임

다) 분류 근거

- 제85류에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을 분류함
 - 제8541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분류함

-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동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나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말함
 -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란 어떠한 종류의 물리적·화학적 현상·활동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거나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현상·활동으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디바이스를 말함
 - 물리적·화학적 현상은 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자기장의 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의 농도 등의 현상과 관련된 것임
 - 이는 개별 반도체 기반 센서·반도체 기반 액추에이터·반도체 기반 공진기·반도체 기반 오실레이터로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디바이스로 별개의 형태를 갖춤

165)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전류에 수직하게 자장을 가하면 전류와 자장에 각각 수직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여 소자에 전기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말함(품목분류과-101979, 2004. 11. 29)

- 반도체 기반 센서는 반도체 덩어리 상태나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져서 물리적·화학적 양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함
 - 반도체 기반 액추에이터는 반도체 덩어리 상태나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져서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짐
 - 반도체 기반 공진기는 반도체 덩어리 상태나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져서 외부 신호에 반응하여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따라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짐
 - 반도체 기반 오실레이터는 반도체 덩어리 상태나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져서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짐
- 해당 물품은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진 홀 소자로 자기장을 감지하여 이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기반 센서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반도체 기반 센서를 포함하는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가 분류되는 제8541.51호에 분류함

8) 가전제품 폐기물¹⁶⁶⁾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ROBTI2022/003972
- 유효기간: 2022. 7. 20.~2025. 7. 19.
- 발행국가: 루마니아
- 결정 품목번호: 제8549.39-00호

166)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ROBTI2022/003972&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8549&nomenccto=8549&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5&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나) 물품 상세

- 프린터, 복사기, 중앙처리장치, 리모컨, 수신기, 모뎀 등의 폐전기 및 폐전자 조립품으로 큰 가방이나 팔레트에 포장됨
 - 폐기물에는 철, 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재활용 공장에서 처리 및 분해되기 위하여 승인된 파트너에게 운송됨

다) 분류 근거

- 제85류에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을 분류함
- 제8549호에는 전기·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분류하며, 전기·전자 조립품, 인쇄회로기판, 전기제품이나 전자제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 파손·절단, 그 밖의 공정으로 원래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원래의 용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수리·정비나 보수가 경제적으로 적합하지 않음
 - 그들의 원래의 용도나 후속의 용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수리·정비·보수·재사용·리퍼포싱 하기에 적당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음
 - 운송·적재·하역 작업 중 파손으로부터 개별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장되거나 선적되지 않은 것
 - 일반적으로 이들은 벌크 상태로 선적되며 보통 단위 수량보다는 중량으로 거래됨
 - 전기·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과 그 밖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함께 섞여 있는 물품은 제8549호에 분류함
 - 제38류 주 제4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은 포함하지 않음

- 해당 물품은 전기 및 전자 조립품의 폐기물로 철, 플라스틱, 인쇄회로기판, 토너 폐기물이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함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전기·전자 조립품과 인쇄회로기판으로 일차전지·축전지·수은 스위치·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전자 부품이 아닌 것이 분류되는 제8549.39호에 분류함

마. 수송기기(제86류~제89류)

1) 삼륜자전거¹⁶⁷⁾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ATBTI2022000384-DEC
- 유효기간: 2022. 9. 6.~2025. 9. 5.
- 발행국가: 오스트리아
- 결정 품목번호: 제8704.60-0000호

나) 물품 상세

- 전기 구동 삼륜차로 두 개의 핸들과 조정기, 1인용 시트와 직사각형 개방형 적재 공간이 있음

167)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Reference=&reference=ATBTI2022000384-DEC&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870441&nomenccto=870460&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3&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 600W의 전기모터와 60V의 납산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으며, 최대 속도 25km/h로 주행할 수 있음

다) 분류 근거

- 제87류에는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을 분류함
 -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를 분류하며, 배달자동차와 이삿짐 운반차, 자동 양하장치를 갖춘 화물자동차, 냉장화물자동차, 거대화물수송용의 자동차를 포함함
- 제8704호의 화물자동차에는 경량 삼륜자동차도 포함함
 - 이 호에 포함되는 경량 삼륜자동차는 다음의 특성을 가짐
 - 모터사이클용의 엔진과 차륜 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보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조향장치를 갖춘 것이나 후진기어·차동장치를 모두 갖춘 것
 - T형 새시 위에 장착된 것으로서 두 개의 뒷바퀴는 별개의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
 - 이들 차량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발진·가속·제동·정지·후진할 수 있음
 - 또한 구동용 차륜에 차동 토크를 가하거나, 앞바퀴의 방향을 변경함에 따라 좌우로 방향을 변환할 수 있는 한 개의 중앙제어봉에 의하여 조작함
- 해당 물품은 전동기가 장착되고, 핸들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화물 운송용 삼륜차임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피스톤 내연기관 없이 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화물자동차가 분류되는 제8704.60호에 분류함

2) 드론¹⁶⁸⁾

가) 결정 정보

- BTI 참조번호: FRBTIFR-BTI-2022-02215
- 유효기간: 2022. 9. 1.~2025. 8. 31.
- 발행국가: 프랑스
- 결정 품목번호: 제8806.93-0010호

나) 물품 상세

-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사람의 개입 없이 프로그래밍 된 비행을 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로 최대 이륙 중량은 9kg임
 - 보안 분야에서 활용되거나 검사작업을 수행하는 용도로 제작되었으며 무선제어를 통해 1,0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조종할 수 있음
 - 무인항공기, 휴대용 케이스, 스마트 컨트롤러, USB 충전기, USB 케이블, 배터리, 프로펠러, 프로펠러 홀더 등이 포함되어 제시되며, 리튬 배터리가 장착됨
 - 최대속도 82.8km/h, 최대비행시간은 약 55분이며, 드론, 액세서리, 무선조종장치, 운송케이스 등 모든 구성품을 포함한 무게는 18.6kg임

다) 분류 근거

- 제88류에는 기구와 비행선과 무동력 항공기, 그 밖의 항공기, 우주선, 우주선 운

168) TAXUD,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details.jsp?Lang=en&selectedReference=&reference=FRBTIFR-BTI-2022-02215&refcountry=&valstartdate=&valstartdateto=&valenddate=&valenddateto=&suppldate=&nomenc=8806&nomenccto=8806&keywordsearch=&excludekeywordsearch=&descript=&orderby=0&totalRecords=18&linkVal=&viewVal=&keywordmatchrule=OR&specialkeyword=&excludespecialkeyword=, 검색일자: 2022. 10. 19.

반로켓, 낙하산과 같은 관련기기를 분류함

- 또한 이 류에는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와 지상비행 훈련장치를 포함함
- 제8806호에는 무인기를 분류하며, 무인기란 기내에 조종사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된 모든 항공기를 말함
 - 이들은 화물을 수송하도록 설계되거나, 비행 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카메라나 그 밖의 장치를 영구적으로 갖추고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무인기에는 오로지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완구는 제외함
 - 이들은 예를 들면 저중량, 고도제한, 비행 가능거리나 시간, 최대 속도, 자율비행 기능이 없는 점, 화물 수송 능력이 없는 점, 지능적 전자 장치를 갖추지 않은 점에 의하여 구별될 수 있음
- 제8806호의 무인기는 비행 중에 언제든지 조종사가 다른 장소에서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하거나 조종사의 관여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음
 - 무인기는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지만, 보통은 모터에 의해 추진되는 하나 이상의 프로펠러나 회전날개, 고정날개, 그리고 원격 조종사가 지휘와 제어를 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무인기의 최대이륙중량이란 보통의 비행조건에서 이륙할 때 기체의 최대 중량으로 화물·장비·연료의 중량을 포함함
- 해당 물품은 최대이륙중량이 9kg인 무인항공기로 원격조종뿐 아니라 프로그래밍된 비행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CN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무인기 외의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제8806.93호에 분류함

제3편 관세평가 해설

I. 관세평가 개요

-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함¹⁶⁹⁾
 - 수입물품의 가격이 관세의 과세표준인 종가세 적용물품에 대하여 정해진 원칙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임

- 세계 각국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세평가제도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1947년 GATT 제7조의 관세평가의 일반원칙을 마련하였음¹⁷⁰⁾
 - 1995년 WTO가 설립되면서 「WTO 관세평가협정」이 발효되었음

- EU는 UCC, 「UCC 위임법」(UCC Implementing Act: UCC IA), 「UCC 시행법」(UCC Delegated Act, UCC DA)에 「WTO 관세평가협정」의 규칙을 명시함¹⁷¹⁾
 - 공통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UCC에 따라 결정됨¹⁷²⁾

169) 신상화·박지우·이재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미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p. 73.

170)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pp. 289~290.(신상화 외(2017), p. 74.에서 재인용)

171)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valuation_en, 검색일자: 2022. 11. 9.

1.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 기준은 거래가격임¹⁷³⁾
 - 거래가격은 ① EU 관세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될 때 ②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③ 필요한 경우 조정한 가격임

- 거래가격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됨¹⁷⁴⁾
 - 구매자가 물품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데 있어 다음을 제외한 제한이 없어야 함
 - 법령 또는 EU의 공공기관에서 부과하거나 요청하는 제한
 - 물품이 재판매될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의 제한
 -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
 -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 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함
 - 다만 그 가치가 결정될 수 있는 조건이나 사정의 대상인 경우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간주됨¹⁷⁵⁾
 - 그러나 그 조건이나 사정이 마케팅 활동을 포함한 간접지급으로 간주되지 않는 구매자의 활동, 가산요소와 관련되지 않아야 함
 -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구매자에 의한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으로 인한 이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지 않아야 함
 -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아니거나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EU의 관세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의 거래가격은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기 직전에 발생한 판매를 기준으로 세관신고 수리 시 결정됨¹⁷⁶⁾¹⁷⁷⁾

172) UCC 제69조

173) UCC 제70조 제1항

174) UCC 제70조 제3항

175) UCC IA 제133조

- 물품이 EU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기 전이 아니라 특별절차에 따라 임시보관 또는 장치되는 동안 EU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경우 해당 판매를 기준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됨
 - 다만, 내부경유, 최종사용, 역외가공의 절차에 따른 임시보관 또는 장치의 경우는 제외함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해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하는 총금액을 말함¹⁷⁸⁾
-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다음의 자에게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신용장 또는 유가증권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모든 지급을 포함함¹⁷⁹⁾
 - 판매자
 -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제3자
 - 판매자와 특수관계인 제3자
 -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제3자
- 구매자, 구매자의 특수관계인이 행하거나 구매인의 계산으로 행해지는 마케팅을 포함한 활동은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으로 간주하지 않음¹⁸⁰⁾
 - 다만 UCC 제71조에 따른 가산조정 대상이 되는 활동을 포함하지 않음

- 세관신고가 수리되는 때에 판매계약에 할인의 적용 및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거래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됨¹⁸¹⁾¹⁸²⁾
- 세관신고 수리 시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조기지급할인이 고려됨
- 그러나 세관신고 수리 후 계약의 변경으로 발생한 할인은 고려되지 않음

176) UCC IA 제128조

177) 제3편 II-1-가

178) UCC 제70조 제2항

179) UCC IA 제129조 제1항

180) UCC IA 제129조 제2항

181) UCC IA 제130조

182) 제3편 II-1-나-2)

- 판매자가 구매자의 이익을 위해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때에 이를 고려할 수 있음¹⁸³⁾¹⁸⁴⁾
 - 가격의 조정을 거래가격 결정 시 고려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에 대한 세관신고 수리 시 물품이 결함이 있음
 - 판매자가 세관신고 수리 이전에 체결된 계약상의 의무 또는 물품에 적용되는 법적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결함에 대한 보상을 위해 조정을 함

-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해야 할 가격에는 다음을 가산해야 함¹⁸⁵⁾
 -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산함
 -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함
 - 통관목적상 물품과 하나로 취급되는 컨테이너 비용
 - 인건비 및 재료비를 포함한 포장비용
 -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다음의 물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¹⁸⁶⁾
 - 수입물품에 포함된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유사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도구, 다이스, 금형 및 유사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비되는 재료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공예·디자인·계획·고안으로 EU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된 것
 - 구매자가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평가대상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하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¹⁸⁷⁾

183) UCC IA 제132조

184) 제3편 II-1-나-1)

185) UCC 제71조 제1항

186) 제3편 II-1-다-1)

-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입물품의 후속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
- 물품이 EU 관세영역에 반입되는 장소까지의 다음의 비용¹⁸⁸⁾
 - 수입물품의 운송비 및 보험료
 - 수입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적재 및 취급비용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해야 할 가격에 대한 가산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해야 함¹⁸⁹⁾
 - UCC 제7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해야 할 가격에 가산하지 않음
- 반면 다음의 금액은 거래가격을 기초한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음¹⁹⁰⁾
 - 수입물품이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된 후 운송비 및 보험료¹⁹¹⁾
 - 산업 플랜트, 기계 또는 장비와 같은 수입물품이 EU 관세영역에 반입된 후 수행되는 건설, 설치, 조립, 유지 또는 기술적 지원 비용¹⁹²⁾
 - 구매자가 체결한 금융약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이자로 구매자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한 비용
 - 물품이 실제지급가격이라고 신고 된 가격으로 실제로 판매되어야 함
 - 청구된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금융이 제공된 때에 널리 통용되는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함
 - EU에서 수입물품을 재생산하는 권리에 대한 요금
 - 구매수수료¹⁹³⁾

187) 제3편 II-1-다-2)

188) 제3편 II-1-다-3)

189) UCC 제71조 제2항 내지 제3항

190) UCC 제72조

191) 제3편 II-1-라-2)

192) 제3편 II-1-라-3)

193) 제3편 II-1-라-4)

- 수입관세 및 물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이유로 EU에서 부과되는 기타 요금¹⁹⁴⁾
- 물품을 EU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조건이 아닌 지급인 유통 또는 재판매하는 권리에 대한 비용

2. 거래가격 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거래가격에 따라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차적인 관세평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¹⁹⁵⁾
 - 최초로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만, 신고자의 요청 시 역산가격보다 산정가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

가.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EU 관세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평가대상 물품과 거의 같은 시간에 수출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관세가격을 결정함¹⁹⁶⁾
 - 이 경우 평가대상 물품과 동일한 상업수준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으로 판매되는 동종·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사용해야 함¹⁹⁷⁾
 - 이러한 판매가 없는 경우 관세가격은 다른 상업적 수준 또는 다른 수량으로 판매되는 동종·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결정됨
 - 거리 및 운송수단의 차이로 인한 동종·동일 또는 유사물품과 수입물품 간의 비용 및 요금의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¹⁹⁸⁾

- 동종·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가격 중 가장 낮은

194) 제3편 II-1-라-5)

195) UCC 제74조 제1항

196) UCC 제74조 제2항

197) UCC IA 제141조 제1항

198) UCC IA 제141조 제2항

가격이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됨¹⁹⁹⁾

- 다른 사람이 생산한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은 평가대상 물품을 생산한 자가 생산한 동종·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고려됨

나. 역산가격(공제가격)²⁰⁰⁾

- 수입물품, 동종·동일 또는 유사물품이 EU 관세영역 내에서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판매되는 단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관세가격을 결정함²⁰¹⁾
 - 해당 단가는 가장 많은 양으로 수입물품, 동종·동일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상태로 EU에서 평가대상 물품의 수입 시 또는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가격임²⁰²⁾
 - 이러한 단가가 없는 경우 수입물품, 동종·동일 또는 유사물품이 평가대상물품의 수입 후 90일 이내 가장 빠른 시간에 EU에서 수입된 상태로 판매되는 가격이 사용됨²⁰³⁾

- 수입한 상태로 판매되는 단가가 없는 경우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입물품이 추가 작업 또는 가공 후 EU 관세영역에서 판매되는 단가를 사용함²⁰⁴⁾
 - 이 경우 추가 작업 또는 가공으로 추가된 가치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함

- 다음의 판매는 EU 영역 내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목적으로 고려되지 않음²⁰⁵⁾
 - 수입 후 최초가 아닌 상업적 수준의 물품 판매
 - 특수관계자에 대한 판매

199) UCC IA 제141조 제3항

200) 제3편 II-2-가

201) UCC 제74조 제2항

202) UCC IA 제142조 제1항

203) UCC IA 제142조 제2항

204) UCC IA 제142조 제3항

205) UCC IA 제142조 제4항

-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무료로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자에 대한 판매
- 단가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량의 판매
- EU 영역 내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 해당 단가에서 다음의 비용을 공제해야 함²⁰⁶⁾
 - 수입물품과 동류·동종의 물품의 EU 관세영역에서 판매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급했거나 하기로 동의한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 EU의 관세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운송비 및 보험료, 관련 비용
 - 수입관세 및 물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이유로 EU의 관세영역에서 부과되는 기타 요금

다. 산정가격

-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 및 제작 또는 기타 가공의 비용 또는 가격에 일정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²⁰⁷⁾
 - 수출국의 생산자가 평가대상 물품의 동종·동류의 물품을 EU의 관세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때에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함
 - 일반경비에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및 제작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직간접적인 수출물품의 생산·판매비용을 포함함²⁰⁸⁾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및 제작비용에는 컨테이너, 포장비용과 평가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수입자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생산지원비용이 포함됨²⁰⁹⁾

206) UCC IA 제142조 제5항

207) UCC 제74조 제2항

208) UCC IA 제143조 제2항

209) UCC IA 제143조 제2항

- 다만 EU에서 수행된 기술·설계·공예·디자인·계획·고안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포함됨
- 또한 생산비용에는 물품의 경제적인 생성·추가·실질적인 향상을 위해 발생한 모든 지출이 포함됨²¹⁰⁾
 - 해당 비용에는 수입물품에 포함된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유사물품,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도구, 다이스, 금형 및 유사물품의 비용도 포함됨

라. 대체가격(Fallback)²¹¹⁾

- 관세 과세가격은 대체방법에 따라 EU의 관세영역에서 사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일반원칙과 조항으로 구성된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음²¹²⁾
 - 일반원칙과 조항은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GATT 협정」, UCC 제3장의 원칙과 조항을 말함
- 대체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상위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²¹³⁾
 - 이 경우 가능한 한 최대한 이전에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가격을 기반으로 해야 함
- 상위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유연한 적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함²¹⁴⁾
 - 이 경우 관세 과세가격은 다음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아야 함
 - EU 관세영역 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EU 관세영역 내에서의 판매가격

210) UCC IA 제143조 제3항

211) 제3편 II-2-나

212) UCC 제74조 제3항

213) UCC IA 제144조 제1항

214) UCC IA 제144조 제2항

- 2개의 대체가격 중 높은 값이 사용되는 시스템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
- 수출국 국내시장의 물품가격
- UCC 제74조 제2항 (d)에 따라 결정된 동질·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산정가격 외의 생산비용
-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 최소 관세 과세가격
- 임의적 또는 가상가격

II. 관세평가 해설

- 관세법위원회와 관세법 전문가그룹은 특정 조항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특정실제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관세평가개요서로 발간함²¹⁵⁾
 - 이는 관세평가 규정이 EU 전체에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것임

- 관세평가개요서의 지침과 사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관세당국과 관련 당사자에게 공통된 이해를 보장하고 회원국의 정확하고 조화로운 적용을 위한 도구임²¹⁶⁾
 - 따라서 관련 당사자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관세청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1.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가. 수출판매

1) 수출판매가 이루어지는 때²¹⁷⁾

- UCC IA 제128조 제1항은 거래가격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판매란 물품이 EU 관세영역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발생한 판매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215) TAXUD, *COMPENDIUM OF CUSTOMS VALUATION TEXTS*, 2021, p. 2.

216) TAXUD(2021), p. 22, p. 95.

217) TAXUD(2021), pp. 52~53.

- 따라서 평가대상 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시점은 물품을 EU 관세영역으로 가지고 오는 때임
- 물품을 EU로 가지고 오는 판매란 국경을 넘을 때의 판매, 즉 판매계약을 이행하면서 최종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때의 판매를 말함

2) 수출판매가 이루어지는 장소²¹⁸⁾

- 「WTO 관세평가 협정」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를 판단하기 위하여 판매 당사자가 위치한 국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포함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판매자는 수출국에, 구매자는 EU에 위치함
- 이와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공동체 내에서 설립된 당사자 간에 체결된 판매 계약에 명시된 가격은 거래가격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함²¹⁹⁾
 - 또한 WCO 권고의견 14.1²²⁰⁾에서도 판매가 발생한 국가는 수입국으로의 수출 판매라는 개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함

3) 판매로 볼 수 없는 거래²²¹⁾

- 「WTO 관세평가 협정」은 판매에 대해 정의하지 않지만, WCO 권고의견 1.1²²²⁾은 판매라는 용어를 가장 넓은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평가를 위해 가능한 한 넓은 범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WTO 관세평가 협정」의 기본원칙을 따르기 위해 해석되어야 함

218) TAXUD(2021), p. 53.

219) Case C-11/89, Unifert v Hauptzollamt Münster, Judgement of the Court of 6 June 1990.

220) 부록 1 참조

221) TAXUD(2021), p. 54.

222) 부록 1 참조

- UCC IA 제128조 또한 관세평가 목적을 위한 물품판매로 간주될 수 있는 범위를 변경하지 않음
 - 거래가격의 기본은 그대로 유지하고, 판매를 구성하는 의미 및 개념은 변경되지 않음

- 따라서 UCC 제70조에 따라 관세평가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판매의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함
 - UCC 제7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상업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 용어상 거래가 판매를 구성하는지, 거래 당사자가 구매자와 판매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입증되어야 함

- 물품을 위탁 수입하거나, 별도의 법인이 아닌 동일한 회사의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 임대 또는 대차 계약에 의한 수입은 판매가 발생했다고 간주할 수 없음
 - 임대 또는 대차 계약의 경우 물품 구매에 대한 선택사항이 포함된 경우라도 판매로 보지 않음

- 또한 구매주문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없으며, 판매자가 구매주문을 수락한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간 판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함
 - 구매주문은 잠재적인 구매자가 잠재적인 판매자에게 제안하는 공식적인 청약으로 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의사 표현임

가) 지사의 수입²²³⁾

- 제3국의 X가 생산한 물품은 모회사와 분리된 법인이 아닌 X의 유럽지사를 통하여 EU로 수입됨
 - X의 유럽지사는 특수관계가 아닌 구매자로부터 주문받고, 수입된 상품의 통관,

223) TAXUD(2021), p. 100.

고객에게 물품대금 청구, 여분의 물품 재고관리의 역할을 수행함

- X는 생산비용을 나타내는 이전가격을 기초로 지사에 송장을 회계목적으로 발급함
- 물품은 자유유통을 위한 수입통관 전이나 후에 유럽의 고객에게 판매됨
 - X의 유럽지사가 고객에게 청구한 가격은 상업적 이윤, 관세, 운송 및 관련 비용과 같은 기타 비용을 포함하므로 X가 청구한 가격과는 다름
- 판매는 별개의 두 당사자 간의 거래를 의미하므로 X의 유럽지사로의 운송은 동일한 법인의 두 개의 부서 간 물품의 이전을 구성함
 - 과세가격은 자유유통을 위한 통관 전에 특수관계가 아닌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함
- X의 유럽지사가 재고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판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UCC 제7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제74조에 따라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됨

나) 위탁판매²²⁴⁾

- WCO 권고의견 1.1에 따르면 위탁수입은 물품을 공급자의 계산으로 가장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수입국으로 송부되는 상황으로 수입 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음
 - 물품의 수하인은 일반적으로 판매자를 대신하여 주문을 받고 때로는 물품을 보관하고 배송을 처리하는 판매대리인의 역할을 함
 - 판매대리인은 판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여 물품가격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수수료로 보수를 받음

224) TAXUD(2021), pp. 138~144.

- EU 밖에서 설립된 과일과 채소 공급자 F는 물품을 EU 내에서 설립된 수입자 I에게 송부함
 - I는 F를 대리하여 EU 내외의 고객에 대해 판매대리인 역할을 하며, 수입은 위탁으로 이루어짐

- 이 경우 F와 I가 물품이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되기 전에 물품의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음
 - 해당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 I는 판매대리인의 역할이 아니라 판매계약의 판매자로서 지위에 있게 됨

- 관세평가방법과 과세가격은 UCC 제77조에 따라 물품이 자유유통을 위해 신고되는 때에 결정되어야 함
 - 따라서 물품이 자유유통을 위한 신고 직전에 판매되더라도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적용될 수 있음

- UCC 제77조는 물품이 송부될 때 판매자가 물품가격의 평가에 사용되는 판매를 체결한 구매자를 모르는 경우 적용될 수 있음
 - 즉 수입자가 공급자를 대리하는 판매대리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해야 함

- 이러한 결정방법은 다음의 상업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적용될 수 있음
 - 자유유통을 위한 물품 반출일에 물품이 EU 관세영역으로 수출되기 위해 판매된 경우 거래가격에 따른 결정방법은 적용될 수 있음
 - 자유유통을 위한 물품 반출일에 이러한 판매가 없고, 물품이 위탁수입되는 경우 거래가격은 적용될 수 없으며, 과세가격은 이차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함
 - 실제로 부패하기 쉬운 과일이나 채소는 물품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역산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됨

- 수출을 위한 판매가 이루어져 거래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와 위탁판매 되어 거래가격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수입자의 역할과 지위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임
 - 수입자가 물품 반출 후 재판매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물품의 소유자, 판매자의 당사자로서 상업적 및 재정적 위험을 감수함
 - 수입자가 위탁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판매대리인 역할을 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하지만 공급자를 대리하므로 물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 그러나 물품이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되기 전 최종적으로 완전판매 되었는지 또는 위탁판매 되었는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수입자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완전판매 또는 위탁판매 여부가 수입신고 전에 이루어진 공급자와 수입자 간 협상,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임

- 위탁판매와 완전판매의 절차는 구체적·객관적이며 확실한 기준에 따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계약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정의 절차에 따라 F와 I 간 완전판매로서의 수입이 발생했다고 간주할 수 있지만, 법적확실성을 위해 두 가지 거래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F와 I의 거래에서 수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C가 I에게 특정 수량의 물품을 주문하면 I가 F에게 주문을 전달하고, F가 물품을 I에게 송부하면 I는 물품을 수령·확인·준비하여 C에게 인도함
 - F가 I에게 물품을 송부하는 동안 C가 I에게 주문하면 I는 이를 F에게 전달하고, 물품을 수령·확인·준비하여 C에게 인도함
 - F가 I에게 물품을 송부하면 I는 물품을 수령하여 임시보관소에 보관하거나 자유유통을 위한 신고를 직접하고, C가 주문을 하면 I가 물품을 확인·준비하여 C에게 인도함

- 첫 번째 상황의 경우 물품을 C가 주문하기 전에 물품이 판매되지 않았으며, 물품이 수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C와 F 사이에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I를 통하여 판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물품은 위탁수입이 된 것이 아니므로 C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해야 할 가격이 거래가격의 근거가 됨

- 두 번째 경우 물품은 F를 대신하여 EU의 관세영역에서 판매하기 위해 I에게 발송되지만 운송 중에 I가 물품을 판매함
 - 물품이 도착하기 전 I가 판매대리인으로서 F를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했을 뿐이지만 자유유통을 위한 신고 전에 물품의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위탁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음

- 따라서 관세평가는 거래가격에 따른 결정방법을 근거로 이행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운송 중의 판매계약 체결의 증거가 세관당국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제시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물품은 F를 대신하여 EU의 관세영역에서 판매하기 위해 I에게 발송되고, 물품이 판매되기 전에 F를 대리하여 I가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함
 -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 당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물품은 위탁수입한 것으로 간주됨

- 따라서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없음
 -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된 날에 시행 중인 표준수입가격이 적용되거나 UCC 제74조 제2항(c)에 따른 역산가격에 의해 과세가격이 결정됨

4) 연속거래에서의 수출판매²²⁵⁾

- 물품이 관세영역으로 반입된 후 임시보관 증이거나 특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배치된 때에 수출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결정됨²²⁶⁾
 - 이는 세관창고에서 물품이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을 위해 신고 될 때 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이 있음
 - 이는 임시보관된 물품 또는 내부경유, 최종 사용 또는 역외가공을 제외한 특정 절차를 위한 물품에도 적용되지만, 세관창고 절차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임

- UCC IA 제128조 제1항은 보세창고에서 물품이 수출을 위해 판매된 경우, 즉 EU에 도착한 때에 물품에 대한 판매가 없는 경우에 적용됨
 - 물품이 EU로 반입되는 때에 자유유통을 위한 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채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임시보관이나 특정절차에 따라 배치된 경우 적용됨
 - 특정절차는 보세보관, 역내가공, 외부 경우, 임시승인 등이 있음

- 물품이 EU에 도착하는 때가 아니라 보세창고 절차에 따라 물품이 입고되는 때에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인은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할 수 있음
 - 물품이 판매대상이고 특별절차에 따라 물품이 배치된 후 UCC 제7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거래가격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UCC IA 제128조 제2항의 판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이 EU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순간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발생하는 판매를 의미함
 - 세관창고 절차에 따라 배치된 물품이 둘 이상의 판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세영역에 반입되는 때와 가장 가까운 순간에 체결된 판매가 거래가격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의 신고를 위한 판매가 됨

225) TAXUD(2021), pp. 56~57.

226) UCC IA 제128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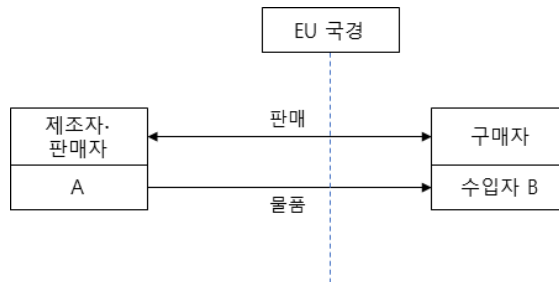
- 자유유통 상태로 반출되기 위해 제시되기 전의 마지막 판매를 포함한 다른 후속 판매는 관세평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5) 수출판매 사례

가) 사례 1227)

- 물품이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기 전 A와 B 사이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B가 자유유통을 위한 신고를 함
-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기 직전에 발생한 판매는 하나이며, 해당 판매는 UCC 제70조 제1항에 따라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의 기초가 됨

[그림 3-11-1] 수출판매 사례 1 거래개요



자료: TAXUD(2021), p.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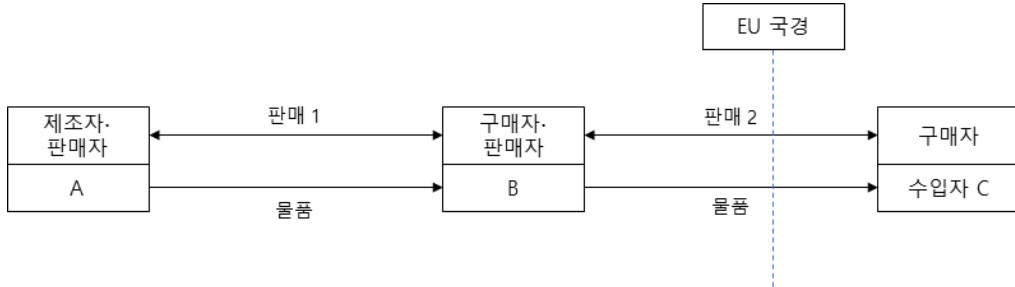
나) 사례 2228)

- 물품이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기 전 A와 B 사이와 B와 C 사이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C가 자유유통을 위한 신고를 함
-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기 직전에 발생한 판매는 B와 C가 체결한 판매이며, 해당 판매는 UCC 제70조 제1항에 따라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의 기초가 됨

227) TAXUD(2021), p. 59.

228) TAXUD(2021), p. 60.

[그림 3-11-2] 수출판매 사례 2 거래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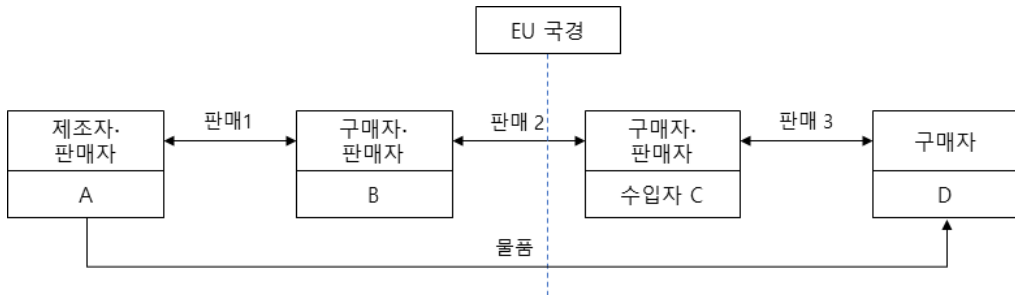


자료: TAXUD(2021), p. 60.

다) 사례 3.a²²⁹⁾

- 물품이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기 전 A와 B 사이와 B와 C 사이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C와 D의 판매는 EU 관세영역 반입 후 이루어지며, C가 자유유통을 위한 신고를 함
-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기 직전에 발생한 판매는 B와 C가 체결한 판매이며, 해당 판매는 UCC 제70조 제1항에 따라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의 기초가 됨

[그림 3-11-3] 수출판매 사례 3.a 거래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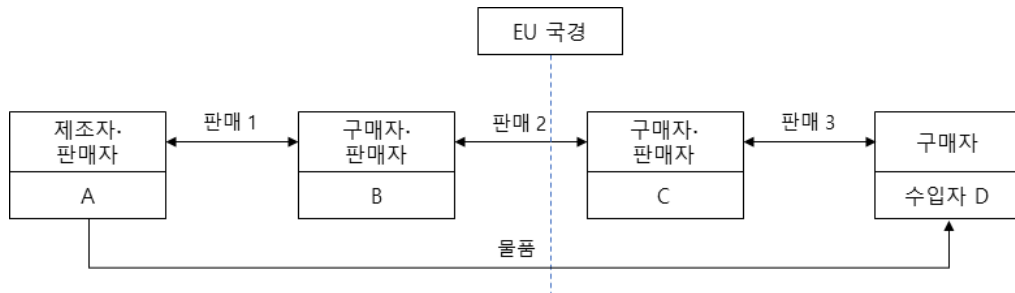
자료: TAXUD(2021), p. 61.

229) TAXUD(2021), p. 61.

라) 사례 3.b²³⁰⁾

- 물품이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기 전 A와 B 사이와 B와 C 사이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C와 D의 판매는 EU 관세영역 반입 후 이루어지며, D가 자유유통을 위한 신고를 함
 -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기 직전에 발생한 판매는 B와 C가 체결한 판매이며, 해당 판매는 UCC 제70조 제1항에 따라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의 기초가 됨
- 그러나 거래가격방법의 사용은 B와 C가 체결한 판매에 대한 송장을 D가 확인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짐
 - 수입자가 해당 송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거래가격방법은 적용될 수 없음
 - 3.a와 3.b의 유일한 차이점은 누가 수입자 역할을 하여 거래가격을 신고하느냐이며, 3.a의 경우 C가 판매 당사자이므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11-4] 수출판매 사례 3.b 거래개요



자료: TAXUD(2021), p. 62.

마) 사례 4.a²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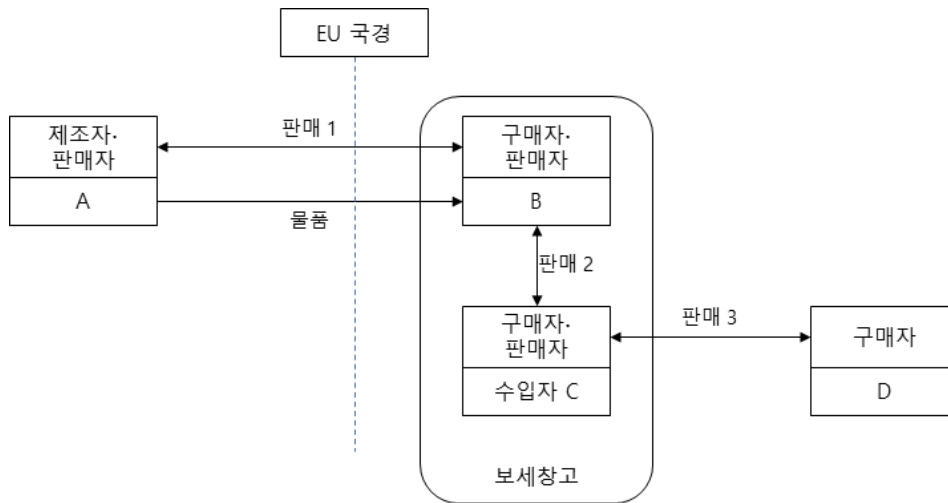
- 물품이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기 전 A와 B 사이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물품은

230) TAXUD(2021), p. 62.

231) TAXUD(2021), p. 63.

- A로부터 직접 EU로 발송되며, B는 관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함
- 관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동안 B는 C에게 판매하고, C는 이를 D에게 판매하며, C가 자유유통을 위한 신고를 함
-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기 직전에 발생한 판매는 A와 B가 체결한 판매이며, 해당 판매는 UCC 제70조 제1항에 따라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의 기초가 됨
- 그러나 거래가격방법의 사용은 A와 B가 체결한 판매에 대한 송장을 C가 확인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짐
- 수입자가 해당 송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거래가격방법은 적용될 수 없음

[그림 3-11-5] 수출판매 사례 4.a 거래개요



자료: TAXUD(2021), p.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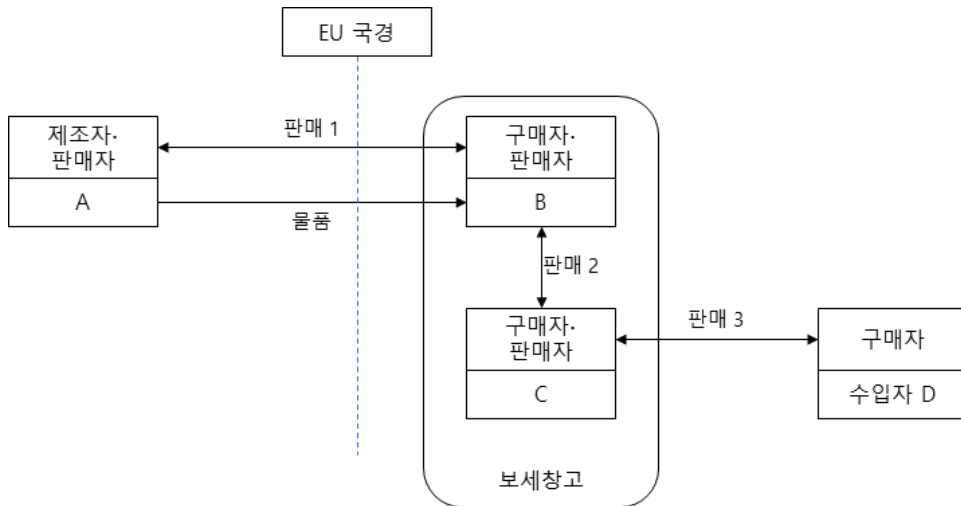
바) 사례 4.b²³²⁾

- 물품이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기 전 A와 B 사이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물품은

²³²⁾ TAXUD(2021), p. 64.

- A로부터 직접 EU로 발송되며, B는 관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함
- 관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동안 B는 C에게 판매하고, C는 이를 D에게 판매하며, D가 자유유통을 위한 신고를 함
-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기 직전에 발생한 판매는 A와 B가 체결한 판매이며, 해당 판매는 UCC 제70조 제1항에 따라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의 기초가 됨
- 그러나 거래가격방법의 사용은 A와 B가 체결한 판매에 대한 송장을 D가 확인할 수 있는냐에 따라 달라짐
- 수입자가 해당 송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거래가격방법은 적용될 수 없음
 - 4.a와 4.b의 유일한 차이점은 누가 수입자 역할을 하여 거래가격을 신고하는냐임

[그림 3-11-6] 수출판매 사례 4.b 거래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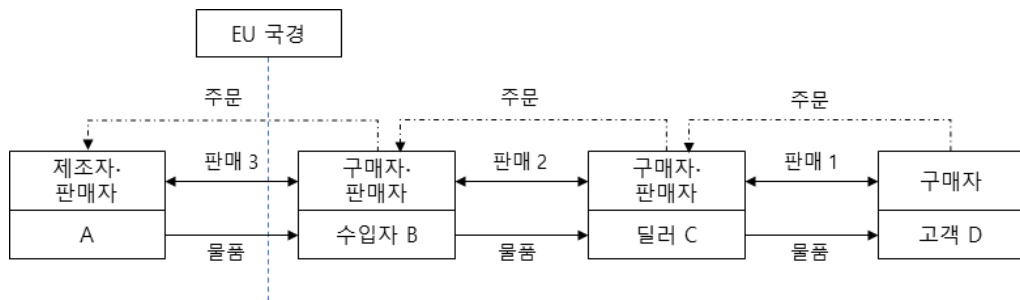


자료: TAXUD(2021), p. 64.

사) 사례 5233)

- EU의 고객 구매자 D는 자동차 판매상인 구매자 C를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고, 구매자 B는 물품의 수입자임
 -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기 전에 판매되었고, B와 A 사이의 판매가 EU 영역에 반입되기 직전에 이루어졌으며 B가 자유유통을 위한 신고를 함
-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기 직전에 발생한 판매는 A와 B가 체결한 판매이며, 해당 판매는 EU 국경을 넘어 물품을 실제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됨
 - 따라서 해당 판매가 수출을 위한 판매로, UCC 제70조 제1항에 따라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의 기초가 됨

[그림 3-11-7] 수출판매 사례 5 거래개요



자료: TAXUD(2021), p. 65.

아) 사례 6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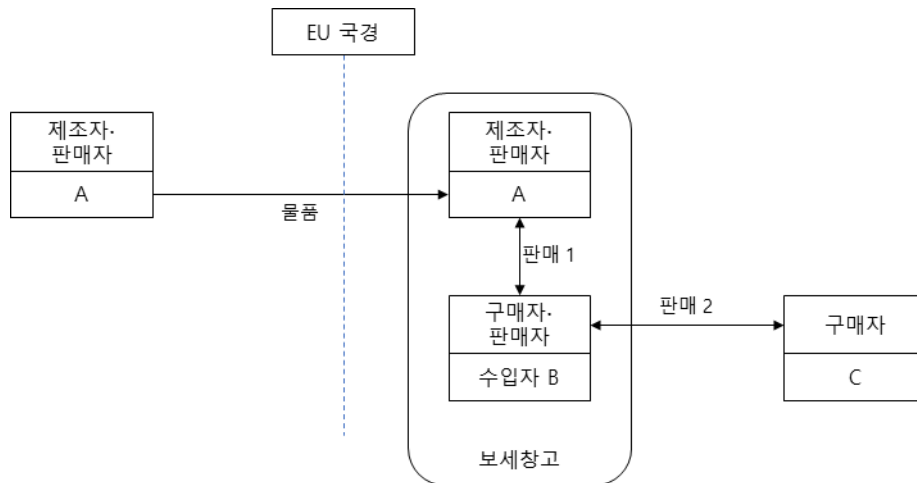
- A는 물품을 EU로 이전하여 세관창고에 보관하며, 세관창고 보관 중에 A가 B에게 물품을 판매함

233) TAXUD(2021), p. 65.

234) TAXUD(2021), p. 66.

- A와 B 간의 판매는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된 후에 이루어졌으며, B가 C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자유유통을 위한 신고를 함
- 물품이 EU로 반입되기 직전에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UCC IA 제128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음
- 그러나 세관창고절차에 따라 수입물품은 A와 B 사이에 체결된 판매의 대상이 됨
- 따라서 UCC IA 제128조 제2항에 따라 A와 B 사이에 체결된 판매가 UCC 제70조 제1항에 따라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의 기초가 됨
- UCC IA 제128조 제2항은 제1항과 별도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그림 3-11-8] 수출판매 사례 6 거래개요



자료: TAXUD(2021), p.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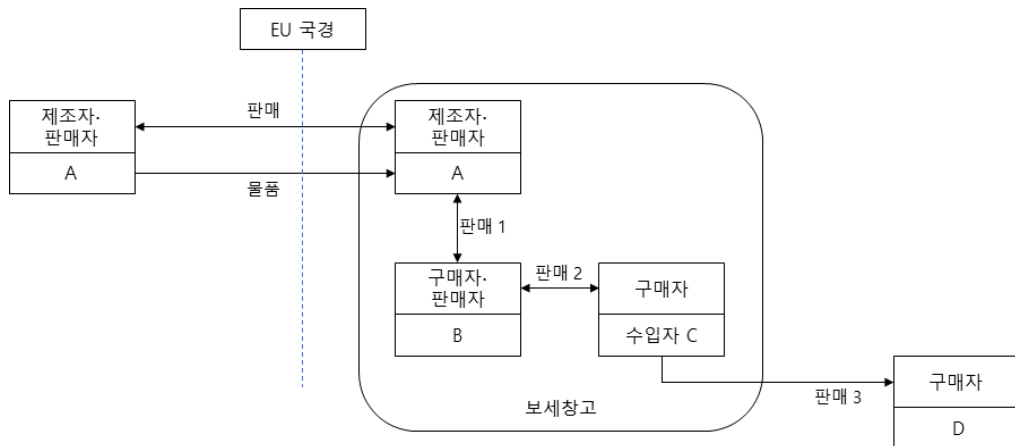
자) 사례 7235)

- A는 물품을 EU로 이전하여 세관창고에 보관하며, 세관창고 보관 중에 A가 B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B가 C에게 다시 판매함

235) TAXUD(2021), p. 67.

- A와 B 간의 판매, B와 C 간의 판매는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된 후에 이루어졌으며, C가 D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자유유통을 위한 신고를 함
- 물품이 EU로 반입되기 직전에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UCC IA 제128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음
 - 그러나 세관창고절차에 따라 수입물품은 A와 B 사이에 체결된 판매와 B와 C 간 판매의 대상이 됨
- 따라서 UCC IA 제128조 제2항에 따라 A와 B 사이에 체결된 판매가 UCC 제70조 제1항에 따라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의 기초가 됨
 - EU 관세영역에 반입되는 때의 가장 가까운 판매가 거래가격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하기 위한 판매임
- 그러나 거래가격방법의 사용은 A와 B가 체결한 판매에 대한 송장을 수입자 C가 확인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짐
 - 수입자가 해당 송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거래가격방법은 적용될 수 없음

[그림 3-11-9] 수출판매 사례 7 거래개요



자료: TAXUD(2021), p. 67.

차) 경매물품²³⁶⁾

- P 경매 사이트의 모든 경매물품은 0.01달러에서 입찰을 시작하며, 이후 입찰자들은 입찰당 0.01달러씩 입찰가를 올릴 수 있음
 - 경매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가장 높은 제안을 한 구매자는 가장 높은 입찰가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음

- 경매에서 입찰하기 위해서 입찰자들은 입찰권을 취득해야 하며, 입찰권은 약 0.3~1달러 사이에서 변동되는 가격으로 경매소에서 구매할 수 있음
 - 입찰에서 가격을 0.1달러 높이기 위해서 입찰자는 최소 0.31달러를 지불해야 함

- 특정 물품이 500번의 입찰 후에 판매된 경우 최종 입찰가는 5달러이며, 낙찰자는 입찰제안 비용 최소 0.3달러와 낙찰가 5달러를 지불해야 함
 - 그러나 경매소의 총수입은 낙찰가 5달러와 500번의 입찰제안 비용 150달러 (0.3*500)의 합계인 155달러가 됨

- 낙찰된 물품은 관련 웹사이트, 기타 제휴 네트워크를 통해 후속거래 할 수 있으며, 이는 구매자가 일반적인 소매가의 일부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낙찰가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격과 동일함

- 배송조건과 관련하여 경매에서 판매된 물품은 선적될 수 있는 장소의 제한이 없으며, 경매 이후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경우 거래가격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경매소는 물품을 경매가 이루어진 국가 밖으로 배송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는 UCC IA 제128조 제1항의 거래가격방법 적용을 위한 판매는 EU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반입하기 직전에 발생한 판매라는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음

236) TAXUD(2021), pp. 151~152.

- 이 경우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음
 - 사용된 입찰제안 비용과 최종 입찰가의 합계인 낙찰가를 기초로 결정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 구매자의 요청으로 경매소가 물품을 EU 관세영역으로 배송한 비용
- 경매 입찰자가 EU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낙찰가를 기초로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필요한 운송비용 및 보험료를 낙찰가에 추가하여 거래가격을 산출해야 함

나. 실제지급가격

1) 가격의 조정²³⁷⁾

- UCC IA 제132조는 손상되거나 결함 있는 물품에 대해 실제지급가격의 조정을 수락함으로써 물품의 결함을 고려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조정은 판매계약의 조건 내에서 이루어지고, 결함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 판매계약에는 가격조정 가능성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결함물품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보증조항에 의해 보장되어야 함
 - 보증조항은 가격조정 허용조항에서 참조되어야 하며, 판매계약과 연결되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 상업거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별도의 문서로 작성될 수 있음
- 보증은 수입물품의 성질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 보증 없이 판매되는 물품은 가격조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판매가능성을 확약하고 판매되는 물품, 품질, 균일한 크기, 신선도와 같

²³⁷⁾ TAXUD(2021), p. 25.

은 관련 지표의 변동에 따라 판매되는 물품은 가격조정이 인정되지 않음
- 이러한 이유로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가격조정 규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가격조정은 관련 계약에 따라 물품의 최저가격에 조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정기적인 금융결제로 이어져야 함
 - 따라서 제3자 지급, 물물교환 같은 간접 또는 지연된 보상은 가격조정에서 배제되며, 수용 가능한 형식으로 간주될 수 없음

가) 가격의 환급²³⁸⁾

- 제3국의 제조자 M은 EU의 독립 유통업체 D에 자동차를 판매하며, D는 딜러 네트워크를 통해 최종 고객에게 자동차를 재판매함
 - M과 D는 판매 및 유통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계약에는 보증에 관한 조항이 포함됨
 - 각 수입 자동차에는 고유한 식별번호가 할당되며, M은 모든 신차에 대해 주행거리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은 차량 등록일부터 유효함

- 판매 및 유통계약에 따라 M은 주행거리 10만km 내에서 자재 또는 제조결점으로 인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지급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결함을 보상함
 - 보증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고객이 결함을 발견하고 수리를 위해 자동차를 딜러에게 반환함
 - 딜러는 결함을 수리하고 자동차를 고객에게 반환하며,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보증청구를 준비함
 - 딜러가 D에 청구하면 D는 청구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결함이 제조결점등과 관련된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고 M에게 통지함

238) TAXUD(2021), pp. 26~27.

- M은 청구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결함이 제조상의 결점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초 지급가격의 조정을 위해 결함을 시정한 비용을 D에게 송금함

□ D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수입자로서 자유유통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2개월 내에 이루어진 가격조정에 대한 관세환급을 세관에 신청함

○ 세관은 보증청구 서류를 검토하고 시정된 결함이 제조상의 결점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를 심사함

○ 또한 환급청구한 수입 자동차에서 발견된 결함의 수리비용과 관련하여 M이 지급한 금액을 확인함

□ 관세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판매는 물품의 보증된 조건으로 물품에 지급된 총가격을 기준으로 함

○ 물품판매를 결정하는 계약상의 약정에는 판매의 조건으로 물품이 합의된 기술규범에 따른 특정한 품질임을 명시하는 조건이 있음

□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수입 자동차에 제조상 결점의 결과로 결함이 있음을 입증했으므로 세관은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가격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음

○ 제조자는 제조결함의 존재를 인정하고, 확인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지급된 가격을 조정함

○ 세관은 필수계약의 요건, 제조상 결함의 존재 및 상황, 제조결함의 시정, 수리일로부터 1년 내의 가격조정 등을 확인하였음

나) 리콜²³⁹⁾

□ 제3국의 제조자 M은 EU의 독립 유통업체 D에 자동차를 판매함

○ M과 D는 판매 및 유통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계약에는 보증에 관한 조항이 포함됨

239) TAXUD(2021), pp. 28~29.

- 각 수입 자동차에는 고유한 식별번호가 할당되며, M은 모든 신차에 대해 주행 거리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은 차량 등록일부터 유효함
- 판매 및 유통계약에 따라 M은 주행거리 10만km 내에서 자재, 디자인 또는 제조결점으로 인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지급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결함을 보상함
 - 보증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결함이 발견되면 D는 이를 시정하고,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보증청구를 준비함
 - 결함이 제조결점 등과 관련된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고 M에게 통지함
 - M은 청구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결함이 제조상의 결점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초 지급가격을 조정을 위해 결함을 시정한 비용을 D에게 송금함
- M은 특정 작동조건에서 특정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 구성요소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발견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반환을 요청함
 - 해당 결함은 자동차의 컨셉 및 디자인 측면에서 기인함
 - 이는 자동차의 주행과 관련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사전예방 조치로 검사 및 가능한 조정을 위해 구매지점으로 반환이 진행됨
- 관세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판매는 물품의 보증된 조건으로 물품에 지급된 추가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물품판매를 결정하는 계약상의 약정에는 판매의 조건으로 물품이 합의된 기술규범에 따른 특정한 품질임을 명시하는 조건이 있음
- 세관은 실제로 결함이 있는 물품만이 가격조정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예방조치로서의 검사 및 조정이 UCC IA 제132조의 적용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봄
 - 해당 사례에서 자동차의 검토, 특정 부품의 가능한 조정 및 대체의 필요성은 자동차의 특정 작동조건에 따라 달라짐

- 또한 제조자는 예방조치로써 시정조치 수행을 수리하며, 이러한 상황은 차량의 컨셉 및 디자인의 측면에서 기인함

2) 가격 할인²⁴⁰⁾

- 수입신고 하는 때 할인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할인은 특정 고객에게 특정 상황에서 특정 시기에 물품 또는 용역의 정가를 경감하는 것으로 정액이나 정가의 백분율로 표시됨
- 관세평가를 위한 할인은 수입물품과 관련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 시점에 유효한 계약상의 자격이 있어야 함
 - 평가 목적으로 할인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구분할 수 있음
 - 구매자가 할인을 이용할 수 있고, 할인이 반영된 가격이 수입신고 시에 지급되었으며, 적용된 할인은 송장가격에 반영되어 있음
 - 구매자가 할인을 이용할 수 있고, 할인이 반영된 가격이 수입신고 시에 아직 지급되지 않음
 - 수입신고 시에 할인이 아직 제안되지 않았거나 이용할 수 없으나 판매자가 할인을 소급 제안함
 - 할인이 표준 산업관행인지 다른 구매자에게도 부여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음
- 할인이 수입신고 시에 이미 지급했거나 해야 할 가격에 표시된 경우 해당 가격은 과세가격의 결정요소임
 - 판매계약에 명시된 이유 또는 범위로 수입신고 시에 이미 할인이 적용되고,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관세당국에 제공한 서류에 명시되었다면 할인은 인정됨

240) TAXUD(2021), pp. 44~45.

- 물품에 대한 송장에 이미 할인이 계산되어야 하는 점은 필수가 아니며, 수입신고 시 계약상의 청구가 있었다면 금액 지급 후 실제가격을 입증하지 않아도 됨
-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신고 시에 아직 지급되지 않아도 적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할인과 최종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할인은 허용됨
 - 이 경우 할인 금액이 수입신고 시에 결정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이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인정됨
-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에 지급해야 할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므로 할인이 소급조정 되는 경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음
 - 연말에 가격을 소급하여 할인하는 등 관세평가일 이후에 가격의 경감이 발생한다면 즉, 처음부터 할인에 대한 청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거래가격에서 고려되지 않음

가) 수량할인²⁴¹⁾

- 할인의 한 형태인 수량할인은 구매자가 구매한 수량을 기초로 할인된 가격이 제안되며, 때때로 할인 제안은 특정 기간 동안 구매하는 총수량과 관련됨
 - 평가규정은 이러한 경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수리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함
- 수량할인의 경우 할인의 근거가 되는 전체수량이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거나 EU 관세영역에 남아있지 않아도 됨
 - 수량할인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로 인정되는 경우 탁송품의 일부가 수입되더라도 인정될 수 있음
 - 물품이 최종적으로 수입되는 국가와 상관없이 수량할인은 총판매가격을 기초로 주어지므로 수입자는 탁송품 중 EU로 수입되는 부분에 대해 할인을 적용받을

241) TAXUD(2021), p. 45.

수 있음

나) 조기결제 할인²⁴²⁾

- 조기결제 할인은 수입신고 시 할인된 가격이 지급된 경우 또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할인이 청구된 경우 신고 된 범위 내에서 인정됨
 - 예를 들어 즉시결제 5%, 14일 이내 결제 3%, 1개월 내 결제 2%와 같이 지급 조건에 따라 조기결제 할인이 주어지는 경우 수입신고 시의 최대 할인이 인정됨
- 수입신고 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청구된 경우 신고 된 할인은 관련 무역 부문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수준이어야 함
 - 조기결제 할인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인 경우 구매자는 신고 된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며 수입신고 시 할인이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다) 추가선적물품 할인²⁴³⁾

- 계약수량 외에 추가로 공급하는 물품이 무료인 경우 실제지급가격은 총수입물량에 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무료물품을 별도로 평가해서는 안 됨
 - 주문수량에 대한 여분으로 분실·손상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특정 수량을 대금지급 물품과 함께 선적한 경우 여분의 가격은 이미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봄
 - 또한 판매자가 고객에게 상업적 할인으로 고객이 주문한 유료물품의 수량에 더하여 동일한 물품을 무료 제공하는 경우 가격할인이나 경감으로 인정됨
 - 예를 들어 한 회사가 2천화폐단위의 텔레비전을 100대 수입하는 때에 충성도에 대한 감사로 10대의 텔레비전을 동일한 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음

242) TAXUD(2021), p. 45.

243) TAXUD(2021), p. 45.

- 반면 주문한 물품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이 무료로 공급될 수도 있음
 - 무료로 공급되는 물품이 수입자의 마케팅을 위한 시용품으로 사용되며, 해당 물품은 물리적 특징, 품질 및 평판이 주문물품과 동일함
 - 4천개의 향수병에 추가하여 동일한 향수병 1천개가 시용품이라는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수입될 수 있음
 - 또한 주문물품과 유사한 무료견본이 동일하거나 더 작게 포장되어 주문물품과 함께 선적될 수 있음

- 이와 같이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이 견본이나 시용품인 경우 해당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간주됨
 - 이 경우 견본이 공급품에 무료로 포함되어 있다는 표시가 판매계약, 송장 또는 기타 서류에 나타나야 함
 - 세관은 판매물품과 견본의 비율은 무시함
 - 하나의 선적에 견본이 15%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견본의 가격이 판매물품보다 비쌀 수도 있음

3) 추가지급금액

가) 쿼터 구매비용²⁴⁴⁾

- 제3국에서 설립된 회사 X는 방직용 섬유제품을 EU의 Y사에 판매하며, 해당 제품은 EU와 섬유계약을 체결한 제3국에서 제조됨
 - 해당 계약으로 인해 EU의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섬유제품은 수출허가를 위한 연간쿼터가 필요함

- X가 자신의 쿼터를 소진하고, X 또는 Y는 물품의 수출을 위해 X와 특수관계가

244) TAXUD(2021), p. 106.

아닌 제3자로부터 쿼터에 대한 권리를 구매하였음

- 쿼터 소유자는 쿼터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가를 지급받고 다른 이에게 이전할 수 있음
 - X가 쿼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비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Y에 청구하고, Y가 구매한 경우 무료로 X가 처분할 수 있도록 제공함
- 이 경우 쿼터 구매비용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구성하는지 검토해야 함
- Y는 스스로 쿼터를 구매하거나 X에 비용을 상환함으로써 쿼터 획득으로 발생한 추가금액을 부담함
- 해당 사례에서 양도 가능한 쿼터는 그 자체로 관련된 섬유제품과 독립된 가격을 가지므로 정당하게 입증된 추가비용은 관련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을 구성하지 않음
- 필요한 경우 쿼터가 자신의 것인지, 제3자의 것인지 그 유형과 관련된 지급금액을 입증해야 함

나) 증명서 취득비용²⁴⁵⁾

- 제3국에서 설립된 X사는 도축장으로 특정품질의 육류를 EU의 Y사에 판매하며, 육류는 제3국과 EU의 양자협정에 따라 정해진 쿼터에 대해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쿼터는 수출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EU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를 통해 관리됨
- 증명서는 전년도 쿼터제도에 따라 판매된 육류의 양에 비례하여 도축장에 발생되며, 증명서는 다른 도축장에 양도될 수 없음
- 증명서는 EU로 수출되는 특정 육류 특송품에 대해서만 할당됨

245) TAXUD(2021), p. 111.

- X는 육류의 가격을 청구하고, 증명서에 대해 별도의 금액을 청구하며, 해당 두 금액은 직간접적으로 X에 발생함
 - X는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증명서 금액을 청구함

- 양도될 수 없는 증명서는 함께 공급되는 육류와 분리될 수 없으며, 육류의 가격과 관련이 없으면 스스로 가치가 없음
 - 또한 증명서에 대해 청구된 금액은 직간접적으로 X에게 발생하지만 증명서 취득을 위한 지출에 대하여 X에 상환하는 것이 아님
 - 즉 증명서에 대한 금액은 X에 귀속되는 순수한 수익이 됨

- 이러한 이유로 증명서에 대해 청구된 금액은 수입물품의 지급했거나 해야 할 총가격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함
 - 따라서 UCC 제70조에 따른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다) 시험 수수료²⁴⁶⁾

- 수입자 X는 역외가공 면세절차에 따라 반도체 디바이스를 조립하기 위해 실리콘 금형을 특수관계인 A국가의 Y에 수출함
 - 실리콘 금형은 판매 및 환매 계약에 따라 X사가 Y사에 판매하며, 가공 후 Y는 가공된 실리콘 금형의 가격에 소용된 비용을 합산한 가격을 X사에 청구함

- X사는 특수관계인 B국의 Z가 가공된 물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시험 후 Z는 발생한 비용을 X사에 청구함
 - 시험 결과 요구된 요건을 충족한 물품은 X에 의해 EU로 수입되며, 불충족한 물품은 B국에서 폐기됨

246) TAXUD(2021), p. 117.

- 수입자의 진술에 따르면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공정은 다중가공작업이며, 각 가공이 다른 장소에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단계별 시험이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임
 - 이 경우 실리콘 금형은 A국으로 선적하기 전에 금형 제작사에서 전자적 시험을 하고, 가공된 물품은 A국에서 육안검사, B국에서 육안검사와 전자적 시험을 함 - B국에서의 전자적 시험은 고부가가치 장비를 사용하여 이루어짐

- 이러한 테스트 비용은 물품의 거래가격을 평가하는 때에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 지 검토가 필요함
 - 시험은 가공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B국에서 실시되는 시험에 대한 수수료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제가 됨
 - 반면 시험 수수료가 상품을 구매한 후 수입 전에 구매자의 계산하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음

- 시험은 물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절차이며,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시험을 완료한 물품이므로 시험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을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함
 - 시험 수수료에 공급된 재료의 가격에 가공비용을 포함한 금액과 EU 관세영역으로 운송하는 비용을 가산하여 거래가격을 산출함

라) 소프트웨어 기능 활성화 비용²⁴⁷⁾

- 제3국에 위치한 제조자 X는 자동차를 그의 유통사인 유럽의 Y에 판매함
 - 두 회사는 특수관계이지만 특수관계가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EU 시장에 판매될 자동차는 제조과정에서 사전 설치된 여러 소프트웨어 기능이 장착되어 있음
 - 이러한 기능에는 비 감지센서, 좌석열선, 운전자 졸음 감지, 디지털 라디오, 유럽 지역을 위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사각지대 도우미 등이 포함됨

247) TAXUD(2021), pp. 157~159.

- 그러나 자동차가 EU의 관세영역에 반입되는 때에는 EU의 안전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기능만 활성화되어 있음
- X와 Y가 합의한 자동차의 가격에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능의 장착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즉 EU의 안전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활성화된 기능뿐 아니라 활성화되지 않은 기능의 장착비용도 포함된 가격임
- 그러나 특정 기능의 경우 최종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선택사항으로 판매되고, 구매자의 추가지급의 대가로 활성화됨
 - 이러한 기능의 활성화 가격은 X와 Y가 합의한 자동차의 가격에 반영되지 않음
- EU의 고객 Z는 Y에 추가 선택사항으로 비 감지센서와 시트열선 시스템이 장착된 특정 모델의 자동차를 주문함
 - Z의 주문에 따라 해당 두 가지 기능이 활성화된 자동차가 판매자·제조사인 X와 구매자·유통업자인 Y의 판매계약의 대상이 됨
 - 판매계약은 자동차가 EU의 관세영역으로 수입되기 전에 체결됨
- Y는 자동차를 EU의 관세영역에서의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을 위하여 신고하고, 반출 후 유통업자 Y는 자동차를 Z에 재판매함
 - 이때 자동차의 최종 구매자가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소프트웨어 기능은 비활성화 되어 있음
- 이후 Z가 다른 기능인 디지털 라디오의 활성화를 위하여 Y 또는 X로부터 소프트웨어 키를 구매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여 이메일을 통해 이를 제공받음
 - 소프트웨어 키는 종이나 USB 장치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도 있음
 - 기능의 활성화는 자동차의 컴퓨터나 온라인으로 소프트웨어 키를 입력함으로써 Z가 직접 또는 공인 수리점을 통하여 할 수 있음

- 이 경우 Z가 디지털 라디오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Y 또는 X에 지급한 금액이 수입 자동차의 과세가격 일부를 구성하는지 검토해야 함
 - X와 Y 사이에 체결된 판매계약은 EU의 관세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를 구성하므로 해당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됨

- 제시된 사실에 따르면 최종 구매자 Z가 주문한 자동차는 비 감지센서와 시트열선이 장착된 상태로 EU 관세영역에 반입되었고 자유유통을 위해 신고됨
 - 해당 추가기능이 있는 수입 자동차에 대해 Y가 X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거래가격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사용됨

- Z가 디지털 라디오의 추가기능을 구매하는 것은 자동차가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된 이후 Z와 Y 또는 X 사이에 별도로 판매계약을 체결한 결과임
 - X와 Y의 계약, Z와 Y 또는 X의 계약은 서로 독립적인 계약임

- 따라서 추가 소프트웨어 기능의 접근에 대해 Z가 Y 또는 X에 지급한 금액은 수입된 자동차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음
 - 두 가지 기능이 활성화되어 수입된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X와 Y가 체결한 판매계약을 기초로 결정됨
 -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때에 X가 Y에 자동차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 거래가격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됨

- Z의 요청에 따른 디지털 라디오와 같은 추가기능의 활성화는 X와 Y의 판매계약의 대상이 아님
 - Z가 Y 또는 X에 지급한 활성화 수수료는 Y가 X에 지급한 자동차의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음
 - 따라서 추가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Z가 Y 또는 X에 지급한 수수료는 관세평가 목적상 고려대상이 아님

다. 가산요소

1) 생산지원비용

가) 생산지원이 제공되는 장소²⁴⁸⁾

- 생산지원비용이 제공되는 국가는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이 UCC 제71조 제1항 (b)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 있음
 - 예를 들어 생산지원 된 물품은 수입물품이 생산되는 국가에서 생산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제3국이나 EU 자체에서 생산자에게 운송됐을 수 있음
 - 그러나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제공되는 기술·설계·공예·디자인·계획·고안이 EU에서 수행된 경우 생산지원으로 가산되지 않음
- 다국적 그룹의 X사는 제3국에서 제조한 자동차를 같은 그룹에 속한 EU의 Y사에 판매하며, Y는 EU 내에서 기술·설계·디자인을 수행하였음
 - Y는 자동차의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계획을 제공하고, 기술 등의 비용을 X에 판매하는 때에 송장가격에 포함하며,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Y는 X가 청구한 가격에서 EU에서 수행된 연구 및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한 가격이 관세평가의 기초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함
 - 다만 공제되는 비용은 실제 지급했거나 해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구분이 가능함
- 그러나 UCC 제71조는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해야 할 가격에 대한 가산요소만을 다루며, 공제요소는 제72조에 열거되어 있음
 - 해당 사례의 경우 UCC 제70조에 따라 거래가격을 참조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되지만, 현행 국제 및 EU 규정에 따라 연구 및 개발 비용이 공제되지 않음

²⁴⁸⁾ TAXUD(2021), p. 23, 98.

나) 생산지원비용에 포함되는 비용²⁴⁹⁾

-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생산지원의 가격은 취득비용 또는 생산비용이며, 생산지원을 수입물품의 생산자에게 운송하는 비용의 처리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 생산지원을 운송하는 비용은 운송비용 및 보험료, 적재·하역·취급 비용을 말함

- 생산지원비용을 결정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생산자에게 생산지원을 운송하는 비용은 생산지원의 취득비용 또는 생산비용에 가산되지 않음
 - 그러나 생산지원을 취득한 경우 취득비용에 운송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비용은 취득비용의 일부가 됨

- EU의 A사가 제3국 X의 B사에 셔츠 제조를 주문하고, 셔츠를 제조하기 위한 직물과 단추를 B에 무료로 제공함
 - A는 직물은 제3국 Y의 C사에 'CIF X port of unloading' 조건으로 직물을 구매하고, 단추는 제3국 Z의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함

- 직물과 단추는 생산지원에 해당하며, 직물의 CIF 가격이 직물의 취득비용이므로 X국으로의 운송비용이 생산지원비용에 포함됨
 - 단추는 생산비용만 해당되므로 운송비용은 생산지원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다) 생산지원비용의 할당²⁵⁰⁾

-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생산지원비용은 ① 할당의 필요성, ②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범위에 따라 영향을 받음
 - 수입물품의 공급계약이나 관련 송장은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지원비용의 범위를 표시하기도 함

249) TAXUD(2021), pp. 23~24.

250) TAXUD(2021), p. 24, 108.

- 포함되지 않은 비용은 과세가격의 일부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생산지원의 총비용과 할당의 방법을 알아야 함
- EU의 A사는 A의 자재로 생산한 셔츠를 제3국 X의 B사로부터 수입하며, 계약서에는 A는 자재를 40%의 가격으로 B에 공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B가 A에 발급한 송장에는 셔츠의 제조 및 공급 금액을 표시하며, 자재가격의 40%는 B가 A에 청구한 송장가격에 포함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음
- 따라서 자재가격의 60%는 생산지원비용으로 셔츠의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자재의 가격은 생산지원비용이며, 총생산지원비용의 60%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음
- 또한 A사는 B사에 재킷 제조를 주문하고, B는 재킷의 구성 재료를 자체조달하지만 A는 제3국 Z의 디자인회사에서 재킷의 패턴을 구매함
 - B가 A에 발급한 송장에는 셔츠의 제조 및 공급 금액을 표시하며, 디자인 가격은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패턴가격 전체는 생산지원비용으로 재킷의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디자인이 제3국에서 수행되었으며, 패턴의 가격 전체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음
- 다른 사례로 제3국의 X는 카세트 라디오를 제조하여 EU의 Y에 판매함
 - Y는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아니며, 라디오를 자유유통을 위해 수입함
- 라디오 세트의 외관을 개선하기 위해 제조자는 구매자가 디자인하고 제3국에서 X가 생산한 특별한 도구를 사용함
 - 해당 도구는 EU의 관세영역으로 수입되지 않음

- 라디오 세트의 탁송품 하나에는 ① 탁송품의 구매송장, ② 도구의 총제작비용을 나타내는 송장이 첨부되어 세관에 수입신고 됨
 - 신고 된 과세가격은 2개 송장의 총합계이며, 수입자는 하나의 탁송품에 도구의 비용을 할당하기로 선택함

- 해당 도구는 수입물품의 수출판매와 생산과 관련되어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생산지원이며, 비용 전체를 물품의 첫 번째 선적에 할당하여 가산할 수 있음
 - 도구의 비용은 다른 구매자로부터 도구를 구매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수입물품에 대해 지급했거나 해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음

라) 소프트웨어·기술의 처리²⁵¹⁾

- EU에서 개발·생산된 소프트웨어·기술이 수입물품의 작동 가능성이나 개선을 위하여 수입물품에 장착된 경우 관세평가상 처리방법이 문제 될 수 있음
 - 이 경우 소프트웨어·기술은 대부분 인터넷이나 자료저장매체를 통해 공급됨

- 종종 이러한 소프트웨어·기술은 생산공정에서 이미 물품에 장착되어 있으며, 오직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추후단계에서 코딩절차를 통해 이용가능하게 됨
 - 예를 들어 자동차나 자동차 보조 산업 분야의 사전설치 된 내비게이션, 주간 헤드라이트, 실외 온도 게이지, 또는 높은 성능의 엔진 등이 있음

- 소프트웨어·기술은 거래가격방법에 따라 평가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무형의 생산지원으로 다음의 생산지원 항목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함
 - 수입물품에 포함된 재료, 구성요소, 부품 및 유사물품
 - EU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된 기술·설계·공예·디자인·계획·고안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것

251) TAXUD(2021), pp. 122~123.

- 만약 소프트웨어·기술이 수입물품에 포함된 재료, 구성요소, 부품 및 유사물품의 경우 소프트웨어·기술의 가격은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함
 - 해당 생산지원은 EU에서 생산된 경우라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음

- 반면 EU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기술이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공예·디자인·계획·고안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UCC 제71조 제1항 (b)(iv)에서는 EU에서 수행된 기술은 가산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사법재판소는 무형의 생산지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함²⁵²⁾
 - 수입물품에 설치되는 무형의 구성요소는 물품의 생산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종물품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능 향상이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제품의 가치에 기여함
 - 반면 패턴, 디자인, 모델 등 지적지원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것임

- 따라서 작동성을 위해 수입물품에 설치되는 무형의 구성요소는 수입물품에 포함된 재료, 구성요소, 부품 및 유사물품에 해당됨
 - 이들은 수입물품의 생산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수입물품의 필수적인 부분임

- 반면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구매자가 제공하는 무형의 지원은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공예·디자인·계획·고안에 포함됨
 - 이는 특허되었거나 특허되지 않은 생산 노하우나 디자인이 해당될 수 있음

마) 디자인의 처리²⁵³⁾

- 섬유산업에서 수입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구매자가 제조

252) Case C-306/04, Compaq Computer International Corporation v Inspecteur der Belastingdienst - Douanedistrict Arnhem, Judgment of the Court of 16 November 2006.

253) TAXUD(2021), pp. 126~128.

자에게 제공하는 CAD 산출물은 관세평가상 처리방법이 문제 될 수 있음

- 이 경우 EU에서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단 위치 이미지를 생산하여 무료로 제3국의 제조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제공함

- 재단 위치 이미지는 다음의 생산지원 항목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함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다이스·금형 및 유사물품
 - EU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된 기술·설계·공예·디자인·계획·고안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것

- 이미지가 포함된 파일은 제조자가 플로터를 사용하여 종이에 인쇄하며, 이미지가 있는 종이를 직물에 직접 덧대어 직물을 자름
 - 제조자는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여 다른 작업은 수행하지 않음

- 다이스·금형 및 유사물품이 아닌 생산 공정에서 결합되거나 공급되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생산에 사용되는 도구로 간주하지 않음
 - 그러나 이러한 생산 공정상의 투입은 UCC 제71조 제1항 (b)(iv)의 지적지원에 해당할 수 있음

- 해당 사례의 경우 전자적으로 송부된 이미지는 직물의 조각을 자르는 데 사용되므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직접 투입됨
 - 제조자는 재단 위치 이미지 파일을 열고, 플로터를 사용하여 종이평면에 인쇄하며, 추가적인 지적 투입물을 제공받을 필요가 없음

-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는 UCC 제71조 제1항 (b)(ii)에 따른 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음
 - 해당 투입물은 물품 생산에 필수적이며, 최종물품의 크기와 형태, 디자인을 결정하므로 생산 공정에서 결합되며 최종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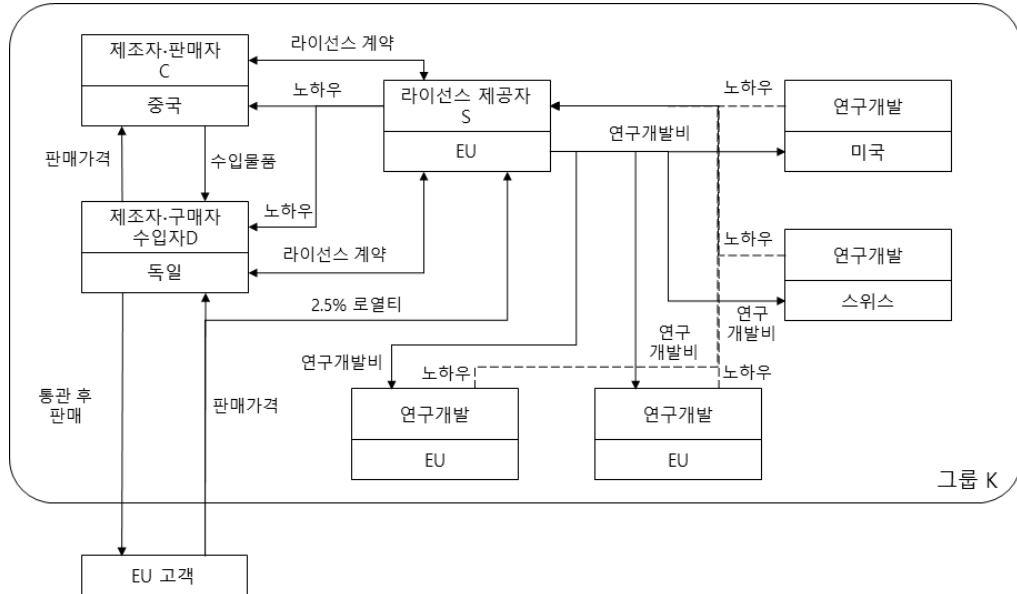
- 이러한 투입물의 주요한 특성은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도구 등의 기준과 기능과 더 관련되는 것으로 보임

바) 로열티 형태로 지급되는 생산지원비용²⁵⁴⁾

- 세관이 관세평가에서 생산지원비용 또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 중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할지 심사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음
 - 이러한 구분문제는 제조 노하우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면, 소유자가 물품의 생산을 위해 생산회사에 노하우를 무료로 공급하는 경우 발생함
- 다국적 기업인 K는 전 세계의 연구개발 회사와 함께 여러 곳에서 제품을 개발하며,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EU에 기반을 둔 계열사 S가 담당함
 - S는 그룹의 모든 연구개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각 회사는 S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함
 - 연구개발 회사는 개발비용에 적절한 추가 비용을 더한 금액을 청구하고, S는 이를 지급하여 개발된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
- S는 개발된 노하우를 EU의 D와 같은 생산업체들이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도록 하고, 생산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 라이선스 계약에는 해당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D는 계약대상인 물품을 자체공장에서 일부 완성함
- EU의 D는 라이선스 계약대상 물품을 C를 포함한 그룹의 다른 회사에서 취득하여 수입하며, C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하우를 D로부터 제공받음
 - 실제로 C에 노하우를 제공하는 주체는 S이며, D는 S에 노하우에 대한 순 매출액의 2.5%를 로열티로 지급함

254) TAXUD(2021), pp. 132~137.

[그림 3-II-10] 로열티 형태로 지급되는 생산지원비용 거래개요



자료: TAXUD(2021), p. 137.

- 이 경우 라이선스 계약대상인 수입물품에 대해 D가 S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생산 지원비용인지 로열티인지 심사가 필요함
 - 또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로열티 금액의 범위도 검토해야 함
- UCC 제71조 제1항 (c)가 적용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 금액은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제조 노하우는 이미 수입물품이 해외에서 제조되어 물품에 채화될 때 완료되므로 전체 금액이 가산됨
- 반면 UCC 제71조 제1항 (b)에 따른 생산지원비용인 경우 EU 밖에서 개발된 노하우를 사용하여 제조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만 로열티 금액이 포함되어야 함
 - 생산지원에 대해 지급한 로열티는 EU 밖에서 발생한 개발비용을 상환하는 데 사

- 용하는 부분과 EU 내에서의 개발을 상환하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할당되어야 함
- 만약 S가 특정 기간 개발 장소에 따라 부과된 개발비용의 비율, 해외에서 발생한 개발비용과 EU에서 발생한 개발비용을 비교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할당이 가능함
- 따라서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UCC 제71조 제1항 (c)의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가 제71조 제1항 (b)의 생산지원비용보다 우선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함
 - 또한 특별법 우선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을 식별하는 결정요소는 무엇인지 고려해야 함
 - WCO 권고의견 4.8과 4.13²⁵⁵⁾은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심사하는 데 추가하여 생산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또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함
 - 그러나 WCO 권고의견은 이를 명시적으로 해결하지는 않고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 상표와 관련된 공예와 디자인·라벨의 공급이 생산지원비용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별도의 고려사항임
 - WCO 기술위원회의 논의, 전문가 보고서에 따르면 로열티를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분명한 것은 WCO 권고의견 4.8과 4.13이 로열티가 「WTO 관세평가 협정」 제8조 제1항 (c)의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는 것임
 - 「WTO 관세평가 협정」 제8조 제1항 (c)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만 생산지원에 따른 지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함
 - 반대로 WCO 기술위원회의 WCO 사례연구는 UCC 제71조 제1항 (b)의 생산지원이 제71조 제1항 (c)의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함을 제안함

255) 부록 1 참조

- 이는 관세평가에 관한 WCO 기술위원회의 국제지침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거나 심지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줌
- WCO 사례연구 8.1²⁵⁶⁾은 의류 수입자 ICO가 라이선스 소유자 LCO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패턴지를 받아 해외제조사 XCO에게 무료로 제공함
 - 라이선스 계약은 종이패턴과 디자인에 대한 대가로 ICO는 수입의류를 판매하는 때 총매출액의 10%를 LCO에게 로열티로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함
- WCO 기술위원회는 세관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로열티로 지칭된 지급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고 봄
 - 로열티로 기술된 지급이 생산지원비용과 관련 있는 경우 「WTO 관세평가 협정」 제8조 제1항 (b)가 적용될 수 있음
 - 그렇지 않은 경우 관세당국은 제8조 제1항 (c)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사례연구 8.2²⁵⁷⁾ 또한 뮤직비디오 사용을 위한 로열티의 관세평가상 처리에 대해 동일한 결론을 내림
 - 뮤직비디오는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마스터테이프를 사용하여 무료로 제조자에게 공급함
- 한편 UCC 규정에 따르면 제71조 제1항 (b)는 수입물품의 제조자에게 필요한 제조 노하우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제조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때에 적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제71조 제1항 (c)는 생산요소와 관련 없는 로열티에 대해서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상표권, 유통 노하우, 활용 노하우, 유지 보수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로열티 등을 말함

256) 부록 2 참조

257) 부록 2 참조

- EU 사법재판소는 WCO 사례연구 8.1 및 8.2의 접근방식을 지지하였음²⁵⁸⁾
 - 로열티는 생산지원비용으로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었으므로 더 이상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 규정의 해석에 따른 주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봄

- 결론적으로 로열티의 형식으로 지급되는 비용의 구분 문제는 기존 지침 및 법적 결론에서도 아직 명확한 해결이 없는 근본적인 관세평가의 문제임
 - EU의 서류, WCO 관세평가 위원회, 판례법에서도 일반적으로 사례를 처리하기 위한 결정적이거나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 따라서 UCC 제71조 간의 우선규칙 방식에 기초한 해석방식을 설정하거나 특별법 우선원칙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 그러나 해당 사례는 최종물품의 관세평가와 최종물품의 생산에 대한 투입물 즉 생산지원의 관세평가 간 역학관계가 있음을 보여줌
 - 사례에서 생산지원의 대가가 로열티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생산지원 그 자체로서의 생산지원과 로열티로서의 생산지원의 평가상 처리 중 선택해야 함

- UCC 제71조 제1항 (b)는 구매자가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공한 투입물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상황을 다루지만 투입물에 대한 대가의 유형은 언급하지 않음
 -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는 생산지원비용의 적절한 지급수단임

- 해당 사례에서 생산지원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하나 이상의 수단이 사용된 것이 적용되는 규칙의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함
 - 또한 생산지원의 성격이 적용 규칙의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함

- 해당 사례에서 서류를 검토했을 때 생산지원이 실제로 수입물품의 생산요소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가격은 UCC 제71조 제1항 (b)에 따라 결정됨

258) Case C-116/89, BayWa v Hauptzollamt Weiden, Judgment of the Court of 7 March 1991.

- D는 라이선스 계약이 적용되는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S에 로열티를 지급함

2)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

가)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의 범위²⁵⁹⁾

- 수입물품은 종종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로 명시되는 지급으로 보상되는 요소 즉 지식재산권과 결합됨
 - UCC 제71조는 이러한 지급이 물품 과세가격의 부분이라고 규정하며, 해당 지급이 이미 물품의 가격에 포함된 경우 그 금액은 자동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됨
 - 또한 제71조는 해당 요소의 가격이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물품가격의 조정으로 해당 지급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그러나 EU 관세규정은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도 평가규정에서 다루지 않으며 이는 관련된 상업적 계약에 따름
 - 예를 들어 수입물품의 생산 및 판매는 특허, 디자인, 모델, 제조 노하우, 상표를 다루며, 수입물품의 사용 또는 재판매는 저작권, 제조공정 등을 다룸
- 반면 소득 및 자본에 관한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에서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영화촬영 필름, 특허, 상표, 디자인, 모델, 계획, 비밀 공식 또는 가공을 포함한 문학·예술·과학적 저작물의 사용이나 사용권리 또는 관련 산업·상업·과학적 경험에 대한 정보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불을 말함
- 이러한 정의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가 다양한 무형의 권리에 대한 지급임을 나타냄

259) TAXUD(2021), pp. 30~31, 69~70.

- 이에 반해 UCC 체계는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구분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상표의 사용권은 더 이상 특정조항의 대상이 아니며 일반조항에 따름
- 또한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는 권리뿐 아니라 노하우에 대해 지급되기도 하며, 노하우에는 디자인, 레시피, 공식, 라이선스 물품의 사용에 대한 기본지침이 포함됨
- 이러한 노하우가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경우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는 관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UCC 제72조 (d), (g)에 따라 다음의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는 실제 지급했거나 해야 할 가격에 가산되지 않음
- EU에서 수입물품을 재생산하기 위한 권리에 대한 비용
- 수입물품의 유통 및 재판매 권리를 위해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해당 지급이 물품을 EU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조건이 아닌 경우

나) 수입물품과 관련된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²⁶⁰⁾

- 로열티가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 있는지 결정할 때 핵심 문제는 로열티가 어떻게 계산되느냐가 아니라 왜 지급되느냐임
- 즉 라이선스 사용자가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 지급의 대가로 실제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함
-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별도의 정식 서면계약 또는 합의에서 로열티와 라이선스료 지급과 관련된 약정이 설정되어 있음
- 라이선스 계약에는 라이선스 제품의 상세, 권리 및 노하우의 성격, 라이선스 제공자와 사용자의 책임,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의 산출 및 지급 방법, 미지급에 대한 법적 결과 등을 포함함

260) TAXUD(2021), p. 30~31, 70~72.

- 라이선스 계약의 검토를 통해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과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의 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수입물품이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인 경우 즉, 수입물품이 라이선스 제품인 경우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됨
 - 반면, 수입물품이 라이선스 제품의 성분 또는 구성요소인 경우, 수입물품으로 라이선스 제품을 생산 또는 제조하는 경우 과세가격 포함 여부는 검토가 필요함 - 로열티의 지급이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로열티는 수입물품의 전체 또는 부분만 관련되거나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음

- 그러나 일부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가 지급되는 서비스의 제공을 명시하기도 함
 - 라이선스 제품의 제조 또는 기계·플랜트의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사용자의 직원 교육과 같은 서비스 공급을 포함하기도 함
 - 또한 관리, 마케팅, 회계 등의 기술적 지원 역시 포함됨

- 따라서 판매계약의 조건과 판매계약 및 라이선스 계약 간의 관계 또한 고려해야 함
 - 라이선스 계약과 판매계약을 검토하면 로열티 지급의 일부만이 잠재적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판매계약에는 물품에 대한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음
 -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 과세요소와 비과세요소가 혼합된 경우 사용자가 비과세요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 전체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다) 수입물품의 판매조건²⁶¹⁾

-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의 지급이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로열티

261) TAXUD(2021), pp. 31, 72~73.

- 등의 지급 없이 물품을 판매자가 팔거나 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임
- 수입물품의 판매가 로열티 등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가 라이선스 계약에 규정될 수 있으나 반드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님
 - 즉 판매조건 여부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음
- 로열티는 물품의 구매자가 라이선스 권리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므로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다국적 그룹의 한 구성원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로열티를 다른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해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반면 제3자가 관련 권리의 소유자 또는 라이선스 제공자인 경우 로열티 지급이 판매조건이 아닐 수도 있으나 상업적 상황과 관련 계약약정을 검토해야 함
- 필요한 경우 판매 및 라이선스 계약과 관계, 기타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수입물품 및 판매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조사해야 함
- 또한 UCC IA 제136조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가 자동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가정을 나타내지는 않음
-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의 가산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가정하여 신고자가 반대의 증명을 하지 않는 한 로열티 등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지 않음

(1) 사례 1262)

-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라이선스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제조자 간 제조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제조자와 라이선스 제공자는 특수관계가 아님
 - 라이선스 계약은 사용자에게 제조계약에 대한 템플릿을 사용하거나 사용자만을

262) TAXUD(2021), pp. 74~75.

- 위해 라이선스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도록 제조자에게 지시하도록 요구함
- 이 경우 라이선스 제품은 제공자에 의해 고안되거나 개발되지 않음
 - 라이선스 제품은 오직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공급되므로 특정 영역 내에서 독점 상표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는 한편으로 상표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물품의 판매 후에 사용자로부터 제공자가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를 받도록 보장함
 - 라이선스 제공자는 제조자의 선택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제조자를 선택하고 제조계약을 체결함
 - 라이선스 계약과 제조계약 사이에는 라이선스 제품을 사용자를 위해서 생산한다는 조항 외에 관련이나 상호의존성이 없음
 - 이 경우 제조자가 공급한 물품에 대한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 지급을 보장받는 라이선스 제공자는 제조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에게 독점으로 공급할 의무를 설정함
 - 제조자는 제조계약에 따라 물품을 오직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판매하며, 사용자는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를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제공자에게 지급함
 - 라이선스 계약이 적용되는 물품은 오직 제공자가 지정한 사용자에게 판매될 수 있음
 - 따라서 라이선스 사용자는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를 지급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로열티 등이 지급된다고 볼 수 있음
 - 로열티 등은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2) 사례 2263)

- 상표·재산권의 소유자인 라이선스 제공자 및 사용자와 특수관계인 구매대리인은

라이선스 제품의 수입에 관여함

- 구매대리인은 구매자·라이선스 사용자를 위해 적절한 생산자·판매자를 선택하고 일반적인 구매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구매대리인은 판매량 제한 부과, 판매가격 규정 등을 통해 생산 및 판매에 개입할 수 있음

- 상표권·재산권의 소유자인 라이선스 제공자는 생산자·판매자가 라이선스 물품을 오직 구매자·라이선스 사용자에게 판매하도록 함
 - 생산자·판매자는 다른 당사자와 특수관계가 아니며, 제공자가 지정한 사용자는 물품에 대한 로열티를 제공자에게 지급함

- 구매대리인이 판매자가 물품을 오직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판매하도록 보장하고, 제공자는 물품의 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음
 - 이러한 상황은 사례 1의 상황과 원칙적으로 동일함

- 따라서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는 판매조건에 따라 지급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적절함
 -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는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3) 사례 3264)

- 구매자는 생산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디자인 및 제조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함
 - 이러한 서비스가 없으면 생산자·판매자는 수입물품을 생산·공급하지 못함

- 무료 서비스는 생산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라이선스 제공자가 사용자·구매자에게

264) TAXUD(2021), pp. 75~76.

제공한 것이며 사용자는 제공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함

- 로열티는 사용자·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을 생산하여 배송하기 위한 요건이며, 구매자는 수입물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얻기 위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함
- 먼저 수입물품의 제조를 위해 생산자·판매자가 무료로 제공받는 생산요소는 생산 지원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함
 - 이 경우 해당 생산요소의 사용 여부가 로열티의 지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UCC 제71조 제1항 (b)에 따라 조정이 되어야 함
- 또한 라이선스 계약이 구매자에게 평가대상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다른 지식재산권의 형태를 사용하기 위해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한다면 해당 지급은 UCC 제71조 제1항 (c)가 적용됨
 -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조건으로 로열티가 지급된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도록 가산 조정되어야 함

라) 가산되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의 계산²⁶⁵⁾

- 일반적으로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의 지급은 단일 일시금 또는 초기 일시금에 이어 월별, 분기별, 연간 등 반복 분할형태로 이루어짐
 - 대부분 분할 지급은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 수익금의 백분율로 계산되므로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는 평가대상 물품이 수입된 후에 확정됨
- 따라서 평가대상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수입자와 세관 간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의 가산 조정을 위한 합의가 필요함
 - 일반적인 조정은 일정 기간의 지급결과를 기초로 결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방법이 사용됨

265) TAXUD(2021), pp. 30~32.

- 한편 지급된 로열티의 일부만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수입자와 세관이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총지급액 중 과세요소와 비과세요소로 할당하는 근거는 라이선스 계약에 규정되어 있기도 함
 - 예를 들어 총로열티 7%는 특허권에 대해 3%, 마케팅 노하우 2%, 상표권 사용 2%로 구성됨을 명시하고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할당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권리와 노하우의 가격은 노하우의 이전·사용 범위를 평가하고 이를 총로열티에서 공제하여 산출할 수 있음

- 또한 수입자와 세관의 요청으로 라이선스 제공자가 자신의 계산에 기초하여 적절한 할당을 표시할 수도 있음
 - 뿐만 아니라 할당의 근거가 라이선스 계약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할당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라이선스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의 서신
 - 라이선스 계약이 작성되기 전 협상 보고서
 - 라이선스 계약 협상자 중 한 사람과의 논의사항

- 마) 역외가공절차와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²⁶⁶⁾

- EU의 Y사는 상표권 소유자인 EU의 X사의 상표가 부착된 장갑을 수입하여 유통하며, 장갑은 EU 밖에 위치한 Z사에서 생산됨
 - X는 생산되는 장갑의 모델과 재료를 결정하고, Y는 장갑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특정 섬유를 X에 구매함

- X와 Y는 Y가 X에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라이선스료로 X의 상표가 부착된 장갑

266) TAXUD(2021), pp. 90~94.

의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 Y는 장갑이 EU 내에서 또는 밖에서 생산됐는지에 관계없이 라이선스료를 지급함
- 라이선스 계약에는 라이선스 제공자 X가 제조사 Z를 통제할 가능성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음
 -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Y가 수행해야 하는 모든 활동에서 Y에 자문하는 감독관을 통해 생산활동을 감독하고 통제함
 - 라이선스 사용자 Y는 라이선스 계약 종료 조항에 따라 X가 요청한 시정조치를 모두 따라야 하며, 라이선스료 미지급은 계약 종료의 사유가 됨
- 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Y는 장갑의 제조에 투입되는 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X에 알려야 함
 - 또한 장갑의 생산은 섬유와 상표권의 사용과 관련한 X의 지시를 따라야 함
- Y는 제3국의 Z와 생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Y는 장갑의 생산에 사용될 섬유를 Z에 무료로 제공함
 - 생산계약은 라이선스 계약이 중단되는 경우 모든 생산활동과 상표의 사용이 중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X가 제공한 섬유를 기초로 하는 라이선스 장갑은 역외가공절차 승인에 따라 EU 밖에서 생산된 후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됨
 - 제조사 Z는 X의 상표가 부착된 장갑의 생산에 대해 Y에 대가를 지급받으며, 송장금액은 Z가 수행한 가공의 비용을 반영함
- 이 경우 Y가 X에 지급한 라이선스료가 라이선스 장갑의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의 문제가 발생함
 - 역외가공절차의 결과 가공된 물품의 수입 관세액은 EU 관세영역 밖에서 수행된 가공공정의 비용을 기초로 계산됨

- EU 관세영역 밖에서 수행된 가공공정의 비용은 수입신고 수리 당시 가공물품의 과세가격과 역외가공절차에 따라 수출되는 물품 가치의 차액임

- 사법재판소는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관세규정에 따라 거래가격방법이 우선적용되며, 해당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판매는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힘²⁶⁷⁾
 - 재판소는 판매계약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가공계약에 판단되는 계약에 근거하여 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함
 - 즉 판매여부의 결정은 수출한 물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역외가공절차의 사용 여부와 무관함

- 우선 구매자가 물품을 제3국의 생산자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구매자가 가공작업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 적절한 조정을 통해 거래가격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
 - UCC 제71조 제1항 (b) (i)의 수입물품에 결합한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유사물품의 가격이 조정되어야 하며, 이는 UCC IA 제135조에 따라 산출됨
 - 해당 사례에서 수입자 Y는 제조자 Z에 섬유를 무료로 제공하고 Y는 X에게 섬유를 구매하므로 섬유의 가격은 Y가 X에 지급하는 가격임

- 검토가 필요한 문제는 Y가 X에 지급하는 라이선스료가 UCC 제71조 제1항 (c)에 따라 가공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임
 - 해당 사례에서 Y는 장갑의 제조자가 아닌 제3자인 라이선스 제공자 X에 라이선스료를 지급함

- 생산계약의 조건에 따르면 라이선스 장갑의 생산은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면 중단되며,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료 미지급 시 중단될 수 있음
 - 또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제공자는 표준품질관리를 넘어서는 장갑생산관리를 하고 있음

267) Case C-116/12, Ioannis Christodoulou and Others v Elliniko Dimosio, Judgment of the Court of 12 December 2013.

-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UCC IA 제136조에 규정된 라이선스료가 수입물품의 관세 가격에 포함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라이선스료는 라이선스 장갑 판매의 순 매출에 따라 달라지고, 장갑생산이 EU 또는 제3국에서 수행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됨
 - 또한 X가 EU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과세가격과 관련한 라이선스료의 처리와는 상관없는 요소임

- 따라서 가공품에 대한 관세 가격은 거래가격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상표 사용권에 대해 Y가 X에 지급한 라이선스료는 가산조정됨
 - X의 상표가 부착된 장갑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과세가격은 다음 요소로 구성됨
 - Z가 Y에 발급한 송장을 반영한 비용인 EU 영역 밖에서 수행된 가공공정의 비용
 - 라이선스 장갑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Y가 X에 지급한 섬유의 구매비용
 -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된 장소까지의 운송비용 및 보험료, 적재·하역·취급비용 등 운송관련 비용
 - 다만 역외가공절차에 따른 가공물품의 수입 관세액은 이러한 과세가격에서 수출된 물품의 가격을 공제하여 산출됨

3) 운송비 및 보험료, 운송 관련 비용

가) 항공운송비의 배분²⁶⁸⁾

- 구매자는 원산지인 콜롬비아의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항공편을 이용하여 EU로 운송하는데, 항공 여정은 2개의 구간으로 나뉨
 - 물품은 보고타에서 마이애미로 운송된 후 마이애미에서 다른 항공편을 통하여 EU까지 나머지 구간이 운송되며 구간별로 별도의 항공운송장이 발급됨

268) TAXUD(2021), p. 46.

- 이 경우 UCC IA 부속서 23-01²⁶⁹⁾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항공운임을 결정하는 때에 여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배분비율을 적용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됨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선택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① 첫 번째 구간은 전체 항공운임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며, 두 번째 구간의 항공운임은 출발지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함
 - ② 항공운임은 보고타에서 출발하는 것을 기준으로 백분율을 적용하여 전체 항공운임을 배분해야 함

- 해당 사례에서 운임배분은 운송이 마이애미에서 중단된 것을 기준으로 마이애미에서 EU로 운송되는 항공운임에 적용되어야 함
 - 항공편이 다르고, 별도의 항공운송장이 발급되었으므로 보고타에서 마이애미로의 운송은 마이애미에서 EU로의 운송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님

- 이러한 검토 결과는 다른 사례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사례별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 만약 마이애미에서 운송수단이 항공에서 해상으로 변경되었다면 해상운임 전체가 관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만약 운송의 중단이 물류상의 이유로 발생하고 하나의 항공운송장이 발급된 경우 총운송비용에 대해 최초 출발지에 따른 비율이 적용되어 과세가격에 포함됨
 - 이 경우 물류상의 이유로 운송이 중단되었고, 여정이 단일 운송작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세관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해야 함
 - 입증이 가능한 경우 전체 운송작업을 UCC IA 부속서 23-01에 따라 배분할 수 있음

269) UCC IA 부속서 23-01은 물품이 출발하는 제3국을 지역 또는 대륙별로 구분하여 항공운임 중 과세가격에 포함될 금액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있음

나) 운송조건의 변경²⁷⁰⁾

- 의류의 수입자이자 소매상인 A는 드레스를 극동의 의류 생산자이자 공급자인 B에게 해상운송조건인 CIF 또는 FOB로 주문함
 - 판매계약에 따르면 B는 합의한 배송기한에 맞추기 위해 다른 운송수단으로 늦게 선적되는 물품에 대해 추가비용을 부담함

- 물품이 항공으로 늦게 선적되는 경우 대리인은 CIF 가격에 추가 운송비용을 가산하지 않거나 FOB가격에 일반적인 해상운송비용을 더하여 수입신고함
 - 실제 B가 부담하는 높은 항공운임은 EU에 반입되는 때에 노출되지 않음

- 해당 사례의 경우 CIF가격 또는 FOB가격을 기초로 신고된 과세가격은 실제 운송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함
 - UCC 제71조 제1항 (e)에 따르면 EU로 반입되는 지점까지의 모든 운송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며,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 항공운임을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 UCC IA 부속서 23-01에 따라 항공운임이 분배될 수 있음

- 물품에 대해 CIF 또는 FOB 조건의 송장이 청구된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는 송장 가격은 물품이 해상 대신 항공운송 되는 경우도 동일하다는 것을 합의해야 함
 - 이 경우 동일한 가격으로 새로운 운송조건인 CIP가 확정되며, 과세가격은 CIP 가격을 기초로 결정됨

- 만약 A가 CIF조건으로 물품을 4만유로에 구매하고, 해상운송운임 1천유로가 CIF 가격에 포함된 경우 물품의 가격은 3만 9천유로임
 - B가 배송기한을 지킬 수 없어 물품을 항공으로 선적한 경우 운송조건은 자동으로 CIP로 변경되고 구매자는 동일하게 4만유로를 지급함

270) TAXUD(2021), pp. 50~51.

- 이 경우 항공운임 2천유로로 인하여 물품 가격은 3만 8천유로로 간주되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UCC IA 부속서 23-01에 따라 운임 중 1,400유로가 가산됨
 - UCC IA 부속서 23-01은 운임 중 EU 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별도로 계산하여 공제할 필요를 없애기 위해 운송비용계산을 단순화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중국에서 출발한 물품의 항공운임은 70%만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30%는 EU 내에서의 운송비용으로 간주하여 과세비용에서 공제함

- 한편 물품에 대해 FOB조건으로 4만유로가 청구된 경우 해상운임 1천유로는 A가 부담함
 - B가 배송기한을 지킬 수 없어 물품을 항공으로 선적한 경우 운송조건은 자동으로 CIP로 변경되고 구매자는 동일하게 4만유로를 지급함

- 새로운 운송조건에 따라 운송비용은 4만유로에 포함되며, 공운임 2천유로로 인하여 물품 가격은 3만 8천유로로 간주됨
 - 따라서 해당 경우 역시 UCC IA 부속서 23-01에 따라 운임 중 1,400유로가 가산되어 과세가격은 3만 8,400유로가 됨

다) 비상업적 물품의 운송비용²⁷¹⁾

- 개인이 약기를 제3국에서 구매하여 항공운송으로 EU에 반입하면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되므로 운송비용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함
 - 관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EU의 운송비용 규정은 상업적 성격의 운영과 비상업적 성격의 운영을 구분하지 않음

- 물품이 비상업적으로 수입된다 하더라도 항공운송비용은 UCC IA 부속서 23-01의 규정과 비율에 따라 결정됨
 - 결정된 항공운송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271) TAXUD(2021), p. 102, 107.

- 또 다른 사례로 Y는 견본을 항공으로 운송하여 EU로 수입하며, Y는 견본을 FOB 단가 5U.A.로 구매하고, EU의 반입 장소까지의 운송비용은 견본당 50U.A.임
 - Y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세관에 실제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대신 해상운임에 대한 이론적인 비용을 고려하도록 요청함

- 그러나 UCC 제71조 제1항 (e)에서는 개념적인 운송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인 5U.A.에 견본에 대해 실제 발생한 운송비용인 50U.A.를 가산하여 결정해야 함

라) 운임징수수료²⁷²⁾

- EU의 Y사는 제3국의 X사로부터 FOB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은 요금후불 화물로 EU까지 항공을 이용하여 운송됨
 - Y는 판매송장의 근거서류로 수출국의 통화로 표시된 항공운임이 기재된 항공운송장을 세관에 제출함

- 운송비용을 징수하는 항공사는 항공운임을 수입국의 통화로 변환하고 수하인으로 부터 요금징수를 위해 항공운임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함
 - 수수료 5%는 운송관련 비용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이 경우 항공운임의 5%는 항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이므로 UCC 제71조 제1항 (e)에서 규정한 운송관련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를 가산하지 않음

272) TAXUD(2021), p. 103.

마) 체선료²⁷³⁾

- EU의 수입자 Y는 EU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수출국에서의 적재와 수입국에서의 하역이 모두 늦어져서 체선료를 부담하였음
 - 이 경우 체선료는 발생한 장소와 상관없이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체선료는 운송수단의 사용과 관련하여 운송회사에 지급해야 하므로 UCC 제71조 제1항 (e)에 따라 운송비용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함
 - 그러나 해당 조항의 적용은 물품의 EU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으로 제한됨
- 반면 EU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장소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하는 운송비용은 UCC 제72조 (a)에 따라서 과세가격에서 공제됨
 - 따라서 수입국에서 발생한 지연과 관련된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바) 컨테이너 중량측정 비용²⁷⁴⁾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보안규정으로 인해 모든 컨테이너는 수출항에서 중량을 측정해야 선적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송하인은 운송서류에 총중량을 기재하여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선장은 운송서류에 기재된 총중량을 확인할 책임이 있음
- 중량측정에 관한 의무는 추가비용을 발생시키며 이는 수출자가 부담하거나 수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또는 운송조건에 따라 수입자가 직접 부담하기도 함
 -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을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시킬지 검토해야 함

273) TAXUD(2021), p. 114.

274) TAXUD(2021), pp. 147~148.

- 해당 사례에서 컨테이너 중량측정은 운송과 관련되거나 운송의 조건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UCC 제71조 제1항의 (e)에 따라 검토해야 하지만 EU의 규정은 적재 또는 취급비용의 정의를 제공하지 않음

- 사법재판소에 따르면 운송비용은 EU의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요비용이든 부수비용이든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²⁷⁵⁾
 -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해당 사례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음

- 실제로 계량 의무와 관련 비용은 운송작업의 필수단계를 구성하며, 컨테이너의 중량을 측정하지 않으면 운송작업을 수행할 수 없음
 - 따라서 물품의 선적과 관련하여 선박에 선적된 컨테이너의 중량을 측정하는 작업에 대한 비용은 운송비용으로 간주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사) 보관 비용²⁷⁶⁾

- 이미 판매된 물품이 통관되기 전의 기간 동안 보관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임
 - 물품이 적재되기 전에 보관되기도 하는데,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적재를 위한 처리를 거쳐야 하기 때문임

- 가장 일반적인 관행은 선적 전에 선적처리를 기다리는 터미널에서 임시보관되는 것임
 - 해당 기간 동안 반액체물품의 가열 및 펌핑에 의한 유동화와 같이 적재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처리를 거칠 수 있음

275) Case C-11/89, Unifert Handels GmbH v Hauptzollamt Münster, Judgment of the Court of 6 June 1990.

276) TAXUD(2021), pp. 149~150.

- 이 경우 수출국 또는 제3국 항구에서 물품이 중간보관되는 비용이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수입물품의 가격에 이미 포함된 중관보관 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보관 및 취급에 대한 비용의 과세상 처리방법을 검토해야 함

- WCO 관세평가 기술위원회 예해 7.1277)은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보관비용은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림
 - 해당 비용은 「WTO 관세평가 협정」 제8조 제2항 (b)에 해당되므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조정됨

- 그러나 어떤 경우는 물품의 보관이 운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운송과의 관련 여부를 구분하는 법적·관습적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

- 관습적인 임계시간을 기준으로 직접 운송과 관련된 보관으로 간주되는 기간과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보관을 구분할 수 있음
 - 임계시간을 초과하는 보관의 경우 보관이 운송과 관련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보관의 이유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가 필요함

-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접근방식에도 법적근거가 필요하며, 정해진 기간으로 임계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물품의 성격, 필요한 사전 처리 등으로 인해 정상적 보관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또 다른 접근방법은 중간보관이 물품운송에 특정한 기능을 하고, 필수 불가결한지 여부를 결정함

277) 부록 3 참조

- 물품이 특정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은 운송과 직접 관련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라. 공제요소

1) 공제요건²⁷⁸⁾

- 공제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이고 수량화 가능한 자료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제요소의 비용이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고 물품의 가격과 구분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신고서의 항목에 기재하는 것뿐 아니라 공제요소의 성격과 금액을 입증해야 함
- 계약서, 송장, 운송장과 같은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된 상업문서는 공제요소의 성격과 금액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 이자비용의 경우 서면금융약정과 같은 서류가 공제비용으로 신고 된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함
 - 만약 상업서류가 없는 경우 운송비용은 운송수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운임표에 따른 금액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신고인은 참조한 운임표를 제출해야 함
- 세관은 공제신고 된 성격 및 금액이 허위가 아님을 확인하는 권한이 있으며, 특히 공제가 구매자, 판매자, 신고자가 작성한 진술에 기초한 경우 확인이 필요함
 - 신고자는 신고수리 시 증빙서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야 함
 - 신고수리 시 서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입수하여 세관에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할 수 있음

278) TAXUD(2021), pp. 35~36.

2) EU 관세영역 반입 후 운송비용²⁷⁹⁾

- 물품이 EU 관세영역 내의 도착지까지의 운송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송장, 기타 상업서류에서 EU 내의 운송비용을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이때 신고자는 EU 내의 운송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과세가격과 해당 비용을 신고서의 항목에 기재하여 신고하기도 함

- 그러나 신고서에 EU 내의 운송비용을 신고하는 것은 이러한 비용이 구분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하지 않음
 - 이러한 경우 공제될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허용될 수 있음

- 물품이 단일운송서류에 따라 다른 운송수단을 통해 EU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된 장소를 지나 도착지까지 운송된 경우 총운송비용을 안분할 수 있음
 - EU의 관세영역 외부 및 내부에 해당하는 거리에 비례하여 총운송비용을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총운송비용을 알 수 없거나 다른 이유로 할당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실제 비용이 공제될 수 있음
 - 실제 지급했거나 해야 할 가격에 EU 관세영역에 반입된 후의 운송에 따른 실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될 수 있음

- 실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통상적인 비용이 공제될 수 있음
 - 이 경우 공제비용은 운송인의 국가에서 동일한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정상 운임 유효표에 따른 금액보다 크지 않은 것이 합리적임
 - 또한 EU의 최소 운임유효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279) TAXUD(2021), pp. 36~37.

3) 수입 후 수행되는 작업²⁸⁰⁾

- 제3국의 X는 슬라이드 필름을 EU의 Y에게 판매하고, 물품이 자유유통을 위해 반입되는 때 Y는 두 개의 송장을 세관에 제출함
 - 송장 하나는 필름가격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필름 현상 및 구성비용을 나타냄

- 두 개의 송장가격은 모두 X에게 지급되지만 현상 및 구성작업은 최종 구매자가 필름을 노출한 경우에만 수행됨
 - 현상 및 구성작업은 X와의 계약에 따라 Z가 수행하며, 자유유통을 위한 반입 시 해당 작업이 어느 국가에서 수행될지는 알 수 없음
 - 현상 및 구성작업은 Z의 개발부서 중 최종 구매자가 필름을 송부하도록 선택한 곳에서 수행됨

- 해당 현상 및 구성작업의 비용은 UCC 제72조 (b)의 수입 후 수행되는 건설, 설치, 조립, 유지보수 또는 기술지원에 해당하므로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됨
 - 따라서 과세가격은 현상 및 구성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노출되지 않은 필름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됨

4) 구매수수료²⁸¹⁾

- EU의 구매자 Y는 극동의 여러 제조자·공급자로부터 다양한 물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구매대리인 X의 서비스를 사용함
 - X는 극동지역의 시장 검색, 조사 및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서비스의 대가로 X는 구매자로부터 구매수수료를 지급받음

- 구매수수료의 금액과 지급방법 및 대리인의 책임은 Y와 X 간에 체결된 대리인 계

280) TAXUD(2021), p. 99.

281) TAXUD(2021), pp. 109~110.

약에 명시되어 있음

- 계약에 따르면 X는 물품의 상세, 가격, 배송 마감일 및 배송조건을 명시한 주문을 받으며, 구매자는 종종 특정 제조자·공급자를 지정할 수 있음
 - X는 때때로 자신의 이름으로 제조자·공급자에게 주문을 전달하고, Y에게 주문 확인을 보내며, 경우에 따라 제조자·공급자의 확인도장을 전달함
 - 원칙적으로 물품은 제조자·공급자가 수출국의 항구로 발송하고, 여기에서 관련 문서는 대리인 X에게 전달됨
 - X는 Y에게 물품에 대해 제조자·공급자에게 지급한 가격과 합의된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청구함
- 물품의 자유유통을 위해 신고하는 때에 구매자 Y는 관세평가를 위해 물품의 가격을 신고하고 X가 발행한 송장을 제시함
- 구매자 Y가 대리인 X에게 구매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 과세가격의 일부로 신고하지 않음
- 구매자 Y는 세관당국의 요구 시 과세가격신고가 정당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용의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음
- 대리인 계약서, 주문양식, 주문확인, Y와 X 간의 서신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제조자·공급자와 X 간의 송장 및 서신을 준비할 수도 있음
- 제조자·공급자에게 지급된 가격이 UCC 제70조에 따른 거래가격의 기초가 되는 경우 구매수수료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세관은 제조자가 발행한 송장을 확인 가능한 경우 구매수수료를 제외하고 X가 발행한 송장을 수락할 수 있음

5) 수입관세 및 EU에서 발생한 기타요금²⁸²⁾

- 수입국의 관세 및 세금은 그 성질로 인해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지만 실제 지급했거나 해야 할 가격과 구분이 가능해야 함
 - WCO 관세평가 기술위원회의 권고의견 3.1283)에서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 표시의 분리개념이 제시됨

- 이러한 비용이 송장에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더라도 송장 또는 다른 첨부 서류의 실제지급가격에 해당 비용이 포함된다는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함
 - 또한 과세가격에서 공제될 금액이 신고서에 명시되어야 함

- 제3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X는 2020년부터 EU로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초과 CO₂ 배출에 대한 배출할증료를 적용받으며, EU의 Y가 자동차를 수입함
 - X는 EU로 수입되는 각 자동차에 대해 Y에게 발급하는 송장에 초과배출 할증료를 포함시킬 예정임
 - 2020년에 부과해야 할 할증료는 2021년에 확정되므로 할증료 금액은 추정에 따라 송장에 포함됨

- 집행위원회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CO₂ 배출량 감축과 목표 충족을 감시·확인·검증함
 - 감축량은 전년도에 연간 자동차 등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회원국이 자료를 제공하고, 제조업체는 자료를 확인하고 오류를 통지할 수 있음

- 전년도에 제조업체의 평균 CO₂ 배출량이 감축 목표를 초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위원회는 초과배출 할증료를 제조업체에 부과함
 - 할증료의 징수는 세관당국이 아닌 위원회가 이행하며 이 금액은 EU의 일반예산 수입으로 간주됨

282) TAXUD(2021), pp. 36, 154~156.

283) 부록 1 참조

- 초과배출 할증료의 납부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으며, 제조업체가 EU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경우 회원국에 기반을 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음
 - 대리인은 할증료 납부뿐 아니라 모든 승인과 관련한 책임을 지게 됨

- 초과배출 할증료는 제조업체의 전년도 총등록차량에 대하여 일시불로 지급되며, 개별차량과 직접 관련이 없음
 - 할증료는 초과배출량 및 전년도에 EU, 아이슬란드 및 노르웨이에 등록된 자동차 수를 기초로 결정됨
 - 또한 EU에서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되는 때 또는 등록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

- 이러한 초과배출 할증료가 물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이유로 EU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타요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함
 - 거래가격방법에 근거하여 할증료가 관세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초과배출 할증료는 경량 차량 또는 밴에서 배출되는 CO₂의 감축이라는 EU 정책의 결과이며, 이는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목적은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의 목적 즉, 공동 관세율 및 비관세조치의 적용을 위한 공정하고 단일하며 중립적인 관세평가 시스템을 설립하는 것과 다른 것

- 또한 초과배출 할증료는 수입물품의 특정 판매와는 관련이 없음
 - 초과배출 할증료는 EU에 새 자동차가 등록됨에 따라 발생하며, EU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또는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과는 관련이 없음

- 따라서 초과배출 할증료는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조정 되는 요소인 수입 또는 판매를 이유로 부과되는 기타 요금에 해당되지 않음

- 초과배출 할증료가 이미 수입 자동차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음
- 다만 할증료가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고 물품가격과 별도로 표시되는 경우 수입 자동차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음

2. 거래가격 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가. 역산가격(공제가격)

1) 역산가격의 우선순위²⁸⁴⁾

-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은 X의 위탁으로 EU에 수입되었으며, 자유유통을 위한 반입 당시 판매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 또한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도 없음
- X는 관세평가를 해야 하는 때에 역산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활용하기를 원한다고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과세가격의 확정이 연기됨
 - 물품은 수입 후 1주일 내에 판매되었으며, 판매 후 과세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과세가격이 신고 됨
- X는 물품이 수입된 후 EU에서 판매된 유사물품의 단가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함
 - 이 경우 역산가격을 적용하기 위한 판매단가를 수입물품이 판매되는 단가와 유사물품이 판매되는 단가 중 선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함

284) TAXUD(2021), p. 113.

- 관세평가 시스템의 계층적인 특성을 감안하면 역산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 평가대상 물품의 단가는 동일·유사물품의 단가보다 우선함
- 평가대상 물품이 EU에서 수입 당시 또는 그 무렵에 판매되는 단가와 동일·유사 물품의 이러한 판매단가를 아는 경우 평가대상 물품의 판매단가가 적용됨

2)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²⁸⁵⁾

- 제3국의 X사는 플라스틱 문구를 특수관계가 아닌 EU의 구매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회원국에 B 지사를 두고 있음
 - B는 별도의 법인은 아니지만 자체 예산이 있고, 별도의 계정을 유지하며 자체 마케팅 및 영업 인력으로 비즈니스 개발을 담당하는 등 별도의 회사처럼 거래함
 - 또한 물품을 구매하지는 않지만 X로부터 물품을 받으면 자유유통을 위해 반입하고, 구내에 보관함
- 이 경우 X와 B 간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사용할 수 없음
 - 또한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정보도 없음
- 따라서 역산방법에 따라 결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때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공제해야 함
 - B가 X를 위해 EU에서 물품을 판매하므로 해당 판매와 관련하여 B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공제할 수 있음
 -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란 동종·동류물품의 EU 내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형태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285) TAXUD(2021), p. 112.

3) EU 내에서 발생한 운송비²⁸⁶⁾

- 제3국의 X는 부패하기 쉬운 물품을 총운송비 1만 1천U.A.로 EU의 Y에게 위탁하여 배송하며, 물품은 특수관계가 아닌 구매자에게 1만 5천U.A.에 경매됨
 - 해당 운송비의 일부는 EU의 관세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운송 및 보험의 통상적인 비용 및 관련비용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안분이 필요함
 - EU 내의 운송거리는 총운송거리의 5%에 해당하지만 신고자가 제출한 운임노트에는 총운송비의 80%가 귀속됨

- 이 경우 관세평가를 위한 시점에 X와 Y 간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사용할 수 없음
 - 또한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정보도 없음

- 따라서 역산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물품가격 1만 5천U.A.에서 EU 내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운송 및 보험비용을 공제해야 함
 - 그러나 가상의 비현실적인 운송비 할당에 대한 운임노트의 표시는 고려되지 않으며, 1만 1천U.A.의 5%가 EU 내의 운송비용으로 공제됨

나. 대체방법(Fallback)

1) 전리품의 과세가격 결정²⁸⁷⁾

- 동물을 직접 사냥한 사냥꾼이 전리품을 EU의 관세영역으로 반입하여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함
 - 사냥은 이러한 종류의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패키지를 사냥꾼에게 제공하는 전문 사냥농장에서 기획함

286) TAXUD(2021), p. 104.

287) TAXUD(2021), pp. 77~81.

- 사냥에 참여하기 위한 표준 패키지에는 숙박, 식사, 전문 사냥꾼의 서비스, 전리품의 제공 및 운송이 포함될 수 있음
 - 사냥꾼들은 EU로 송부되기 전 보안시설로의 운송뿐 아니라 박제작업, 전리품 포장, 메달리온·나무상자의 비용을 부담함

- 사냥 서비스 패키지의 가격에는 사냥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 수출입 국가의 라이선스 및 허가 수수료도 포함될 수 있음
 - 사냥 전리품의 수출입은 수출입 국가의 법률에서 규정한 인증서·허가를 취득한 후에 가능하며, 관련 당국은 일반적으로 해당 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함

- 사냥 전리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대체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비용을 검토해야 함
 - 사냥 전리품은 판매되지 않으므로 거래가격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물품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 사냥꾼은 사냥하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사냥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수수료를 납부함
 - 따라서 사냥허가 수수료와 사냥 전리품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해야 함

- 사냥꾼은 야생의 전리품을 간직할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리품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전리품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음
 - 전리품 수수료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사냥업체마다 동물의 수와 종에 따라 다름
 - 동물을 사냥하거나 상처 입힐 때 전리품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수수료와 EU의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전리품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음
 - 수입자인 사냥꾼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전리품을 소유할 수 없음

- 전리품의 국경 간 이동은 수출국과 EU의 관련당국이 발급한 수출입 허가 및 CITES 인증서에 따라 달라짐
 - 이러한 문서는 발효 중인 규정에 따른 전리품의 국제무역과 관련된 법적 요구조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발급되어야 함
 -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공동관세 및 비관세조치의 적용을 위한 물품의 공정하고 균일하며 중립적인 관세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의 목적과 다름

- 세관당국이 진실성과 정확성에 만족하는 경우 사냥업체에서 제공하는 사냥 패키지 제안 정보를 기반으로 전리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사냥업체는 잠재적인 고객을 위해 사냥 패키지에 대한 일반적인 제안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리품의 취득과 직접 연관되고 EU의 관세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과세가격 결정에 고려되어야 함
 - 이러한 비용에는 전리품 수수료, 현장준비 비용, 포장 및 박제비용, 메달리온 및 나무기반 비용, 전리품이 EU 관세영역으로 출발하기 전 보안시설까지의 운송비용이 포함됨
 - 또한 물품을 EU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장소까지의 운송 및 보험비용, 적재 및 취급비용 또한 반영되어야 함
 - 그러나 사냥꾼의 숙박, 식사, 여행과 같은 기타 비용은 과세가격에 반영되지 않아야 함

2) 폐기물의 과세가격 결정

가) 일반사항²⁸⁸⁾

288) TAXUD(2021), pp. 82~85.

- 일반적으로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은 ① 회수 가능한 물질을 포함하는 폐기물, ② 추가 처리될 폐기물, ③ 파기·중화될 폐기물로 구분됨
 - 폐기물의 수입은 UCC 및 UCC IA에서 명시하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됨

- 폐기물은 물품매매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UCC 제70조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래가격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회수 가능한 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인 고철은 물품판매계약에 따라 EU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고 철강생산에 사용될 수 있음
 - 또한 금속을 추출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EU에 수입된 폐촉매와 같이 EU 관세영역에서 추가 처리되거나 재활성화 되는 폐기물도 거래가격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

- 그러나 파기·중화되기 위해 EU의 영역으로 수입된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파기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입자에게 지급하므로 수출용 판매대상이 아님
 - 따라서 해당 폐기물의 과세가격은 이차적인 방법 중 하나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차적인 방법은 순차적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함

- 폐기물은 물품의 특성으로 인해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 대체방법이 자주 이용됨
 - 우선 동일·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은 구성의 다양성, 회수 불가능한 요소의 혼합 등과 같은 폐기물의 특성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이러한 폐기물의 특성으로 인해 역산가격방법 또한 적용에 제한을 받음
 - 다만 폐기물을 처리한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 판매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첫 번째 상업수준으로 판매되는 가공물품의 판매단가는 과세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폐기물은 생산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산정가격방법이 과세가격 결정에

사용될 수 없음

- 관세 과세가격은 대체방법에 따라 EU의 관세영역에서 사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일반원칙과 조항으로 구성된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음
 - 일반원칙과 조항은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GATT 협정」, UCC 제3장의 원칙과 조항을 말함
 - 따라서 대체방법으로 ① 상위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유연한 적용, ② 기타 적절한 방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됨

- 물품이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어 파기·중화되는 경우 폐기물의 과세가격은 대체방법에 따라 상징적 가치를 기반으로 결정될 수 있음
 - 수출자는 폐기물을 파기하기 위한 비용을 수입자에게 지급하고, 폐기물로 발생하는 2차의 가치 있는 물품이 없으며, 수출입은 수입자의 서비스로 수행됨

- 또한 폐기물을 처리하여 얻은 물품이 폐기물에 대한 역산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대체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
 - 사용된 촉매에서 추출한 금속의 경우 EU 관세영역에서 인정된 상품교환시장에서 평가된 가격은 대체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상품교환시장은 거래자가 금속을 판매 및 구매하는 거래 플랫폼임
 - 상품교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은 정해진 시기의 물품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EU 관세영역 내의 위탁장소까지 발생한 운송비 및 보험료, 적재 및 취급비용은 이차적인 관세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규정대로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CIF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는 경우 운송비 및 보험료의 처리는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상관없이 과세가격과 관련이 있음

나) 사례²⁸⁹⁾

- EU의 X사는 Z사의 제3국 고객에게 EU 관세영역에서의 자유무역절차에 따른 보관 및 환적을 이행함으로써 비료와 관련된 운송주선 서비스를 제공함
 - 비료는 철도로 자유무역지대로 운송되며, X는 물품을 선박으로 환적하고 Z의 고객인 제3국의 최종 수령인에게 추가로 운송됨
 - X는 Z와 제3국 고객 간의 계약에 관여하지 않으며, 환적 된 비료에 대한 소유권은 Z에 남아 있음

- 운송 중 땅에 떨어진 석탄, 톱밥 및 흙과 혼합된 여러 가지 비료폐기물은 X가 자유무역지대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부산물임
 - X와 Z 간의 합의조건 내에서 비료폐기물은 X의 재량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
 - 비료폐기물이 자유무역지대에 반입된 원래 비료의 조건과 기준을 만족하지는 않지만 비료의 주요 특성을 유지하고 농업에 사용될 수 있음

- X는 비료폐기물의 EU 관세영역 내의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에 대한 신고를 하고 통관이 완료되면 EU의 자회사 Y에 물품을 판매함
 - 물품을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할 때 신고 된 가격인 톤당 16.30유로는 X가 자체로 계산한 결과임
 - X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가격은 비료의 운송 및 수집과 관련된 직접비용, 관리와 관련된 간접비용, 이윤을 반영한 금액임

- Y는 비료폐기물을 구입한 후 분류, 보관, 포장, 가공하지 않고 자체 차량을 이용하여 즉시 자유무역지대에서 반출한 후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 및 인도함
 - 세관은 X에 대한 사후심사를 수행한 결과 Y가 설정한 비료폐기물의 재판매가격이 X로부터 취득한 금액보다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함

289) TAXUD(2021), pp. 86~89.

- 또한 세관당국은 비료폐기물이 EU의 관세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대상이 아님을 발견함
 - 수입물품은 자유유통을 위해 판매된 직후에 특수관계인 X와 Y사이에서 판매됨

- 따라서 신고 된 과세가격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었으며, 비료폐기물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비료폐기물은 EU 관세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지 않았으며, 신고 된 과세가격과 EU에서 재판매된 가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비료폐기물은 세관신고 수리 시 EU의 관세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차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비료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다양한 양의 불순물과 혼합되고 수분함량이 증가한 다양한 비료로 구성되므로 동일·유사 물품의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이 없음
 - 역산방법 역시 X가 특수관계인 자회사 Y에 물품을 판매했으므로 적용될 수 없음
 - 또한 비료폐기물은 생산과정을 통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산정가격방법이 사용될 수도 없음

- 결과적으로 비료폐기물은 대체방법에 따라 비료폐기물을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에 판매하기 위해 Y가 책정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함
 - 해당 가격은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여 조정됨
 -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로 추가된 금액
 - 물품을 최종 구매자인 농가에 운송하기 위하여 발생한 EU 관세영역 내의 운송비, 보험료 및 관련 비용
 - 관세 및 물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이유로 EU 관세영역에서 부과된 기타 요금

- 해당 사례의 경우 비료폐기물 가격의 상당 부분이 역산방법의 틀에서 관세평가 목적으로 단가가 설정되는 방식으로 결정됨

- 비료폐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때 역산방법에 따른 단가 조정에 관한 법적 원칙을 준용하여 판매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짐
- 이에 따라 세관은 비료폐기물의 과세가격을 톤당 55.25유로로 설정함

맺음말

- 본 연구는 EU의 UCC에 따른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규정이 실제 어떻게 적용·해석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BTI 결정 및 평가해설 모음집임
 - 어떤 분야의 어떤 대상에 대하여도 관련 사례와 해설을 참조할 수 있도록 연구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대상에 대한 결정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 사례 및 해설을 통하여 현재에도 적용·해석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나 실제 사례별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품목분류의 경우 「HS협약」이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관련 협정, 정책에 따라 관세율, 할당 등이 변경되므로 최신 관세율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관세평가 또한 사례별 거래 상세 현황이나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특히 BTI 결정사례는 「HS협약」이 2022년에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한 사례를 위주로 소개하고자 하였음
 - 「HS협약」은 국제협약 및 기구의 요청에 따라 품목번호를 신설하거나 품목분류체계를 변경하며,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BTI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식량농업기구: 녹색혼합 가루, 귀뚜라미 가루, 목재 프로파일, 목재 회전의자 등
 - 「바젤협약」 사무국: 가전제품 폐기물 등
 - 「몬트리올 의정서»: HFO-1336mzz, HFC-134a 혼합물 등
 -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알렌드로네이트 나트륨 등
 - 국제재생에너지기구: 태양광 모듈 등

- 3D 프린터, 스마트 워치, LED 모듈, 홀 소자 등은 정보기술 분야의 발전에 따른 「HS 협약」 개정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임
 - 물품운반용 로봇, 야간투시용 디지털카메라 등은 군사용과 산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국제교역 모니터링을 위해 신설된 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 그 외에 전자담배용액, COVID-19 진단시약 및 백신, 드론 등은 기술발전에 따라 기존 체계로는 분류가 부적합하여 신설·변경된 호에 분류됨
- 또한 EU는 CN에서 채택하고 있는 「HS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 주, 집행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함
- 냉동송어, 염장한 대구는 CN 제3류 추가 주에 따른 분류기준이 적용된 물품임
 - 또한 잠수복의 경우 방직용 섬유 직물 층으로 덮인 경우 제61류에 분류한다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품목분류 됨
 - 이 외에 마사지 롤러·볼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용도에 따라 제95류에 분류하는 반면 독일에서는 재질에 따라 제39류에 분류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함
- 한편 관세평가의 경우 「WTO 평가협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협정에서 국가별 선택사항으로 유보한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함
- EU는 연속거래에서의 수출판매를 EU의 국경을 넘기 바로 직전의 판매로 보는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점을 유의해야 함
 - 이에 따라 최초의 거래를 수출판매로 보는 미국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우리나라에서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EU는 매개체와 소프트웨어 가격이 구분 가능한지 고려함
 - 또한 EU는 구매수수료를 가산요소에서 제외할 뿐 아니라 공제요소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EU는 개별국가가 아닌 경제공동체이므로 다른 개별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도 함

- 예를 들어 운송비용과 관련하여 항공운송의 경우 EU의 관세영역에 반입된 후에도 도착지까지 운송되므로 EU 관세영역 반입 후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공제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와 같이 EU는 품목분류와 관세평가에 대해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표준을 따르고 있지만 EU 특유의 규정이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HS 협약」과 「WTO 관세협정」은 각 체약국에 사용 여부를 유보하거나 선택권을 부여한 조항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달리 적용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음
- 본 연구를 통하여 EU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품목분류와 관세평가 관련 적용 및 해석 원칙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다만 품목분류 사례와 관세평가 해설은 각 물품 또는 상황별로 관세율이나 과세 가격 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참고문헌

- 강유덕, 『EU 로비제도의 현황과 사례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2022년 HS 세번별, 성질별, 신성질별 연계표」, 2022. 4.
-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 송병준, 「리스본조약 체결 이후 신커미톨로지(실행입법)의 의미」, 『유럽연구』, 제33권 제3호, 유럽연구협회, 2015, pp. 325~349.
- _____, 「유럽연합의 위원회 거버넌스: 유럽위원회 전문가그룹의 기능과 의미」, 『글로벌 정치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6, pp. 5~26.
- 신상화·박지우·이재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미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이주형·권소영·김원용·권미진·최웅재·van der Meulen, 『주요국(EU)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식품안전정보원, 2018.
- 외교부, 『EU 개황』, 2020. 6.
-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EU 집행위, 2022~23년 경제전망 [’22 춘계 전망]」, 보도자료 2022. 5. 19.
- Euro stat, *User guide on European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2020.
- EU 집행위원회, “Note to the expert group registry; Term of reference of the customs expert group,” 2016.
- TAXUD, *COMPENDIUM OF CUSTOMS VALUATION TEXTS*, 2021.
- 『의료기기뉴스라인』, 「지역경제통합, 관세철폐서 정치적 동맹 단계까지 무역자유화」, 2015. 9. 10., <http://www.km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7>, 검색일자: 2022. 5. 24.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4583>, 검색일자: 2022. 5. 23.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be-ko/wpge/m_7583/contents.do, 검색일자: 2022. 9. 8.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istat/euts/EuCtr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2. 5. 25.

_____, <https://stat.kita.net/stat/istat/euts/EuWholeList.screen>, 검색일자: 2022. 5. 25.

_____, <https://stat.kita.net/stat/istat/euts/EuItemImpExpDetailPopup.screen>, 검색일자: 2022. 5. 25.

KOTRA,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57310, 검색일자: 2022. 11. 29.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european-union/>, 검색일자: 2022. 5. 23.

IMF,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WEO/EU>, 검색일자: 2022. 5. 24.

_____,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EU>, 검색일자: 2022. 5. 24.

_____,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EU, 검색일자: 2022. 5. 24.

_____,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LUR@WEO/EURO>, 검색일자: 2022. 5. 24.

_____,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PCPIPCH@WEO/EU>, 검색일자: 2022. 5. 24.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

품목분류과-101979, 2004. 11. 29

Case C-11/89, Unifert v Hauptzollamt Münster, Judgement of the Court of 6 June 1990.

Case C-116/89, BayWa v Hauptzollamt Weiden, Judgment of the Court of 7 March 1991.

Case C-306/04, Compaq Computer International Corporation v Inspecteur der Belastingdienst - Douanedistrict Arnhem, Judgment of the Court of 16 November 2006.

Case C-116/12, Ioannis Christodoulou and Others v Elliniko Dimosio, Judgment of the Court of 12 December 2013.

부 록

부록 1. WCO 권고의견

권고의견 1.1

협정에서의 '판매(Sale)'의 개념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 (a) GATT 제7조 이행을 위한 협정에서는 판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협정 제1조 제1항은 특정한 요건 및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한 상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b)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평가목적상 가능한 최대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협정의 기본취지에 따라 판매라는 용어를 가장 넓은 의미로 받아들임으로써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으며, 이는 함께 해석되는 협정 제1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 (c) 그러나 함께 해석되는 협정 제1조 및 제8조의 요건 및 조건을 충족하는 판매로 볼 수 없는 사례들의 목록을 준비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평가방법 역시 본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 권고의견에 따라 준비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들 목록은 사례를 총망라한 것이 아니며 경험을 고려하여 추가될 것이다.

수입물품이 판매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사례

I. 무상탁송물품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거래는 본 협정에서 정하는 판매로 간주될 수 없다.

〈예〉 선물, 견본, 홍보물 등

II. 위탁판매물품

이러한 거래관행 하에서는 해당 물품이 판매의 결과로서 수입국에 송부된 것이 아니라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공급자의 계산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송부된 것이다. 따라서 수입시점에는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다.

〈예〉

E 수출국의 제조자 P는 I 수입국의 수출대리인 X에게(수입국에서) 경매로 판매할 목적으로 카페트 50개를 송부하였다. 카페트는 수입국에서 총 50만화폐단위로 판매되고 있다. X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제조자 P에게 송금해야 하는 총 금액은 50만화폐단위에서 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X가 부담한 비용과 해당 거래에 대한 X의 보수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위탁판매수입은 이익분배거래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이익분배거래의 경우에는 판매의 결과에 따라 물품이 수입되고 수입국 시장에서 물품이 판매된 때 실현된 이익의 일부가 가산되어야 하는 특정 가격으로 견적 송품장이 작성된다. 이러한 종류의 거래는 최종 가격의 결정에 대한 유보조항이 있는 판매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거래

의 특징은 제1조를 근거로 한 평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당연히 제1조 (c)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III.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수입 후 물품을 판매하는 중개인이 수입한 물품

이 표제의 물품과 이전 표제에서 언급한 위탁판매 수입물품간에는 구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탁판매수입은 별개의 특정한 무역관행이다. 현 범주의 물품들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개인에게 인도되는 물품으로 국제관례상 일반적으로 위탁판매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 상관행에서 직면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예〉

I국의 수입자 X는 E 수출국의 외국 제조자 F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리점 재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X가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통관을 마친 후 F의 계산과 위험으로 수입국내에서 판매한다.

공급자와 고객사이(때로는 명목상 대리인과 고객사이)에 이미 체결된 판매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분배목적의 대행수입은 제1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초로 사용될 수 있는 거래를 구성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IV. 별개의 법적사업체가 아닌 지점이 수입하는 물품

관계 법률에서 별개의 법적사업체로 간주되지 않는 지점의 경우에는 판매가 될 수 없으므로 판매는 반드시 별개의 두 사람 사이의 거래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V.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

임대차계약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비록 계약내용이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의 그 특성으로 인해 판매는 아니다.

VI. 송하주 소유의 대여 물품

물품(대개 기계류)이 때때로 소유자에 의해 고객에게 대여된다. 이러한 거래는 판매가 아니다.

〈예〉

E국의 제조자 F가 I 수입국의 수입자 X에게 플라스틱이 코팅된 종이포장 제조용의 특수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VII. 송하주가 수입자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고 수입국에서 파기할 목적으로 수입 되는 물품(웨이스트 또는 스크랩)

이러한 경우는 파기목적으로 수입되는 웨이스트나 스크랩에서 볼 수 있다. 비용은 파기와 관련하여 발생되기 때문에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서가 아니라 수입물품을 인수하여 파기하는 대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본 협정에서 판매가 발생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권고의견 3.1

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에서 ‘구분되는’의 의미: 수입국의 관세 및 제세

1.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수입국의 관세 및 제세에 대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송품장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수입자가 공제를 요청하지도 않은 경우에 이들 관세 및 제세가 공제되어야 하는가?
2. 관세평가 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수입국의 관세 및 제세는 그 본질상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구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다.

권고의견 4.8

협정 제8조 1항 (c)호의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

1. 수입자 I는 X국의 라이선스 보유자 L과 수입국으로 수입되는 L의 상표가 부착된 신발 한 짝당 로열티 정액을 L에게 지급하는 라이선스/로열티 계약을 체결한다. 라이선스 보유자인 L은 상표와 관련한 공예 및 디자인을 제공한다. 수입자 I는 L이 M에게 공예 및 디자인을 제공하면 신발에 L의 상표를 부착한 신발을 구매하기 위하여 X국의 제조자 M과 또 하나의 계약을 체결한다. L은 제조자 M에게 라이선스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 판매계약은 로열티 지급에 대한 어떠한 관련성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제조자, 수입자 및 라이선스 보유자는 모두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수입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로열티를 지급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무는 수입국으로 해당물품을 수출하기 위한 판매와 관련없는 별도의 계약에 기인하고 있다. 물품은 별도의 계약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구매된 것으로 로열티 지급은 이들 물품의 판매조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의 로열티 지급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

해당 상표와 관련한 공예와 디자인에 대한 제공이 제8조 제1항 (b)호에 따라 관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고려사항이다.

권고의견 4.13

협정 제8조 1항 (c)호의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

1. 수입자 I는 외국 제조자 M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급자로부터 스포츠 백을 구매하고 있다. 수입자 I, 제조자 M 및 다른 공급자 모두 특수관계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수입자 I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C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I와 C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C는 로열티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I에게 상표 사용권을 양도한다.

수입자 I는 제조자 M과 다른 공급자에게 수입 전에 스포츠 백에 부착되는 상표가 붙은 라벨을 제공한다.

해당 로열티는 평가물품과 관련이 있는가? I가 C에게 지급한 금액은 M과 I 및 I와 다른 공급자간 판매조건의 일부인가?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비록 수입자가 상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권리사용료를 지급해야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수입국으로 해당물품 수출판매와 상관없는 별도의 계약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해당 수입물품은 서로 다른 계약에 따라 여러 공급자로부터 구매된 것이므로 권리사용료 지급은 이들 물품에 대한 판매조건이 아니다. 구매자는 해당 물품 구매를 위하여 권리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제8조 제1항 (c)호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요소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지 않아야 한다.

상표권을 입증하는 라벨공급이 제8조 제1항 (b)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부과 대상인지 여부는 별도로 고려할 대상이다.

권고의견 14.1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표현의 의미

1. 협정 제1조의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의 표현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관세협력이사회의 국제관세용어사전에서 수입은 ‘어떤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가져오는 행위’로, 수출은 ‘어떤 물품을 관세영역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가를 위하여 물품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해당 물품의 수입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해당 물품의 수출이 있었다는 것이다. 나머지 요건은 그와 관련된 거래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판매가 특정 수출국 내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다. 수입자가 해당 거래가 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1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전에 해당하는 거래만이 거래가격방법으로 물품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사례는 상기 원칙을 설명하는 사례이다.

사례1:

X 수출국의 판매자 S는 I 수입국의 수입자 A에게 전기제품을 개당 5.75 화폐단위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판매자 S는 또한 X국의 제조자 M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S를 대행하여 제조자 M은 I국의 수입자 A에게 해당 물품을 선적한다. M이 S에게 판매한 가격은 개당 5 화폐단위이다.

이 사례에서 S와 A의 거래는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전을 포함하고 있고 수입국으로 수출을 위한 판매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협정 제1조에서 정하는 평가의 기초가 된다.

사례 2:

I 수입국의 구매자 B는 동일한 I국의 판매자 S로부터 물품을 구매한다. 판매자 S는 해당 물품을 X국에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X국에서 해당 물품의 선적 및 수출을 위해 필요한 준비는 S가 완료하고 해당 물품은 B가 I국으로 수입한다.

판매가 반드시 특정 수출국내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다. 판매자 S가 X국, I국 또는 제3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구매자 B와 판매자 S 사이의 거래는 수입국으로 수출을 위한 판매이므로 협정 제1조에서 정하는 평가의 기초가 될 것이다.

사례 3:

X국의 판매자 S는 I국의 구매자 B에게 물품을 판매한다. 해당 물품은 X국에서 산물로 선적된 후 T국의 환적항에서 판매자 S에 의해 포장된 후 I국으로 수입된다.

사례2에 적용한 원칙은 이 사례에서도 적용된다. 수출국이 X인지 T인지 여부는 이 사례에서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판매자 S와 구매자 B 사이에 판매계약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를 구성하므로 제1조에서 정하는 해당 물품에 대한 평가의 기초가 될 것이다.

사례 4:

X국의 판매자 S는 I국의 구매자 A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선적한다. 해당 물품이 공해

상에서 운반되는 중 구매자 A가 판매자 S에게 대금지급을 할 수 없으므로 물품 인수를 받을 수 없다고 통지한 경우 판매자는 I국에 소재한 또 다른 구매자를 물색하여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 B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따라서 B가 물품을 I국으로 수입한다.

위 사례에서 판매자 S와 구매자 B 사이의 판매는 물품의 수입으로 귀결되었고 결과적으로 수출판매의 근거임을 입증하고 있다. 해당 거래는 물품의 국제간 이전을 구성하므로 제1조에 정하는 해당물품의 평가에 대한 기초가 될 것이다.

사례 5:

X국의 다국적 체인호텔의 본사는 호텔운영을 위한 비품을 구매한다. 매년 초 I, I2, 및 I3국의 체인호텔은 본사에 비품 구매주문서를 제출한다. 본사는 각 체인호텔의 모든 주문서를 합산한 다음 X국의 여러 공급자들에게 구매주문서를 발행한다. 공급자는 각 체인호텔에 직접 비품을 보내거나 본사로 선적하면 본사는 체인호텔에 송부한다. 어느 경우어나 공급자가 X국의 본사에 대금을 청구하면 본사는 각 체인호텔에 개별적으로 비용을 청구한다.

위 사례의 경우 X국에 모두 소재하고 있는 본사와 공급자 사이의 판매는 물품의 국제간 이전이 아닌 수출국내의 국내 판매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본사는 공급자로부터 비품을 구매하고 난 다음 체인호텔이 소재한 국가로 수출하기 위하여 비품을 각각의 별개의 체인호텔에 판매한다. 이 사례의 경우 본사와 각각의 별개의 호텔 사이의 거래는 수입국으로 수출을 위한 판매를 구성한다. 만약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 판매는 제1조에서 정하는 해당 물품에 대한 평가의 기초가 될 것이다.

사례 6:

I국의 구매자 A는 X국의 판매자 S로부터 의자 500개를 개당 20 화폐단위로 구매한다. 구매자 A는 판매자 S에게 의자 200개는 I국에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나머지 의자 300개는 X국에 있는 보세창고로 선적하도록 지시한다. 다음으로 구매자 A는 나머지 의자 300개를 I국의 구매자 B에게 개당 25 화폐단위로 팔기로 합의한다. 구매자 A는 다음으로 X국에 있는 자신의 보세창고 운영인에게 해당 물품을 I국의 B에게 직접 선적하도록 지시한다.

이 사례에서 해당 물품은 두 가지 경우로 평가된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개당 20 화폐단위로 판매자 S와 구매자 A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는 수입국에서 수출을 위한 판매를 구성하므로 의자 200개는 협정 제1조에서 정하는 평가의 기초가 된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보세창고에 장치된 20 화폐단위의 판매가격은 대상 물품이 I국으로 수출 판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전을 포함하고 있는 25 화폐단위로 구매자 A와 B 사이의 판매는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를 구성하므로 동 거래는 협정 제1조에 따른 평가의 기초가 된다.

부록 2. WCO 사례연구

사례연구 8.1

제8조 제1항의 적용

거래사실

1. ICO는 수입국의 소매상에게 최신 유행의 남성복을 판매한다. 모든 의류는 해외 공급자인 XCO로부터 수입된다. XCO는 ICO를 대리하는 LCO가 무료로 제공하는 패턴지를 사용하여 의류를 만든다. ICO, XCO, LCO 간의 관계는 제1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2. ICO는 LCO와 권리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ICO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 받는다.
 - (1) 수입국에서 LCO의 디자인이 구현되어 있는 의류를 공급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용권한
 - (2) LCO가 개발한 종이패턴과 구체화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3. 아울러 권리사용계약에서 LCO는 ICO가 지명하는 자가 누구든지 디자인과 패턴지를 공급한다. ICO는 다양한 규격의 의류를 만드는 데 필요한 패턴지(디자인이 재현되어 있는) 여러 장의 복제물을 XCO에게 제공하도록 LCO에게 지시한다.
4. ICO는 XCO에게 한 벌당 200 화폐단위를 지급한다. 권리사용계약에 따라 ICO는 의류 총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를 LCO에게 지급한다. 수입 시 모든 의류는 한 벌당 400 화폐단위로 소매업자에게 판매된다. 그러므로 수입 시 한 벌당 LCO에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40 화폐단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5. 수입자는 LCO와 체결한 권리사용계약서와 이 권리사용계약서에서 부여된 권리사용에 대해 지급되는 지급액 모두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가격에 기초한 가격신고서를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다.
6. 제1조 제1항 (a)호 내지 (d)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7. 제1조에 따라 한 벌당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200 화폐단위이다. 이것은 구매자가 한 벌에 대하여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총 금액이기 때문이다.

조정요소

8. 관세당국은 의류 한 벌당 40 화폐단위로 추가 지급한 금액이 수입된 의류의 관세가격의 일부를 형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규명해야 한다. 만약 해당 사실이 제8조 제1항 (b)호(생산지원비용)의 요소와 관련된 권리사용료로 규정하고 있는 지급액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관세당국은 제8조 제1항 (b)호를 적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관세당국은 지급금액이 제8조 제1항 (c)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9. 패턴지는 주형 또는 금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구매자는 권리사용 허가권자인 LCO를 통하여 무료로 패턴지를 공급하고 패턴지는 수립물품의 수출을 위하여 생산과 판매에 사용한다. 이들 패턴지는 제8조 제1항 (b)호 (ii)목에서 규정하는 생산지원에 해당하고 아울러 디자인 비용을 포함한 패턴지 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10. 제8조 제1항 (b)호 (ii)목에 대한 주해는 요소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2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수입자가 취득비용으로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판매자로부터 요소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소가격은 취득비용이다. 둘째 해당요소를 수입자가 생산하거나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생산한 경우에는 요소가격은 요소의 제조원가가 된다. 이 사례에 있어 ICO는 LCO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패턴지 가격은 LCO로부터 패턴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ICO가 지급한 비용이 될 것이다. ICO는 LCO의 권리사용계약에 따라 패턴지를 취득한다.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로 ICO는 LCO에게 해당 의류에 대한 ICO의 총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패턴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ICO가 지급한 비용은 총 판매가격(400 화폐단위)의 10% 또는 한 벌당 40 화폐단위 이다.
11. 추가로 지급하는 40 화폐단위가 제8조 제1항 (b)호에 따라 수입의류의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제8조 제1항 (c)호의 규정에 따라 동 금액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결론

12. 의류 한 벌에 대한 거래가격은 240 화폐단위이다. 즉, 요약하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200 화폐단위이고 40 화폐단위는 이 사례에서 권리사용료가 평가목적상 생산지원에 대한 지급금액으로 처리되는 한 제8조 제1항 (b)호 (ii)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금액이다.

사례연구 8.2

제8조 제1항의 적용

거래사실

1. ICO는 다수의 비디오 레이저 디스크 복제물을 XCO로부터 구매한다. 이 디스크는 수출국의 XCO가 제작한 저작권 대상이 되는 뮤직비디오 클립이 체화되어 있다. ICO는 제3국의 LCO와 별도의 권리사용계약에 따라 디스크에 체화되어 있는 뮤직비디오 클립을 사용할 권리를 획득했다. ICO와 체결한 권리사용계약에 따라 LCO는 디스크에 체화되어야 하는 뮤직비디오 클립의 선정을 위해 마스터테이프를 편집하였다. ICO는 마스터테이프를 XCO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ICO, XCO, LCO는 제15조 제4항의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2. 마스터테이프는 XCO의 생산과정의 기초역할을 한다. 이미지가 전사된 마스터테이프는 레이저디스크 스탬퍼로 동종·동질의 형태로 복제된다. 다수의 디스크 복제품은 스탬퍼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각각의 디스크는 마스터테이프의 동종·동질의 복제품이며 XCO는 마스터테이프 없이 디스크를 제조할 수 없다.
3. ICO는 스탬퍼 생산을 위하여 XCO에게 천 화폐단위, 4천개 디스크 복제물에 대해서는 2만 8천 화폐단위를 지급했다. 뮤직비디오 클립 및 마스터테이프를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ICO는 수입국 국내 디스크 총 판매가격의 5%를 권리사용료로 LCO에게 지급한다.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4. 수입자는 LCO와 체결한 권리사용계약서와 권리사용계약서에서 부여된 권리에 대

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신고서를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였다.

5. 제1조 제1항 (a)호 내지 (d)호의 모든 규정이 충족된다면 관세의 과세가격은 거래 가격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6. 제1조에 대한 주해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2만 9천 화폐단위로 이 금액은 레이저디스크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지급금액이다. 레이저디스크 스템퍼에 대하여 지급한 1천 화폐단위는 구매자가 동 수입물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이 금액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를 형성한다.

조정요소

7. 관세당국은 추가 지급되는 디스크의 수입국 국내 총판매가격의 5%가 수입된 디스크의 관세가격의 일부를 형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규정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지급금액이 제8조 제1항 (b)호의 요소(생산지원비용)에 관련된 권리사용료라는 것이 사실로 보여진다면 관세당국은 제8조 제1항 (b)호를 적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관세당국은 지급금액이 제8조 제1항 (c)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8. 마스터테이프가 디스크 생산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마스터테이프가 제8조 제1항 (b)호 (i)목 내지 (iv)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물품 및 용역의 종류에 해당된다면 마스터테이프의 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된다.

9. 이 사례 연구 제1항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LCO는 뮤직비디오 클립을 마스터테이프에 편집하여 XCO에게 제공한다. 이 편집은 디자인과 수입된 비디오 레이저 디스크에 대한 개발단계의 일부이다. 디자인과 개발은 수입국 이외의 장소에서 수행되었다. 그러므로 해당 금액은 제8조 제1항 (b)호 (iv)목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10. 생산지원비용은 뮤직비디오 클립과 마스터테이프를 ICO가 취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5%의 권리사용료이다.
11. 수입국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디스크의 수입국 국내 총 판매가격의 5%가 제8조 제1항 (b)호 규정에 따라 수입 디스크에 대한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면 제8조 제1항 (c)호의 조건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결론

12. 수입디스크 4천개의 거래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2만 9천 화폐단위)에 생산지원비용(디스크 수입국 국내 총 판매액의 5%)을 더한 금액이다.

부록 3. WCO 예해

예해 7.1

제1조 규정에 따른 창고보관료와 관련비용의 처리

I. 일반원칙

1. 평가목적상 창고보관료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이 어디서 누구에게 발생되는 나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비용의 명확한 특성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본 예해는 쟁점거래가 협정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1조는 적용되지 않고 규정된 순서에서 선택된 협정의 기타 방법 중 하나가 사용되어야 한다.
3. 본 예해 내용은 물품의 창고 적출·입 이동과 관련된 장치보관료와 그 관련 비용에 대한 측면만 다루고 있다. 창고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척, 선별 또는 재포장과 같은 기타 활동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4. 일반적인 보관창고와 수입관세 및 제세에 대해 보세상태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물품이 장치되는 보세창고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 창고보관료의 평가방법은 각각의 경우에 동일하다.
5. 평가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장치 관련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수입국으로 수출판매하는 시점에 해외창고에 물품이 있는 경우
 -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물품을 구입한 후 해외에서 장치하는 경우

- 수입국 내에 해당 물품을 장치한 다음 내수용으로 통관하는 경우
- 물품 운송과정에 부수적으로 일시 장치되는 경우

6.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처리는 II 내지 III 부분에서 검토되고 있다.

7. 이 사례의 목록들은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이 아니라 실례를 들어 제공하는 사례들은 창고보관료와 그 관련 비용의 처리과정에 포함된 일반원칙을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다. 분명히 각각의 사례는 관련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II. 수입국으로 수출판매하는 시점에 해외 창고에 물품이 있는 경우

8. 사례

(a) I 수입국의 구매자 A는 X 수출국의 판매자 B가 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을 구매한다. A가 B에게 지급한 창고인도가격에는 B가 부담하고 있는 창고보관료가 포함되어 있다.

(b) I 수입국의 구매자 A는 X 수출국의 판매자 B로부터 공장도 인도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한다. 거래시점에서 해당 물품은 X국의 B에 의해 창고에 보관되었다. 구매자 A는 판매자 B에게 별도의 송품장을 근거로 물품가격 외에 창고보관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c) I 수입국의 구매자 A는 X 수출국의 판매자 B로부터 공장도 인도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한다. 거래시점에서 해당 물품은 X국의 B에 의해 창고에 보관되었다. 구매자 A는 물품가격 외에 판매자 B에 의하여 발생한 창고보관료를 창고업자에게 지급한다.

9. 제1조에 대한 주해에서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

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0. 창고보관료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로 판매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한 가격을 이루는 것이라면 이들 비용들은 해당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11. 그러므로 상기 사례의 경우에 창고보관료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가 된다.

III.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물품을 구입한 후 해외에서 장치하는 경우

12. 사례

I 수입국의 구매자 A는 X 수출국의 판매자 B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후 A의 계산으로 창고에 보관한 다음 I 국으로 수입된다.

13. 물품을 구매한 후 구매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구매자의 계산으로 구매자가 수행한 활동에 해당하는 이러한 비용들 즉, 이러한 활동에 대한 비용들은 제8조에서 조정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이 사례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창고보관료는 관세의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는 것이다.

IV. 수입국 내에 해당 물품을 장치한 다음 내수용으로 통관하는 경우

14. 사례

I 수입국의 구매자 A는 판매자 B로부터 물품을 구매한다. 수입항에 물품이 도착하는 시점에 구매자 A는 곧 있을 다른 물품 제조에 사용될 수입물품에 대한 생산계획 착수를 위해 보세창고에 구매자의 계산으로 해당 물품을 창고에 보관한다. 3개월 후 구매자 A는 통관절차를 거친 후 창고보관료를 지급한다.

15. 제1조에 대한 주해에서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매자의 계산으로 구매자에 의하여 수행된 활동비용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비용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지 않아야 한다고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6. 물품을 구매한 후 구매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구매자의 계산으로 구매자가 수행한 활동에 해당하는 이러한 비용들, 즉 이러한 활동에 대한 비용들은 제8조에서 조정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이 사례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창고보관료는 관세의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는 것이다.

V. 물품 운송과정에 부수적으로 일시 장치되는 경우

17. 사례

(a) 수입자 I는 수출국에서 공장인도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한다. 창고보관료는 곧 있을 수출 선박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수출항에서 발생되었다.

- (b) 수입 시점에, 물품 양하와 세관 신고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다. 이러한 시차동안 해당 물품은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보관되므로 창고보관료가 발생한다.
18. 운송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창고보관료와 같은 이러한 종류의 비용들은 물품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협정 제8조 제2항 (b)호 규정에 따라 처리되거나 수입 후 발생된 비용인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과 구별된다면 수입 후 운송비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제1조에 대한 주해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주요교역국의 관세행정 결정사례
- EU -

발 행 2022년 12월 30일
저 자 강동익 · 이재선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식회사 다원기획 044-865-8115
ISBN 979-11-6655-171-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주요교역국의 관세행정 결정사례

EU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

